

정책보고서 97-10, 155쪽, 1,000부

生活保護 및 公共福祉서비스 業務의
電算化 方案

都世綠

姜惠圭

1997

韓國保健社會研究院

머 리 말

情報化는 사회 각 분야에서 요청되고 있는 과제이며, 정보화의 수준은 競爭力을 가늠할 수 있는 주요 지표가 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흐름을 주도하여 超高速國家情報通信網의 건설과 21세기 國家情報化등을 課題로 선정하여 의욕적으로 정보화를 추진해 오고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國民의 삶의 質을 향상시키고 선진화된 社會體制를 구축하는 데 목표를 둔다. 사회복지부문의 정보화는 이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으로, 조속한 추진이 요청되고 있다.

그간 社會福祉 部門의 정보화는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각 사업주체들간에는 情報化 速度에 있어 불균형이 존재하고 있다. 특히 공공행정체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生活保護 및 公共福祉서비스 부문은 社會保險 부문과 비교할 때 매우 미진한 상태이다.

정부는 복지행정의 정보화 必要性을 인식하여, 1987년 住民電算網 구축에 生活保護業務를 포함시켰다. 그러나 생활보호제도의 개선, 공공부조업무의 증대, 지방자치단체별 사업추진의 다양화 등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주민전산망을 이용한 생활보호 전산업무는 實效性이 저조한 상태이다. 또한 1992년부터 보건복지부가 추진중인 國民福祉網 사업에서도 복지행정통계 생산에 주력함으로써, 대상자 및 급여관리 등 실제 事業運營에 필요한 업무의 전산화는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의 다양한 공공부조업무를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電算시스템의 개발이 요청되고 있다.

본 연구는 생활보호 및 공공복지서비스 업무를 전산을 매체로 한

統合 管理運營體系로 개선하는 데 목표를 두고, 이를 위한 基礎的 電算시스템 設計에 주안점을 두었다. 이와 함께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요청되는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本 報告書는 생활보호 및 공공복지서비스 업무 수행의 효율화, 대상자 선정 및 관리의 과학화 실현을 위한 電算시스템 構築 과정에서 유용한 指針書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는 당원 都世緣 책임연구원과 姜惠圭 주임연구원에 의해 수행되었다. 연구과정에서 福祉行政業務 현황 파악과 자료 수집에 도움을 준 區廳 및 洞事務所 관련자들에게 감사드리며, 연구진은 본 보고서를 읽고 유익한 조언을 해 준 본원의 金美坤 책임연구원과 徐正允 책임연구원에 감사하고 있다.

끝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모든 內容은 著者들의 의견이며 本院의 公式見解가 아님을 밝혀 둔다.

1997年 12月

韓國保健社會研究院

院長 延 河 清

目次

要約	11
I. 序論	23
1. 研究의 背景 및 必要性	23
2. 研究의 範圍	25
II. 生活保護·公共福祉서비스 業務 現況 및 電算化 實態	28
1. 生活保護 및 公共福祉서비스 行政體系	28
2. 生活保護 및 公共福祉서비스 業務 內容	31
3. 住民電算網의 生活保護關聯 業務 現況	49
III. 生活保護 및 公共福祉서비스 業務 分析	55
1. 主要業務 節次 및 흐름도	55
2. 關聯書式 分析	75
IV. 生活保護 및 公共福祉서비스 業務 電算시스템 設計	95
1. 시스템 設計의 基本方向	95
2. 시스템의 構成 및 要求事項	97
3. 데이터베이스 構築	111
V. 生活保護 및 公共福祉서비스 電算網 構築	124
1. 關聯 政府 基幹電算網의 現況과 問題點	125
2. 電算網 構築의 基本方向	133
3. 段階別 네트워크 構築 方案	138

VI. 推進戰略	143
1. 段階別 推進目標	143
2. 現存 問題點의 改善方向	146
3. 期待效果	151
參考文獻	153

表 目 次

〈表 II- 1〉 1997年 生活保護給與 內容	33
〈表 II- 2〉 生活保護對象者 減免制度	34
〈表 II- 3〉 年度別 登録障礙人 現況	36
〈表 II- 4〉 障礙人 經濟的負擔 輕減施策	38
〈表 II- 5〉 障礙人再活(收容)施設 現況(1996年末 現在)	40
〈表 II- 6〉 兒童福祉施設 收容保護 現況(1996年末 現在)	45
〈表 II- 7〉 老人福祉施設 및 收容·利用 現況(1997年)	47
〈表 II- 8〉 住民登録電算시스템의 生活保護關聯業務	51
〈表 II- 9〉 住民登録電算시스템의 生活保護業務關聯 메뉴別 電算處理 方法 및 構成要素	52
〈表 III- 1〉 邑·面·洞事務所의 生活保護業務 分野別 細部業務	56
〈表 III- 2〉 邑·面·洞事務所의 公共福祉서비스 分野別 細部業務	63
〈表 III- 3〉 公共福祉서비스의 對象者選定 細部業務 및 節次	65
〈表 III- 4〉 公共福祉서비스의 給與支給 細部業務 및 節次	70

〈表 III- 5〉	公共福祉서비스의 資金融資 細部業務 및 節次	73
〈表 III- 6〉	公共福祉서비스의 施設入所 依賴 細部業務 및 節次	74
〈表 III- 7〉	生活保護 細部業務別 關聯 書式の 作成機關 및 週期	76
〈表 III- 8〉	障礙人福祉 細部業務別 關聯 書式の 作成機關 및 週期	77
〈表 III- 9〉	低所得偏父母家庭서비스 細部業務別 關聯 書式の 作成機關 및 週期	79
〈表 III-10〉	兒童福祉 細部業務別 關聯 書式の 作成機關 및 週期	80
〈表 III-11〉	老人福祉 細部業務別 關聯 書式の 作成機關 및 週期	80
〈表 III-12〉	生活保護 關聯 申請·依賴書式 內容	81
〈表 III-13〉	生活保護 關聯 選定·證明書式 內容	82
〈表 III-14〉	生活保護 關聯 管理書式 內容	83
〈表 III-15〉	生活保護 關聯 報告書式 內容	84
〈表 III-16〉	障礙人서비스 關聯 申請·依賴 內容	85
〈表 III-17〉	障礙人서비스 關聯 選定·證明書式 內容	87
〈表 III-18〉	障礙人서비스 關聯 管理書式 內容	88
〈表 III-19〉	障礙人서비스 關聯 報告書式 內容	89
〈表 III-20〉	母子家庭서비스 關聯 申請·依賴書式 內容	90
〈表 III-21〉	母子家庭서비스 關聯 選定·證明書式 內容	90
〈表 III-22〉	母子家庭서비스 關聯 管理書式 內容	91
〈表 III-23〉	母子家庭서비스 關聯 報告書式 內容	92
〈表 III-24〉	老人서비스 關聯 申請·依賴書式 內容	93
〈表 III-25〉	老人서비스 關聯 選定·證明書式 內容	93
〈表 III-26〉	老人서비스 關聯 管理書式 內容	93
〈表 III-27〉	老人서비스 關聯 報告書式 內容	94
〈表 IV- 1〉	生活保護·福祉서비스 電算시스템의 構成	98
〈表 IV- 2〉	對象者管理 細部業務別 處理內容	100

〈表 IV- 3〉	生活保護·福祉서비스 對象者別 給與 種類	103
〈表 IV- 4〉	給與管理 細部業務別 處理內容	107
〈表 IV- 5〉	報告管理 細部業務別 處理內容	109
〈表 IV- 6〉	統計管理 細部業務別 處理內容	111
〈表 IV- 7〉	生活保護·福祉서비스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種類	112
〈表 IV- 8〉	業務別 데이터베이스 構成要素	115
〈表 IV- 9〉	生活保護·福祉서비스 對象者 統合管理카드	119
〈表 IV-10〉	生活保護·福祉서비스 對象者 統合코드 體系	121
〈表 V- 1〉	年度別 部處網과의 聯動 計劃	125
〈表 V- 2〉	內務部 行政電算網用 電算裝備(1996年 12月末 現在)	128
〈表 V- 3〉	住民登錄資料 共同活用 業務	128
〈表 V- 4〉	住民電算網의 主要 電算裝備(1995年 7月 現在)	129
〈表 V- 5〉	住民電算網의 問題點 및 改善	131
〈表 V- 6〉	國民福祉網 關聯 主要 機關의 電算裝備	131
〈表 V- 7〉	電子住民카드에 收錄되는 個人情報	132
〈表 V- 8〉	關聯機關間의 情報共有 項目	134
〈表 V- 9〉	關聯機關間의 情報 흐름의 類型	135
〈表 V-10〉	段階別 네트워크 構築方案	141
〈表 V-11〉	段階別 하드웨어 所要量	141
〈表 V-12〉	段階別 S/W 所要量	142
〈表 VI- 1〉	段階別 推進 目標	143
〈表 VI- 2〉	段階別 細部 推進日程案	145
〈表 VI- 3〉	標準化 對象 및 方法	148

圖目次

[圖 II-1]	生活保護 및 公共福祉서비스 行政體系	29
[圖 II-2]	福祉行政體系的 生活保護 및 公共福祉서비스 對象者 分類	31
[圖 II-3]	住民登錄電算시스템의 初期 메뉴	50
[圖 III-1]	生活保護對象者 選定業務 흐름도	58
[圖 III-2]	生活保護對象者 生計費 支給業務 흐름도	59
[圖 III-3]	生活保護對象者 學資金 支援業務 흐름도	60
[圖 III-4]	生活保護對象者 生業資金 融資業務 흐름도	61
[圖 IV-1]	生活保護·公共福祉서비스對象者 分類體系	98
[圖 IV-2]	對象者管理 資料 흐름도	101
[圖 IV-3]	現行 給與支給 節次圖	105
[圖 IV-4]	電算化한 給與支給 節次圖	105
[圖 IV-5]	給與管理 資料 흐름도	108
[圖 IV-6]	報告/統計 管理 資料 흐름도	110
[圖 IV-7]	데이터베이스 構築 順序圖	114
[圖 IV-8]	家口·家口員別 業務區分	117
[圖 V-1]	네트워크 構成圖(1段階: 示範事業期間)	139
[圖 V-2]	네트워크 構成圖(2段階: 全國擴大 運營)	140
[圖 VI-1]	推進體系圖	145
[圖 VI-2]	標準化 推進 體系圖	149
[圖 VI-3]	시스템 運營體系圖(案)	150

要約

1. 研究의 背景 및 目的

- 生活保護와 公共福祉서비스 사업에 매년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막대함에도 사업의 合理化와 科學化가 실현되고 있지 못하며, 사업수행의 낙후성을 탈피하기 위한 대안으로 이 분야에서도 情報化의 導入이 시급히 요청됨.
 - 복지행정업무 관련 전산화는 對象者의 다양성, 行政傳達體系의 이원성, 정보망 구축에 대한 國家負擔費用의 막대함 등으로 추진이 미진하였음. 그러나 국가 주도하에 추진한 基幹電算網事業이 정착됨으로 정보화 추진에 좋은 여건이 제공되고 있음.
- 본 연구는 생활보호와 공공복지서비스 업무 전산시스템의 構築 方向과 기본적인 시스템의 構成을 위한 概念的 設計에 중점을 둠.
 - 이를 위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書式 分析과 업무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한 必要 電算需要의 파악, 이를 토대로 한 시스템 구성, 데이터베이스 구축, 他 電算網과의 연계체계 등을 모색하고, 추진전략 등 전산화를 위한 일련의 과정을 제시함.

2. 福祉行政業務 電算化 現況 및 對象業務

가. 生活保護·公共福祉서비스 業務의 領域 및 電算化 對象 範疇

- 현행 생활보호 및 공공복지서비스의 行政傳達體系는 保健福祉部의

정책이 사업별로 사업지침과 예산에 의해 內務部의 시·도, 시·군·구, 읍·면·동에 전달 집행되는 二元化된 구조로서, 복지행정상의 一貫성과 專門性 미흡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옴.

- 또한 생활보호대상자와 장애인, 노인, 저소득 편부모가구, 소년 소녀가장가구 등은 業務對象 및 給與內容이 重複되고 있음에도 상이한 소관부서에서 대상자의 選定과 管理가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통합서비스 제공이 어렵고, 행정업무의 비효율성이 초래되고 있음.
- － 현행 공공복지행정은 시·도, 시·군·구, 읍·면·동의 내무행정체계를 통해 수행되고 있으므로, 福祉行政 電算化의 대상 업무는 특별시·직할시·도청, 시청·군청·구청, 동사무소·읍·면사무소를 통해 수행되는 公共扶助 및 社會福祉서비스임.
- 이는 현행 복지행정업무의 중심이 되고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높은 업무로서, 生活保護 업무 전반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저소득계층 즉, 障礙人, 老人, 偏父母家庭, 少年少女家長家口 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업무를 내용으로 함.
 - 이와 관련한 행정업무는 해당자 선정 및 사후관리를 위한 ‘對象者 管理’ 업무, 이들에 대한 ‘給與 支給’ 업무, 수행된 업무와 실적을 상부기관에 집계해 ‘報告’하는 업무 등으로 대별됨.
- － 공공부조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필요로 하는 書式을 작성하는 일은 행정업무에 큰 비중을 차지함. 행정업무 簡素化 및 合理化를 목적으로 시도되는 전산화과정에서는 이들 서식을 分析하고, 電算 情報化가 가능한 내용의 검토가 필수적임.
- 이는 업무특성에 따라 ① 복지분야별 대상자로 선정되거나, 급여를 지급받기 위한 ‘申請’ 및 ‘依賴’를 위한 서식, ② 이에 대

해 집행기관이 발급하는 ‘選定’ 및 ‘證明’ 서식. ③ 급여수급자의 신청 및 사후관리, 현황점검을 위한 ‘管理’ 서식, ④ 읍·면·동 → 시·군·구 → 시·도 → 보건복지부의 행정체계를 통해 집행현황 및 실적을 ‘報告’하는 서식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함.

나. 福祉行政業務의 電算化 現況 및 問題點

1) 住民登錄電算網의 活用 現況

- 내무부에서 관리·운영하는 行政電算網은 住民登錄 관리, 不動產 관리, 自動車登錄 업무 등을 전국을 온라인(On-line)으로 연결하여 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임.
 - 住民登錄시스템은 전국 邑·面·洞事務所까지 연결하여 주민의 전·출입 신고를 전입신고 1회로 즉시 처리,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업무 등을 신속하게 수행도록 하고 있음.
- 주민등록전산망은 읍·면·동사무소에서 이를 활용하여 生活保護 관련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음.
 - 그러나 생활보호업무의 많은 변화가 있었음에도 그에 따른 메뉴 또는 項目의 追加나 變更이 이루어지지 않아 活用度가 매우 낮은 실정임.
- 住民登錄시스템의 생활보호업무는 주민등록 관련업무 부분에 ‘34. 사회보전 업무’로 분류되고, 생활보호, 의료보호, 보훈대상자 관리 업무를 할 수 있는 총 13개 메뉴로 구성되며 각각 생활보호업무 7개, 경로우대업무 1개, 의료보호업무 3개, 보훈업무 2개로 구성됨.

2) 住民登録電算システム 生活保護業務의 問題點

- 주민등록시스템을 이용한 생활보호업무에는 대상자의 身分 確認 및 管理를 위한 메뉴가 주를 이루며, 給與支給 업무를 위한 프로그램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수록·관리되는 變數도 25개 이하임.
 - 따라서 실무담당자들은 생활보호연명부나 증명서 발급 메뉴를 주로 사용하며, 對象者 確認을 위한 용도에 가끔 이용하고 있어 별반 도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현재 生活保護業務에 활용되고 있는 주민등록시스템의 문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보고관련 메뉴는 입력된 자료로부터 演算處理되는 것이 아니라, 비치된 관련 관리카드의 내용을 集計·作成하거나 이전에 집계되었던 파일을 불러내(Load) 修正, 出力, 轉送하는 작업이므로 PC의 문서작성기능을 이용하는 데 비해 활용성이 떨어짐.
 - 이전에 집계되었던 파일은 새로운 파일이 작성되면 파악이 불가능하며, 出力形態가 서식에 나타난 기본적인 표의 형태에 한정되므로 다양한 양식의 統計나 集計表의 활용이 어려움.
 - 주민등록상의 基礎情報(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의 확인은 가능하나 전출입시 전산자료의 電送이 이루어지지 못하며 수급자별 수급종류 및 수급액의 지속적인 관리가 불가능함.
 - 障礙人 登錄 자료, 복지서비스 給與對象 자료 등이 포함되지 않아, 생활보호업무와의 중복업무들은 별도로 수행되고 있음.
 - 대상자 관리에 요구되는 既存 行政電算網의 부동산, 자동차관리, 국민연금 전산망 등의 정보를 공동활용할 수 없음.
 - 전산 온라인 入金 시스템 등 반복되는 給與關聯 業務의 간소화를 위한 프로그램이 전무함.

- 보완·개선되고 있는 생활보호제도 등의 變化內容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효율적인 생활보호업무와 증대되는 복지서비스의 수급 관리를 위해서는 다양한 變數의 入力이 요구되고, 수급대상자의 관리, 다양한 형태의 出力을 위하여 새로운 設計가 요구되고 있음.

3. 生活保護 및 公共福祉서비스 業務 電算시스템 設計

가. 시스템 構築의 基本方向

- 生活保護와 公共福祉서비스가 統合된 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이 제도들은 目的과 性格이 상이하나 對象者는 동일인 또는 동일가구인 경우가 많으므로, 對象者 情報가 연계되어 포괄적으로 대상자 및 급여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함.
- 行政電算網과 連繫된 시스템이어야 함.
 - 既存 行政電算網(주민전산망)에 구축된 生活保護 정보를 활용하고, 주소·가구구성원 변동사항의 정보들을 住民電算網을 통하여 얻도록 하며, 가구 인적사항이나 자산·소득에 관한 정보들을 不動産·自動車電算網 등과 연계하여 얻을 수 있도록 함.
- 標準化된 시스템이어야 함.
 - 생활보호와 공공복지서비스 업무는 목적이 유사하여도 정보체계의 一貫性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표준화를 통하여 정보화의 效率性을 높여야 함.

- 運營의 獨自性이 維持되어야 함.
 - 생활보호와 공공복지서비스 업무는 여러 부서에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각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實績報告, 現況把握 등은 獨自性이 요구됨.

나. 電算시스템의 構成 및 要求事項

1) 對象者管理

- 이는 生活保護 對象者와 장애인, 노인, 모자·부자가정, 소년소녀가장세대 등으로 분류되는 公共福祉서비스 對象者의 모든 정보를 統合管理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統合管理는 대상자간 또는 공공복지서비스 대상자간에도 情報가 상호연계되도록 하여, 家口別 또는 個人別로 대상자를 검색할 때 생활보호유형, 공공복지서비스 대상여부, 장애유무 등에 대한 정보가 파악되도록 함.
- 이를 위하여 현재 個別的으로 사용되는 書式(대상자 신청서, 관리카드)을 標準化된 통합 대상자관리서식으로 一元化할 필요가 있음.

2) 給與管理

- 家口別, 個人別로 전체적인 給與의 項目 및 給與額에 대한 정보 파악이 가능해야 하며, 교육보호 및 생업자금융자에 대한 事後管理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3) 報告管理

- 報告過程에서의 오류를 방지하고 업무의 신속성을 위하여 시·군·

구와 시·도에서도 實績 및 現況 出力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설계 하며, 향후 전자문서(EDI) 교환방식에 의한 보고체계가 필요함.

4) 統計管理

- 對象者에 대한 現況과 屬性이 다양하게 파악되도록 많은 정보를 대상자 파일에 포함시키고 정보의 一貫性이 유지되도록 함. 또한 생활보호와 공공복지서비스가 結合된 새로운 統計生産이 요구되므로 코드체계의 정비와 새로운 統計開發이 필요함.

다. 데이터베이스 構築

1) 데이터베이스 構築方案

- 데이터베이스의 規模가 방대하고 構築을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既存의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함.
 - 住民電算網에서 생활보호대상자 기초파일 구축
 - 구축된 생활보호대상자 기초파일에 追加情報 입력
 - 住民電算網에서 65세 이상 노인 파일 구축
 - 장애인, 모자·부자가정, 소년·소녀가장가구 정보 입력은 이미 구축된 생활보호, 노인 등의 가구주와 가구원의 정보검색을 통하여 重複入力 방지
 - 生活保護·公共福祉서비스 대상자 통합파일(Master File)에서 단위업무별 파일의 구축

2) 데이터베이스 連結

- 생활보호와 공공복지서비스 업무는 가구와 가구원에 대한 업무가 混在되어 있으므로, 가구와 가구원 개별적으로 情報檢索이 가능하

도록 해야 하며, 단위업무 수행을 위한 파일간 정보의 連結은 주민등록번호나 가구원까지 포함하는 固有番號에 의해 상호 연결함.

3) 生活保護·公共福祉서비스 對象者 統合管理 카드

- 모든 대상자의 정보가 綜合的으로 관리될 수 있는 생활보호·공공복지서비스 대상자 統合管理 카드의 시행이 필요함.
 - 현행 관리카드는 각 사업의 主務部署가 개별 사업수행과정에서 생성된 것으로 유사한 항목이라도 書式別 코드체계가 상이함.

4. 電算網 構築

- 生活保護와 公共福祉서비스 업무는 정부가 주관하므로 정부의 基幹電算網 중 생활보호나 공공복지서비스 업무와 관련이 있거나 정보의 연계가 필요한 분야의 電算網에 대한 현황 검토가 필요함.

가. 關聯 政府 基幹電算網의 現況과 問題點

- 政府高速網
 - 總務處가 행정정보의 범정부적 공동활용과 행정정보의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각 政府部處의 전산기를 초고속망으로 연결하여 서비스함. 2000년까지 地方自治團體를 포함하여 입법부 및 사법부와 연계할 계획임.
- 地方行政綜合情報網(MOHA-NET)
 - 內務部가 중앙과 지방의 신속한 정보의 공유와 공동활용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운영함. 내무부 업무 뿐만 아니라 타 부처의 업무도 수용하고 있음. 이를 政府高速網과 연계하여 중앙부처

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개별 通信網을 구축하지 않고 문서유통과 단말접속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임.

－ 國民福祉網

- 保健福祉部가 국민에 대한 보건의료 및 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관련된 기관간의 電算連繫를 목표로 함. 관련기관들의 自律推進이라는 한계성과 기관간 업무성격 및 電算環境이 다양하여 그 계획의 구현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실정임.

－ 行政電算網

- 정부의 行政情報化事業으로 추진된 가장 대표적인 전산망으로 국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민등록관리, 부동산관리, 자동차 등록업무 등을 국민에게 서비스하는 망임.

나. 電算網 構築의 基本方向

- － 현재 정부의 基幹電算網들은 생활보호·공공복지서비스 전산시스템을 수용할 여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나 앞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 住民電算網은 부동산, 자동차망과 연동하여 운영할 계획이고, 地方行政綜合情報網(MOHA-NET)은 주민전산망과 타 부처의 지방행정 업무를 수용하여 확장할 계획임.
- － 생활보호·공공복지서비스 업무만을 위한 새로운 獨自網 신설은 비용이 막대하고, 전산자원의 重複投資가 우려되므로, 정부 또는 범국가적으로 추진하는 전산망 계획과 聯動하여 추진하도록 함.
 - 示範事業期間은 공중통신망(PSTN)을 이용함.
 - 전국적 확대운영기에는 내무부의 地方行政綜合情報網을 이용함.
 - 關聯機關(국민연금전산망, 의료보험전산망)과의 연결은 시·도에

위치한 Server에 연결하여 통신회선을 줄임.

- 中央部處(보건복지부, 내무부 등)들과 광역지방자치단체와의 연결은 政府高速網을 이용함.

다. 네트워크의 設計

- 현재 읍·면·동의 취약한 전산자원과 향후 情報通信技術의 발전추세를 감안할 때 段階別로 추진되어야 함.
- 사업 초년도(시범운영기간)는 2개 시·도, 2개 시·군·구, 20개 읍·면·동에 公衆通信網(PSTN)으로 示範事業을 시행하며, 사업 2차년도(전국확산)는 지방행정종합정보망(MOHA-NET)을 활용하여 전국에 네트워크를 구축함. 사업 3차년도(시스템 정착기)는 國家超高速 情報通信網의 기반 위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

5. 推進戰略

가. 段階別 推進 目標

- 생활보호·공공복지서비스 업무 전산화를 2001년까지 실현하기 위한 段階別 推進目標은 다음과 같음.
 - 사업 初年度에는 읍·면·동 업무 중심으로 시스템 개발과 시범 운영을 함으로서 시스템의 미비점을 보완하며, 保健福祉部는 개별적으로 시행되는 각종 管理書式이나 現況報告들을 정비함.
 - 사업 2次年度에는 개발된 시스템을 전국에 확산 운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相關기관간 情報連繫體系 구축, 지방자치단체의 人力 및 裝備 확보를 위한 국가적인 지원과 제도를 마련함.

- 국민연금전산망이나 의료보험전산망과의 정보공유를 위한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고행정체계의 효율을 위한 電磁文書(EDI)의 標準化事業과 구·시·군, 시·도관련 업무를 추가 개발함.
- 사업 3次年度에는 보다 질 높은 對國民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정보의 제공, 무인안내시스템을 위한 업무개발, 급여의 과학화 실현을 위한 복지카드 제도를 도입함.

나. 現存 問題點의 改善 方向

1) 電算人力과 裝備

- 사회복지전문요원 및 사회담당·가정복지담당 직원을 電算人力으로 활용함. 전산장비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전산장비의 共同活用을 유도하고 장비 구입시 우선적인 배려가 필요함.

2) 法·制度의 整備

- 주민전산자료의 이용은 內務部의 ‘정보연계센터’ 설치운영과 연계하여 법·제도의 改善를 요구하며, 相關기관간 정보연계를 위한 법·제도의 개선은 保健福祉部의 國民福祉網 계획과 연동하여 추진함.

3) 標準化

- 重點 標準化 對象
 - 生活保護와 公共福祉서비스 相關서식 및 구성요소
 - 정보연계기관 보유정보와의 표준화
- 標準化 推進節次 및 方法
 - 생활보호와 공공복지서비스 업무 담당자 및 有關기관 전문가의 의

- 건을 수렴하여 초안을 마련한 후 國民福祉網標準院과 심의하고,
- 최종안을 확정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 한 후, 기존서식을 새로운 표준서식에 따라 수정 또는 개폐하며, 업무수행 기관에 전달 시행하도록 함.

4) 運營方案

- 생활보호·공공복지서비스 전산시스템의 개발과 시범운용은 保健福祉部가 예산등을 지원하고, 전국 확대시엔 地方自治團體가 운영함.
- 구축한 시스템의 未備點과 개선사항은 전문 研究機關의 지속적인 연구와 평가를 통하여 보완하고, 하드웨어나 통신망의 효율성은 韓國電算院의 지속적인 감리체계가 이루어지도록 함.

다. 期待效果

- 대상자 선정이나 급여를 위한 각종 행정절차가 簡素化되고, 대상자간의 정보 및 급여가 統合되어 파악되므로 복지행정의 效率化와 科學化를 실현할 것임.
- 需要者 중심의 便宜 제공과 복지수요에 기초한 복지정책 수립이 가능하며, 관련 전산망의 정보 활용으로 생활보호대상자의 자활지원 및 복지 수요자에 대한 福祉情報 제공이 多樣化될 것임.

I. 序論

1. 研究의 背景 및 必要性

우리 나라 사회복지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 제도 가운데 公共扶助, 그리고 민간부문의 공급과 보완적으로 이루어지는 公共福祉서비스는 國家 豫算을 통해 정부의 주관으로 수행된다. 이는 저소득 가구, 노인, 장애인, 모자·부자가정가구, 소년·소녀가장가구 등 사회적으로 脆弱한 階層을 대상으로,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거나 노령, 장애 등 기능상의 어려움에 대하여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여 궁극적으로는 인간다운 삶을 保障하고 自立을 위한 基盤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업의 對象者 數는 그 규모가 매우 크며 구성원의 속성이 매우 다양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생활보호대상자 수는 매년 약간의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1997년 현재 141만명으로 전 인구의 3.1%를 차지하고 있으며 복지서비스대상자 수는 인구의 노령화, 재해 및 사고 발생의 증가, 가족해체의 가속화 등으로 점증할 전망이다.

생활보호와 복지서비스사업에 매년 國家가 負擔해야 하는 비용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투입된 예산이 效率的으로 活用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사업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나 그 중에서도 사업 전반에 걸친 情報化의 未備는 큰 장애요인 중 하나가 되고 있다. 그로 인하여 대상자의 선정과 관리, 수요에 기초한 정책의 결정, 통합된 급여나 서비스 제공 등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는 복지제도상의 문제점

과 함께 業務行政體系의 전근대성에 크게 기인하고 있다.

국가적으로 『情報化促進 施行計劃』과 함께 각 분야별로 정보화의 추진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는 경제·사회적 여건변화에 따른 작은 정부의 지향, 행정효율화 등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수단이 되고 있다. 즉, 전산매체와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사업의 合理化·能率化·科學化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그간 생활보호와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의 業務 電算化는 타 분야에 비하여 미진한 상태였다. 보건복지부가 1992년부터 추진한 『國民福祉網 計劃』¹⁾에서도 사회복지분야는 복지행정 통계업무에 국한함으로써 국가의 중점 사회복지업무인 생활보호 및 복지서비스 대상의 관리, 급여업무의 전산화 등이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 이유로는 情報化 對象이 다양하고, 이 업무들을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에 위임하고 있어 地方自治團體나 民間의 電算環境에 의존해야 하며, 정보망 구축에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막대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한 전산화활동은 1992년 서울시에서 개발한 ‘생활보호대상자 관리 프로그램’과 1995년 示範 保健福祉事務所 업무를 중심으로 개발된 ‘복지급여통합 전산프로그램’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들은 생활보호와 사회복지업무 전반을 수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고 타 전산망과의 연계체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사용이 거의 중단된 상태이다.

1996년 이후 民間團體 등의 사회복지관련 정보화의 활동은 韓國社會福祉協議會에서 추진하는 ‘사회복지자원관리 시스템’, 障礙人再活情報센터에서 추진하는 ‘장애인재활정보 시스템’, 大韓老人會의 ‘노인취업정보 시스템’, 韓國保育施設聯合會의 ‘아동보육종합정보 시스템’ 등

1) 사회복지, 보건의료, 보건산업, 사회보험의 사업주체를 연계하여 종합적인 보건·복지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아직은 기본계획 수립에 머물고 있다.

을 들 수 있다. 이는 복지서비스 대상자들간의 個別的인 情報의 提供이나 交流에 역점이 주어지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생활보호와 사회복지서비스 업무 전반에 대한 정보화는 부분적으로 시도된 바가 있지만 아직도 타 분야에 비하여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국가 주도하에 수행된 「行政電算網」 사업은 1차와 2차에 걸친 지속적인 추진으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 결과 기초 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까지 主電算機가 보급되어 不動産, 自動車管理 업무를 전산화하였고, 읍·면·동까지 연결된 住民電算網은 주민등록 전·출입업무를 전입 1회로 하여 일회방문(One-Stop)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국가의 정보화 사업은 타 분야의 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적인 여건을 제공하였다. 앞으로는 이를 바탕으로 국민생활과 직결되고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의 정보화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특히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의 중점 복지시책인 生活保護와 公共福祉서비스 분야의 정보화는 향후 국가의 行政業務 電算化 사업 중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이다.

2. 研究의 範圍

생활보호·공공복지서비스 전산시스템 구축에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시스템이 추구하는 目標와 사용기관에 주어진 與件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시스템이 추구해야 할 목표 설정을 위하여 시스템이 설치될 기관의 業務의 類型을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필요로 하는 電算 需要를 도출하였다. 또한 수요에 바탕을 둔 기본적인 시스템의 構成과 입력할 데이터의 種類, 데이터베이스 構築 方案 등을 제시하였다.

일반적으로 情報시스템 構築은 수요조사 → 개념설계 → 상세설계

→ 시범연구 → 구축 → 운용 및 관리 단계를 거친다. 이 일련의 단계에서 본 연구에서는 사용 부서의 수요에 기초한 시스템의 概念設計에 한정하였고 시스템 구현을 위한 詳細設計는 앞으로 선정될 전담사업자와 공동 추진하도록 할 것이다. 또한 향후 업무의 시스템 구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개념설계에서 제시한 데이터 構造에 맞추어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정보의 共有가 필요한 타 전산망과의 連繫體系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생활보호·공공복지서비스 전산시스템은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部署가 다양하므로 그 전산시스템의 범위가 상당히 包括的이며 시스템 구축에 따른 要求도 다양하고, 期待水準 또한 대단히 높을 것이다. 그러나 사업 부서의 전산환경을 고려할 때 욕구가 한꺼번에 이루어지기는 어렵고 段階的으로 업무개발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스템에 대한 需要把握에 역점을 두고 이를 토대로 시스템의 구성, 타 전산망과의 연계체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추진전략 등 基本計劃을 수립할 때 필요한 일련의 내용을 도출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본 연구에서 업무분석과 전산화 설계의 範圍는 公共行政體系를 통해 실제로 對象者에 대한 급여와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업무, 즉 시·군·구와 읍·면·동의 복지관련 소관업무 중 생활보호와 장애인, 노인, 저소득 편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 등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공공복지서비스 업무에 제한하였다. 이는 실제로 低所得 脆弱階層을 중심으로 한 公共扶助 업무로서 전체 업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며, 대상자와의 接觸을 통해 수행됨에 따라 업무절차가 복잡하고 업무담당자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업무들이다. 생활보호와 공공복지서비스 업무 중에서 시·도, 시·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일부업무가 있으나 대부분의 업무가 읍·면·동을 통하여 수행되므로 현재 邑·面·洞의 업무를

중심으로 시스템을 개발하고 점진적으로 시·군·구, 시·도 업무의 전산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 동안 行政電算化의 일환으로 몇몇 시·도, 시·군·구에서 일부 업무를 대상으로 전산화가 추진되었으나 전체적인 업무를 수용하거나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정보공유에 대한 필요성은 타 부문에서 구축된 情報의 共同利用이나 連繫가 중요시되므로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요청되고 있다.

본 연구의 내용은 우선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연구의 범위를 개괄적으로 기술하였고, 제2장에서는 생활보호와 공공복지서비스 업무를 중심으로 시·군·구, 읍·면·동에서 수행하고 있는 전체적인 業務의 概要와 住民電算網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생활보호업무 전산시스템을 개괄하고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제3장에서는 생활보호와 공공복지서비스를 시스템화하기 위하여 여러 業務의 類型을 구분하고 실행상의 절차를 파악하였다. 또한 읍·면·동, 시·군·구, 시·도간의 업무 흐름과 관련한 書式이나 臺帳을 중심으로 情報의 種類와 內容을 파악하였다.

제4장에서는 시스템 設計의 方向과 시스템별로 필요한 業務를 정의하고, 시스템에서 필요한 데이터베이스와 그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항목들을 정의하였다. 또한 데이터베이스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생활보호 및 공공복지서비스 전산시스템이 필요로 하는 他電算網과의 情報 共有와 必要情報를 정의하고, 행정체계에서 필요한 정보의 전달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방안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제6장에서는 생활보호 및 공공복지서비스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주체의 推進戰略 및 運營方案 등에 대하여 논하였다.

Ⅱ. 生活保護·公共福祉서비스 業務 現況 및 電算化 實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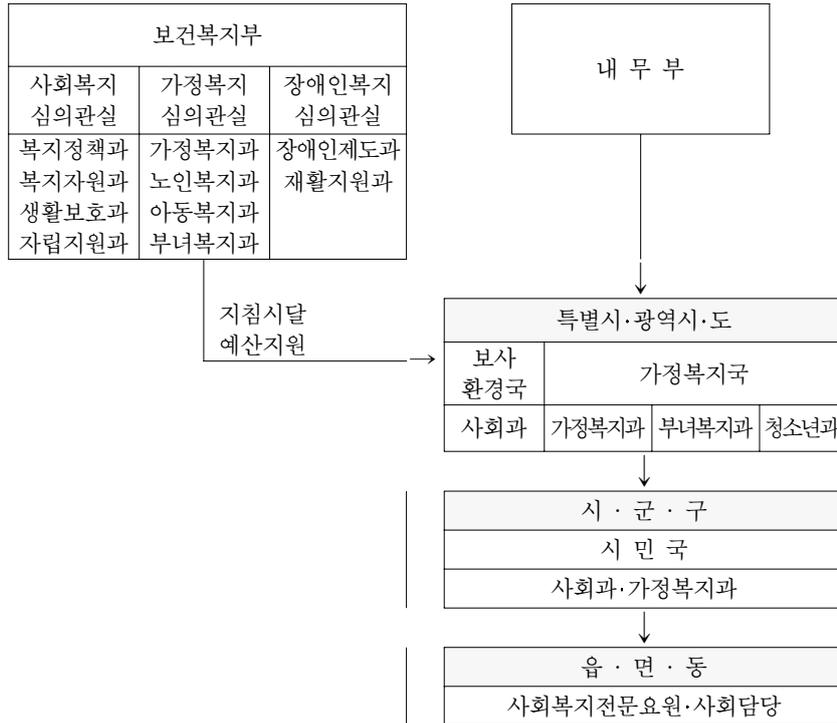
1. 生活保護 및 公共福祉서비스 行政體系

가. 公共福祉 行政體系

현행 생활보호 및 공공복지서비스의 行政傳達體系는 保健福祉部가 사업별로 사업지침과 예산을 책정하고 內務部의 시·도, 시·군·구, 읍·면·동의 행정조직을 통하여 집행되는 二元化된 구조로서, 그 체계는 [圖 II-1]과 같다.

현행 공공복지행정체계는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그에 부응하는 組織 및 事業遂行體系의 변모가 추진되고 있다. 지방자치제가 활성화됨에 따라 각 地方自治團體의 제도운용의 자율권이 확대되고 이에 적합한 행정조직의 개선이 시도되고 있으며, 이의 한 사례로 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의 제고를 위하여 市·郡·區廳의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가 통합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또한 복지전담기구 설치 필요성의 논의속에서 1995년 7월부터 전국 5개 지역에 保健福祉事務所 示範事業이 실시되고 있다. 이는 기존 보건소에 복지전달체계의 최종단위를 시·군·구로 상향 조정하여 복지업무를 집중시킨 형태로서, 보건의료서비스와 복지서비스의 統合 提供 뿐만 아니라 공공복지 전달업무의 體系化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복지행정업무의 능률화를 위해 일부 지자체에서는 독자적으로 관련 업무의 電算化를 추진하는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

[圖 II-1] 生活保護 및 公共福祉서비스 行政體系



이와 같은 움직임은 다음과 같은 현실을 근거로 하여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업무 수행이 독립된 집행 행정구조를 갖추고 있지 못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력을 동원하여 사업이 수행되고 있어, 一貫性和 專門性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지방자치체가 실시된 이후 공공부조 및 서비스에 대한 예산분담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로 이러한 행정체계를 통합 업무집행에는 地域別 特性이 반영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생활보호대상자와 급여대상이 되고 있는 장애인, 노인, 저소득

편부모 가구, 소년소녀가장가구 등은 業務對象 및 給與內容이 상당히 重複되고 있음에도 상이한 소관부서에서 대상자의 選定과 管理가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통합서비스 제공이 어렵고, 행정업무의 비효율성이 초래되고 있다.

따라서 제공되는 급여 및 서비스의 專門性和 업무수행상의 效率性 문제는 공공부조 및 복지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부각되어 왔다.

나. 生活保護·公共福祉서비스 業務의 領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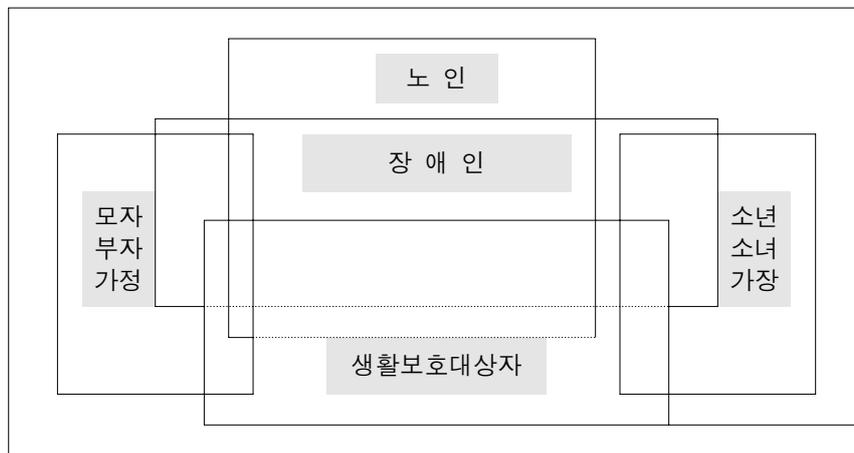
현행 공공복지행정은 시·도, 시·군·구, 읍·면·동의 내무행정체계를 통해 수행되고 있다. 따라서 福祉行政 電算化의 대상 업무는 특별시·직할시·도청, 시청·군청·구청, 동사무소·읍·면사무소에서 수행되는 복지업무이다. 업무는 公共扶助, 社會福祉서비스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社會保障基本法 제3조에는 公共扶助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로 정의하고 있으며, 社會福祉서비스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재활·직업소개 및 지도·사회복지시설 이용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 규정을 근거로 할 때 福祉行政體系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는 크게 주로 低所得 脆弱階層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급여를 전달하는 ‘公共扶助業務’와 이들을 포함한 一般國民을 대상으로 보다 나은 생활여건을 제공하기 위한 제반 지원이 이루어지는 ‘社會福祉서비스’업무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행 복지행정업무 가운데 상대적으로 우선 순위가 높은 生活保護와 公共福祉서비스 업무를 전산화 대상으로 분

석하고자 한다. 이는 生活保護 업무 전반, 障礙人 업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저소득계층의 老人, 偏父母家庭, 少年少女家長家口 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업무를 내용으로 한다. 이들은 대상별로 중복될 수 있는데 이를 도식화하면 [圖 II-2]와 같다. 업무전산화를 위해서는 이를 감안하여 업무가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圖 II-2] 福祉行政體系의 生活保護 및 公共福祉서비스 對象者 分類



2. 生活保護 및 公共福祉서비스 業務 內容

가. 生活保護 業務

1) 目的 및 對象

生活保護制度는 생활보호법 제 1조에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보호를 행하여 이들의 最低生活를 보장하고 自活을 조성함으로써 사회복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에 의해 보호를 받는 對象者는 부양의무자²⁾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① 65세 이상의 노쇠자, ② 18세 미만의 아동, ③ 임산부, ④ 질병·사고등의 결과로 인하여 근로능력을 상실하였거나 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자, ⑤ ①, ④의 경우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서 이들의 부양, 양육, 간병과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생활이 어려운 자, ⑥ 기타 생활이 어려운 자³⁾로서 자활을 위하여 이 법에 의한 보호의 일부가 필요한 자 등으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소득과 재산이 매년 일정기준 이하인 경우 해당된다.⁴⁾

이들은 居宅保護 대상, 施設保護 대상, 自活保護 대상으로 구분하여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위의 居宅保護對象者는 ①부터 ④에 해당하는 경우와 50세 이상의 부녀자만으로 구성된 가구에 속하는 자로서 그 주거에서 보호가 이루어지며, 施設保護對象者는 ①부터 ④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주거가 없거나, 있어도 그 곳에서는 보호를 행할 수 없어 보호시설에 입소하게 하며, 自活保護對象者는 ①, ②에 해당되지 않는 대상자로서 자활을 위하여 보호를 행할 대상을 정하고 있다.

1997년 생활보호대상자는 141만 4천명으로 전인구의 3.1%를 차지하며, 거택보호는 29만 7천명, 자활보호는 104만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생활보호의 基本原則은 보호대상자가 자신의 생활을 유지·향상하기

2) 생활보호사업의 부양의무자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2촌이내의 혈족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출가한 딸, 양자, 양부모, 서모, 의부와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는 자로서 실제 부양받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보건복지부 생활보호과, 생활보호사업 지침, 1997).

3) 실직, 기타 생활수단의 상실 또는 저소득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 이재자로서 재해구호법에 의한 구호기간이 종료된 자, 기타 생활근거를 상실한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그 보호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4) '97년 거택보호대상자는 월소득 21만원 이하(인), 재산 2,600만원 이하(가구), 자활보호대상자는 월소득 22만원 이하(인), 재산 2,800만원 이하(가구)를 기준으로 한다.

위하여 그 자산·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발전시키도록 하는 것이며, 보호의 수준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給與 內容 및 現況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의 종류는 생계보호, 의료보호, 자활보호, 교육보호, 해산보호, 장제보호로 구분된다.

生計保護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음식물, 의복, 기타 일상생활의 수요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대체로 現金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다⁵⁾(表 II-1 참조). 1997년 현재 1인당 월 보호수준을 살펴 보면, 거택보호대상자는 13만 3천원, 시설보호대상자는 10만 8천원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表 II-1〉 1997年 生活保護給與 內容

(단위: 원)

지원내용	거택보호대상자	시설보호대상자
주식비(인/월)	18,485	25,638
부식비(인/월)	1,406	1,406
연료비(거택: 세대/일, 시설: 인/월)	1,200	79
피복비(인/년)	90,940	90,940
장의비(구당)	500,000	500,000
월동대책비(인/년)	80,000	-
생활용품비(세대/월)	10,000	-
전체 지원수준(인/월) (교육 및 의료비 포함)	133,000	108,000

資料: 보건복지부, 『'97 주요업무자료』, 1997.

5) 피보호자의 주거가 오지·벽지·낙도 등 교통이 불편한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보호금품을 매월 정기적으로 미리 지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서는 3월분을 한도로 정기적으로 보호금품을 미리 지급할 수 있다(생활보호법 제8조).

自活保護는 보호대상자의 자활을 조성하기 위하여, 자활에 필요한 金品の 지급 또는 대여, 직업훈련이나 취업알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위탁하여 자활에 필요한 技能習得의 지원, 就業의 알선 등을 실시한다. 직업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직업훈련을 받도록 하고, 그 훈련에 필요한 준비금·수당·식비 및 가족생계비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生業資金의 融資가 1982년부터 농협 및 국민은행을 통해 가구당 1,200만원 한도내에서 연리 6%, 5년거치 5년상환의 조건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1997년에는 7천 가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한편 생활보호대상자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각종 減免制度의 내용은 다음 <表 II-2> 와 같다.

<表 II-2> 生活保護對象者 減免制度

감면제도	감면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세 비과세 • TV 수신료 면제 • 주민등록 업무수수료 면제 • 주민등록 과태료 면제 • 상수도 및 하수도요금 면제 • 쓰레기수거 수수료 감면 • 쓰레기봉투 무료 제공 • 주택보호대상자 복지전화 무료 설치 및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세(개인균등할 5,000원) 비과세 • 월 2,500원 수신료 면제 • 해당 수수료 면제 • 해당 과태료 면제 • 기본사용료 2,500원 면제(서울시) • 해당 수수료 감면(서울시) • 20l 봉투 3매 지급(1인/월)(서울시) • 설치료(25만원), 전화기 제공, 기본사용료 2,500원 통사수 150도수(6,000원)까지 면제

資料: 보건복지부, 『생활보호사업지침』, 1997.

教育保護는 보호대상자에게 수업료 및 기타 보호금품을 지원하는 것으로, 금전 또는 물품을 피보호자의 친권자나 후견인 또는 피보호자에게 지급한다. 1997년 현재 15만 천명의 중학교, 실업고생, 인문고생에게 授業料 및 入學金 전액이 지원되었다.

葬祭保護는 보호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등에 대한 장제조치가 이루어진다. 이에 대한 신청이 있을 경우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다.

解産保護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조산, 분만전과 분만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보호금품은 피보호자나 그 가구주(가구주에 준하는 자)에게 지급되는데, 보호를 의료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보호금품을 그 의료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대상은 거택 및 자활보호대상자 중 出産 女性으로, 1997년 대상인원을 7,700명으로 하고 있으며, 1인당 1회 출산시 10만원이 지급된다.

한편, 醫療保護는 거택보호대상자, 시설보호대상자, 재해구호법에 의한 재해자, 국가유공자, 인간문화재, 의사상자 및 그 유족, 귀순북한동포, 성병감염자 등(1종)과 자활보호대상자(2종)에게 실시되는데, 1997년 현재 1종 602,217명, 2종 1,039,908명의 보호대상이며, 1996년 진료율(실인원/대상자수)은 외래 4.08, 입원 0.1을 나타내고 있다.

나. 障礙人福祉 業務

1) 目的 및 對象

1995년 현재 전국 障礙人은 105만 3천명⁶⁾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登錄障礙人은 1996년말 현재 416,889명으로 39.6%를 나타내고 있다.

장애인복지의 目標는 장애인의 완전한 社會參與와 平等을 보장하는 것이며, 현재 장애인을 위한 국가의 복지정책은 지방자치단체등에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고 장애발생의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훈련·보호·교육·고용의 증진, 수당의 지급 등을 통해 수행되고 있다.

6) '9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인출현율을 인구 1천명당 23.5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表 II-3〉 年度別 登錄障礙人 現況

(단위: 명)

	계	지체	정신지체	시각	청각·언어	보훈대상
추정장애인(1995)	105만 3천	70만 4천	8만 1천	7만 5천	19만 3천	-
등록장애인(1996)	416,889명	248,690	51,813	23,507	38,465	54,414

資料: 보건복지부, 『'97 주요업무자료』, 1997.

장애인복지의 對象은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또는 정신지체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규정되고 있다. 이들에 대하여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장애의 발생을 예방하고, 자립을 지원하며 필요한 보호를 실시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이 부여되고 있다.⁷⁾

2) 給與 內容 및 現況

장애인의 연령 및 장애 종류, 정도에 따라 적절한 보호, 의료, 생활 지도와 기능회복훈련, 교육시설 설치, 직업지도, 직업훈련 및 직업소개 실시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위하여 시·군·구, 읍·면·동의 공공행정체계에서 수행되는 업무는 障礙人 登錄, 再活相談 및 入所 조치, 醫療費 및 子女教育費 지급, 補裝具 교부, 資金 貸與, 生業 지원, 自立訓練費 지급, 雇傭 촉진, 便宜施設 설치, 生計補助手當 지급, 障礙人福祉施設 설치 등이다.

7) 한편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상담 및 지도업무를 위하여 공무원인 장애인복지지도원을 구·시·군에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들은 ① 장애인과 가족, 관계인에 대한 상담·지도, ② 장애인에 대한 검진·진료 또는 보건 등의 지도와 관계 전문기관에 대한 검진·진료·보건지도 등의 의뢰, ③ 장애인복지시설 입소·통원, 이용의 알선, ④ 보장구의 교부, 사용·수리 지도, ⑤ 장애인의 직업적성 평가·직업훈련 및 취업 알선과 의뢰, ⑥ 지역사회자원의 활용 알선, ⑦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에 관한 조사 및 지도, ⑧ 기타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가) 所得保障 支援

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하여 생계보조수당 지급, 자녀학비 지원, 자립자금 대여, 공공요금 감면 등의 支援을 제도화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보호대상자와 의료부조대상자 중 重症의 重複障礙, 精神遲滯 등의 장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는 生計補助手當을 지급한다. 1997년에는 생활보호대상 중증·중복장애인 42,000명에게 월 45,000원씩 지급되고 있다.

중증장애인이 부양하는 子女에 대하여 教育費를 지급하는데, 생활보호대상자는 아니나 일정규모(가구당 3300만원, 월소득 28만원) 이하의 재산 및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저소득 장애인가구의 자녀(중·고교생)에 대한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1992년부터 지원하고 있다.⁸⁾

장애인의 사업개시 및 취업, 이에 필요한 지식·기능의 습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1992년부터 장애인 自立資金 貸與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인 가구주나 배우자가 장애인인 가구주를 대상으로 하며(재산 5000만원 이하, 가구원당 월평균 소득 35만원 이하), 1997년도에는 연리 6%,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의 조건으로 가구당 1200만원 한도내에서 대여하도록 하였다. 貸與資金의 종류는 생업자금, 취업 지도 및 기술훈련비, 기능회복 훈련을 위한 고가 재활기기 구입비, 고가의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등이다. 한편 生業支援을 위한 조치로서는 공공시설안의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위탁할 때, 제조담배소매인·홍삼류판매인 지정신청, 국내우표류판매업 허가신청 등을 한 경우에는 장애인의 신청을 優先 反映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의 經濟的 負擔 輕減을 위한 조치로서 다음 <表 II-4>에 제시된 바와 같은 각종 공공요금, 세금의 감면 및 할인을 통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8) 생활보호대상 장애인 가구, 모자가정의 중학생 및 실업고, 인문고생, 특수학교의 중학생 및 고교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表 II-4〉 障 碍 人 經 濟 的 負 擔 輕 減 施 策

시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 전화요금 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세 이상 장애인가구주 및 그 배우자명의 1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내통화료 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 승용자동차 세금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단체, 복지시설 및 특수학교 전화 1대 장애인(1~3급)본인명의 등록차량(1,500cc 미만) 장애인(1~3급), 시각장애인(1~4급)중 장애인 본인, 배우자, 부모명의 등록차량(2,000cc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1~2급: 40%, 3~4급: 30%, 5~6급: 20% 구입시 특별소비세 면제 자동차세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등록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70종, 재활치료 의료용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속세 인적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500만원에 75세에 달할 때까지의 횟수로 곱한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세 인적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 15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시설 입장요금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궁, 박물관, 공원등 무료 (장애인수첩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철도요금 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요금의 50%(철도는 무궁화호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철도요금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액(중증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항공료 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선 요금의 50%(1~3급 경우 보호인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구임대주택 입주가산점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보호대상자 중 장애등급 1~3급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대상자 선정시 가산점 10점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용 승용차 LPG 연료사용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명의 등록차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PG연료사용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 의료비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등록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해년도 총급여액의 1/3 초과 재활의료비 전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자동차분 의료보험료 감면(지역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 본인명의 등록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차분의료보험료 전액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 및 보장구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가가치세 감면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보조기,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및 목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자동차 표지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 또는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명의 등록자동차 1대 및 관련단체명의 등록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차 표지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 1가구 2차량 이상 부과되는 중과세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3급 장애인 명의 등록자동차(2000cc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등록세·취득세의 중과세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주택분양시 특별분양 대상에 장애인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주택분양시 특별분양대상(10%)에 장애인 포함

나) 醫療再活 支援

저소득장애인에게 의료 접근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1990년부터 본인 부담 外來診療費의 50%, 入院診療費의 20%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보장구의 구입이나 수리비용의 부담이 곤란한 장애인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補裝具⁹⁾의 교부·수리와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이의 여건 조성을 위하여 보장구를 개발·보급하는 우수 보장구 업체에 자금을 융자·보조하고 있다.

생활보호대상 및 그 차상위 계층의 장애인에게 의수족, 보조기, 휠체어, 흰지팡이 등의 보장구를 1990년부터 지원하고 있으며(1996년 3천명), 지체장애인용지팡이, 저시력보조기, 보청기, 언어장애인용 전기후두 등에 대하여 醫療保險 給與를 실시하고 있다.

다) 職業再活 支援

직업훈련 및 취업기회 제공을 위하여 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재활시설 등의 직업훈련시설 및 장비를 보강하여 障礙人職業訓練을 강화하고, 8개소의 障礙人勤勞施設을 운영 지원하며 장애인재활시설, 장애인종합복지관, 사회복지관 등에 장애인 保護作業場(117개소)을 부설 운영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라) 施設保護

1996년말 현재 전국 243개의 障礙人福祉施設이 운영되고 있으며, 그동안 지속적인 시설 확충과 의료 및 직업재활장비의 보강을 통하여 장애인 재활기능을 확충하고 전문화하고 있다.

9) 의지, 보조기, 휠체어, 보청기, 점판 및 점필, 흰지팡이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장구를 대상으로 하며, 1인당 1종류만 인정한다.

〈表 II-5〉 障 碍 人 再 活 (收 容) 施 設 現 況 (1996 年 末 現 在)

구 분	계	재활(수용)시설						이용시설		
		지체	시각	청각	정신 지체	요양	근로	복지관	재활 병의원	체육관
시설수(개소)	243	37	11	14	51	57	7	41	13	12
수용인원(명)	15,240	3,192	645	949	5,437	4,687	330	-	-	-

資料: 보건복지부, 『'97 주요업무자료』, 1997.

또한 저소득 장애인 賃貸住宅 支援이 이루어져, 1996년 현재 299가구에 가구당 700~2000만원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재가장애인이 晝間·短期保護를 이용하는 경우 생활보호대상자에게는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다. 女性福祉業務

1) 目的 및 對象

현재 여성복지를 위해 실시되고 있는 사업들은 要保護女性 保護와 관련하여 여성상담사업, 윤락여성 선도사업, 미혼모 발생예방사업, 성폭력예방 및 보호사업, 모자가정 보호 및 지원, 여성복지시설 운영 등이 있고, 그 밖에 女性支援事業으로 여성회관 운영과 각종 활동에 대한 지원사업들이 있다. 이 가운데 시·군·구, 읍·면·동을 통해 대상자를 위한 직접적인 급여가 이루어지는 업무는 母子家庭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다. 모자복지법에서는 이들에 대하여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함으로써 모자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이 가능하도록 각종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保護對象이 되는 母子家庭은 배우자와의 사별·이혼·유기된 여성, 정신·신체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 미혼모 등이 가구주(가구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경우)인 가정¹⁰⁾을 의미

하며, 兒童은 이러한 가정의 18세 미만(취학시 20세 미만)을 말한다.

1996년 현재 모자복지법상 보호대상 모자가정(4인가족 기준 월소득 100만원 미만, 재산 4,500만원 미만)은 43,801가구이며 가구원 수는 126,826명인데, 보호대상가정 중 모자복지법에 의한 보호가 20,435가구,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가 20,761가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보호가 142가구로서 전체 모자가정의 94.4%인 41,338가구가 보호를 받고 있다.

2) 給與 內容 및 現況

가) 相談事業

저소득모자가정을 포함하여 미혼모·가출여성·윤락여성 등 요보호여성의 발생 예방과 사후선도를 위한 相談事業을 전개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30개소의 女性福祉相談所¹⁰⁾를 운영하고 있다. 역, 윤락여성집결지, 기지촌 등의 취약지역에 62개소의 간이상담소를 설치하고 여성복지상담원 406명을 배치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나) 施設保護

低所得 無住宅母子家庭은 모자보호시설(37개소)¹²⁾에 3~5년동안 수

10) 그 외에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치 않은 경우,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가출한 경우, 배우자의 해외거주·장기복역등으로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11) 시·도, 시·군·구, 모자복지상담소에는 모자복지에 관한 사항의 상담·지도를 위하여 모자복지상담원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의 직무는 ① 모자가정에 대한 신상 및 고충상담, ② 보호대상자의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③ 취업상담 및 지원, ④ 보호내용의 구분, ⑤ 피보호자 일시 보호, ⑥ 사후관리, ⑦ 기타 모자복지상담에 필요한 사항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12) 모자복지시설은 모자보호시설, 모자자립시설, 미혼모시설, 일시보호시설, 부녀복지관, 부녀상담소 등이 있다.

용보호하여 基本生計 보조와 자립기반 조성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퇴소가구에게는 200만원의 自立定着金을 지원하고 있다.

선도보호가 필요한 여성은 職業輔導施設에 6개월내지 1년간 수용보호하여 정신교육과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자립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배우자의 학대로 아동의 양육과 모의 건강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1~2개월 가량을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一時保護施設을 7개소에 설치·운영하고 있다.

다) 低所得 母子家庭 支援¹³⁾

모자가정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事業 必要資金, 兒童教育費, 醫療費, 住宅資金 등을 대여하며, 공공시설안의 매점·시설의 설치 허가시 모자가정 또는 모자복지단체에 우선 허가할 수 있다.

중학생 및 실업계고교생 자녀교육비로 授業料 및 入學金 전액을 지원하고(1996년 17,525명), 6세 이하 아동의 養育費를 지원하고 있다(1996년 5,605명). 저소득모자가정 250가구에 가구당 1,200만원씩의 生業資金 融資를 실시하고 있다. 무주택 모자가정에게는 국민주택을 分讓·賃貸할 때 모자가정에 일정비율이 우선 분양되도록 하고 있으며, 1996년의 경우 1,787가구에 대해 임대주택 공급지원이 이루어졌다.

라) 一軍慰安婦에 대한 保護와 支援

일군위안부로 보호·지원대상자로 결정·등록된 경우 생활보호와 의료보호(제1종)외에 生活安定支援金을 지급한다. 무주택자에게 임대주

13) 한편 父子家庭에 대해서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보호대상 부자가정은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며 모가 없거나 가사노동력이 없어 부가 가계운영을 담당하는 저소득 가정으로서, 保護基準은 소득부분의 경우 모자가정에 비해 가사비용 20만원을 합산한 기준이다. 支援內容은 자녀학비, 양육비, 보육료 면제, 생업자금 융자 등이 母子家庭과 같은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택을 우선 임대하며, 현재 160명이 생활보호, 의료보호,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 생활안정지원금(일시금: 500만원, 월지원금: 25만원)의 지급을 받는 등 법에 의한 보호지원을 받고 있다.

라. 兒童福祉 業務

1) 目的 및 對象

현재 兒童福祉의 對象은 18세 미만의 아동, 임신중이거나 출산후 6월이내의 임산부 등으로, 특히, 要保護兒童 및 要保護妊産婦에 대한 급여 및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 요보호아동은 보호자¹⁴⁾로부터 유실, 유기 또는 이탈된 경우,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 등으로, 요보호임산부는 아동의 건전한 출생을 기할 수 없는 경우에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1997년 현재 아동인구는 전체 인구의 25.7%(1,204만명)이며, 이 가운데 부모의 사망, 질병 등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20세 이하의 少年少女家長家口는 1996년 현재 8,849가구(총 16,001명; 미취학 149, 초등학생 2,854, 중학생 5,447, 고등학생 4,883, 대학생 219, 기타 2,499명)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生活保護對象者로 우선 정하여 생계보호, 의료보호 및 교육보호를 실시하고, 피복비, 영양급식비, 학용품비, 교통비, 부교재 및 교양도서비 등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

2) 給與 內容 및 現況

가) 兒童相談事業

현재 공립아동상담소 13개소를 비롯하여 전국에 46개소의 兒童相談

14) 보호자는 친권자, 후견인 등 현재 아동을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所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시·군·구 및 공립아동상담소 등에 兒童福祉指導員 378명을 배치하여 상담·지도를 담당하게 하고, 읍·면·동에는 兒童委員¹⁵⁾ 7,112명을 위촉하여 아동문제에 대한 일차적 상담체계를 마련하고 시·군·구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나) 家庭保護

우선 少年少女家長家口의 자립능력 배양을 위하여 생활보호에 의한 보호 이외에 지급되고 있는 급여를 살펴 보면, 學用品費(매년 초등학교 2만 5천원, 중학생 3만원, 고교생 3만 5천원), 被服費(7만 6천원), 營養給食費(25만 5천5백원) 등과 중고생의 경우 交通費(18만 2천5백원), 副教材 및 教養圖書費(10만원), 신입생 校服費(9만원, 11만원), 父母死亡家口 지원금(10만원) 등이 있다. 또한 직업훈련을 지도하고, 지역사회내의 후원자를 발굴하여 結緣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 施設保護

兒童福祉施設은 아동상담소, 영아시설, 육아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직업보도시설, 자립지원시설 등으로 구분되는데 1996년말 현재 273개소에서 17,319명이 수용·보호를 받고 있다. 아동복지시설의 아동이 18세 혹은 연장보호를 받아 20세에 퇴소하게 되면 기본생활을 위한 일정액을 지원하고, 연장기간동안 職業訓練을 시키거나 최근 설치된 自立生活館 14개소를 그 기간동안 숙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5) 아동위원에게는 구·시·읍·면 각 관할구역안의 아동의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하며 아동복지지도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하도록 하는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명예직으로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으며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아동위원의 정수는 읍·면·동단위로 2인 이상으로 하되, 인구수 및 아동수의 비율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表 II-6〉 兒童福祉施設 收容保護 現況(1996年末 現在)

구분	계	영아	육아	직업보호	교호	자립지원	일시보호
시설수(개소)	273	28	213	6	6	11	9
수용인원(명)	17,319	1,624	14,302	250	462	197	484

資料: 보건복지부, 『'97 주요업무자료』, 1997.

라) 兒童結緣事業

불우아동결연사업은 시설보호아동, 소년소녀가장가구, 모자가정 등 불우아동을 대상으로 後援者를 개발하기 시작하였으며, 1981년부터는 韓國福祉財團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들 대다수가 결연을 통해 도움을 받고 있으며, 居宅保護對象老人, 障礙人 등에게도 결연후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마) 保育施設 支援

보육시설에 대한 運營費를 지원하여 보육중인 低所得層 兒童에게 혜택을 주기 위하여 시설별·아동별 지원을 병행 실시하고 있다. 국·공립,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3,997개소에 대하여 연평균 4300만원씩 운영경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전 보육시설에 대하여 生活保護對象者 兒童에게 연령대별로 10만 9천원에서 21만 3천원까지 보육비용 전액을 지원하고, 월평균소득 110만원 미만 저소득층 자녀에게는 4만 4천원에서 8만 5천원까지 보육비용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마. 老人福祉 業務

1) 目的 및 對象

우리 나라의 老人人口는 65세 이상 노인이 290만여명으로 1997년 전체인구의 6.3%를 차지하고 있으며, 생활보호대상자 중 65세 이상

노인은 265,119명으로 이는 거택보호가구주의 51.6%, 자활보호가구주의 30.7%를 차지하고 있다.

노인복지는 노인의 건강유지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 적당한 일과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 노인 및 보호자에 대한 相談·指導¹⁶⁾, 健康診斷, 老人福祉施設의 설치·운영 및 입소·위탁 등을 실시해야 하고, 在家老人福祉 증진사업, 老人餘暇事業 지원, 敬老優待, 노인을 위한 住宅建設 촉진 등을 도모하고 있으며, 老齡手當 지급, 生業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2) 給與 內容 및 現況

국가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을 각종 老人福祉施設에 수용·보호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 노인들에게는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노령수당을 지급하는 등 生計支援制度를 마련하고 있다.

가) 施設保護

養老·老人療養施設의 입소는 시·군·구에 신청하여 건강상태 등을 심사받은 후 시설을 결정하여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의무탁한 저소득노인의 주거보장을 위한 방안으로 '95년부터 '老人의 집'을 운영하여 생활보호대상노인 4~5인이 1개 주택에서 공동으로 생활하도록 하고 있다. 기존 주택, 아파트 등의 전세·구입자금으로 개소당 2500~4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1995년도 40개소, 1996년도

16) 노인의 복지를 위한 상담 및 지도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노인 복지상담원을 두도록 하고 있는데, 이들의 직무는 ① 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 및 지도, ② 가정환경 및 생활실태에 관한 조사, ③ 복지조치에 필요한 상담 및 지도, ④ 노인의 단체활동 및 취업 상담, ⑤ 기타 노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하고 있다.

384개소의 ‘노인의 집’ 설치자금이 지원되었다.

〈表 II-7〉 老人福祉施設 및 收容·利用 現況(1997年)

구분	무료 양로	무료 노인 요양	치매 요양	실비 양로	실비 노인 요양	유료 양로	유료 노인 요양	경로당	노인 교실
시설수(개소)	87	47	3	3	12	12	1	28,068	418
수용·이용인원(명)	4,628	2,958	443	82	502	348	35	1,244,321	39,002

資料: 보건복지부, 『'97 주요업무자료』, 1997.

나) 所得保障

노인소득보장을 위해 1991년부터 지급하고 있는 老齡手當은 1997년 현재 65~79세인 생활보호대상노인(22만 8천명)에게 월 3만 5천원씩, 80세 이상 생활보호대상노인(3만 6천명)에게 월 5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노인 취업상담 및 알선을 위한 老人就業斡旋센터 70개소에 대하여 월 50만원씩 운영비를 지원하며, 경로당을 포함한 노인복지시설에 작업장을 설치한 노인공동작업장에는 필요한 기본설치비를 지원(개소당 300만원)하고 있다.

또한 노인의 생업 지원을 위하여 공공시설안에 매점,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위탁, 담배소매인 및 홍삼류판매인 지정신청을 할 때에는 65세 이상 노인의 신청을 우선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다) 保健醫療 支援

65세 이상 일부 노인에게 대한 健康診斷은 2년에 1회 이상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하도록 하며, 시·군·구청장은 이들을 대상으로 保健教育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무료노인건강진단은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 노인이 희망하

는 경우 42항목(1차 진단: 12개, 2차 진단: 30개)의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현재 3만명 정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라) 在家老人서비스

재가노인복지사업은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노인이 家庭에서 계속 생활하면서 식사, 목욕, 병원 안내 등의 생활편의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家庭奉仕員 파견, 晝間保護, 短期保護 사업 등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는 60세 이상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는 사업의 경우, 生活保護對象者와 일정 所得水準以下の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의 대상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곤란한 경우, 주간 및 단기보호사업의 대상은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이다. 주간보호사업은 1일, 단기보호사업은 15일이내를 단위로 제공된다.

마) 餘暇施設 支援

노인의 심신건강의 유지와 여가선용을 위하여 敬老堂(老人亭), 老人敎室, 老人休養所 운영자에게 지원을 하고 있으며, 경로당, 노인교실 등의 여가시설을 法定化하여 시·군·구에 登錄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경로당에는 1997년 현재 개소당 운영비 월 4만원과 연 20만원의 난방비가 지원되고 있다.

바) 敬老優待事業

敬老優待制度는 1980년 이후 민간의 부담으로 실시되었으나, 1994년부터 100% 지방비 부담으로 노인승차권을 지급하고 1996년부터 이를 交通手當으로 하여 現金으로 지급하고 있다. 지하철, 고궁, 능원, 박물관, 공원, 철도 등의 할인과 민영업종으로 항공기, 여객선 요금등

이 할인된다. 공원·경로당 등에서 점심을 거르는 노인들에게 무료로 점심을 제공하는 敬老食堂이 기존 복지시설과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하여 63개소에서 운영되고 있다.

3. 住民電算網의 生活保護關聯 業務 現況

현재 내무부에서 관리·운영하는 行政電算網은 住民登錄 관리, 不動産 관리, 自動車登錄 업무 등을 전국 On-line으로 연결하여 처리하는 전산망이다. 그 중에서 주민등록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住民電算網은 전국의 邑·面·洞事務所까지 연결하여 주민의 전·출입 관리를 전입신고 1회로 즉시 처리,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업무를 신속하게 수행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주민전산망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生活保護 관련업무들을 이를 이용하여 일부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그러나 현재 주민등록시스템의 생활보호 업무는 그 동안 생활보호 업무의 많은 변화가 있었음에도 그에 따른 메뉴 또는 項目의 追加나 變更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현재 일부만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가. 住民登錄電算 시스템의 生活保護業務 內容

주민등록시스템의 생활보호업무는 주민등록 관련업무 부분에 ‘34. 사회보전 업무’로 분류하여 그속에 생활보호, 의료보호, 보훈대상자 관리업무를 할 수 있는 총 13개 업무(메뉴)를 처리할 수 있는데, 각각 생활보호업무 7개, 경로우대업무 1개, 의료보호업무 3개, 보훈업무 2개로 구성되어 있다(圖 II-3 참고).

메뉴별 처리 내용은 <表 II-8> 과 같고, 각 메뉴의 전산처리 방법 및 구성요소는 <表 II-9> 와 같다.

[圖 II-3] 住民登錄電算시스템의 初期 메뉴

주민등록시스템		
자료관리	주민등록업무	관련 업무
11. 코드관리	21. 주민등록	31. 병사
12. 명부출력	22. 거주지 이동	32. 민방위
13. 읍·면·동 마감	23. 국외이주	33. 인력동원
	24. 과태료	34. 생보·의보·보훈
	25. 주민등록증 관리	35. 주민세
	26. 열람 및 증명발급	36. 취학아동
18. 직권정리	27. 관내현황 통계	37. 선거관리
19. 자료입력관리	28. 주전산기 연결 업무	38. 공문서 및 기타
11. 생활보호자관리	21. 생활보호대상자 현황	31. 의료보장 관리
12. 생활보호자연명부	22. 생활보호대상자 집계표	32. 의보대상자 연명부
13. 구호상황기록대장	23. 변동사항 및 구호결과보고	33. 의보추가책정보고서
14. 생활보호자증명서	24. 경로우대증 발급관리대장	34. 보훈대상자 관리
		35. 국가유공자 명부
		선택 [3411]
F1 취소 F2 도움 F3 삽입 F4 삭제 F5 복사 F6 선택 F7 확장 F8 이동 F9 출력 F10 실행 [주민등록] [영문]		

〈表 II-8〉 住民登錄電算시스템의 生活保護關聯業務

구분	메뉴	업무처리내용
생활보호 관 리	3411 생활보호대상자 관리	• 생활보호관리카드에 의거 책정된 생활보호대상자 입력 또는 변경사항 처리
	3412 생활보호대상자 연명부	• 세대주단위로 생활보호종별 생활보호대상자 출력
	3413 구호상황기록대장	• 거택보호대상자 구호상황기록대장 출력
	3414 생활보호대상자 증명서	• 생활보호대상자 증명서 출력 • 자녀학자금보조 등 제출자료로 활용
	3421 생활보호대상자 현황	• 분기별 또는 수시로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작성, 출력, 전송 • 생활보호대상자 조사후 집계보고서 작성시, 매년초 확정보고서 작성시 사용
	3422 생활보호대상자 집계표	• 매년초 생활보호대상자 신규책정 후 책정결과 작성, 출력, 전송
	3423 변동상황 및 구호결과보고	• 매월 생활보호대상자 유형별 증감상황 및 구호 결과 작성, 출력, 전송
경로우대증 발급 관리	3424 경로우대증 발급 관리대장	• 해당월에 만 65세가 되는 경로우대증 발급대상자 출력 • 경로우대증 발급대장으로 사용
의료보호 관 리	3431 의료보장대상자 관리	• 의료보장대상자의 의료보호사항(의료보장 구분, 진료증번호)등을 입력하고 보호내역 변경 해제가 발생시 변경내역 처리
	3432 의보대상자 연명부	• 의료보호대상자를 세대주 단위로 출력
	3433 의보추가책정 보고서	• 분기별로 의료보호대상자의 의료보호 구분별 추가 책정 사항 집계
보훈대상자 관 리	3434 보훈대상자 관리	• 관내 거주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항관리
	3435 국가유공자 명부	• 보훈대상자관리에서 정리한 국가유공자의 명부 출력

〈表 II-9〉 住民登錄電算시스템의 生活保護業務關聯 메뉴別
電算處理 方法 및 構成要素

메뉴 구분	전산 처리	처리 주기	사용빈도			구성요소 및 입출력 내용
			사용	가끔 사용	사용 안함	
3411 생활보호자관리	입력	수시	○			본적, 호주성명, 주소, 특수주소, 변동일자, 생활보호구분, 적용년도,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건강상태, 월소득, 예외구분
3412 생활보호자 연명부	출력	수시	○			세대주성명, 주민등록번호, 가족수, 진료증번호, 전입일, 주소
3413 구호상황 기록대장	작성 출력	월별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가족수, 구호양곡, 부식비, 연료비
3414 생활보호자 증명서	출력	수시	○			발급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세대주명, 세대주와의 관계, 보호구분, 생활보호등록번호, 용도, 제출처
3421 생활보호대상 현황	작성 출력 전송	분기			○	·성별(65세 이상, 18세 미만, 장애인, 폐질자) 분포 ·성별, 연령별 분포 ·보호종별 소득 분포 ·보호종별, 세대원수 분포 ·보호종별 교육정도 분포 ·연령별 자활보호자 현황
3422 생활보호대상자 집계표	작성 출력 전송	년 회			○	·보호종류별, 거주지별(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신규 생활보호대상자 수 ·보호종류별, 거주지별(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기존 생활보호대상자 수
3423 변동사항 및 구호결과보고	작성 출력 전송	월별			○	·보호종류별 생활보호대상자 증감상황 ·거택보호자 구호양곡 및 구호비 지급현황 ·자활보호자 긴급구호양곡 지급 보고
3424 경로우대증 발급 관리대장	출력	매월/수시		○		성명, 주민번호, 주소
3431 의료보장대상자 관리	입력	수시		○		주소, 변동일자,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의료보장구분, 진료증(보험증번호)
3432 의보대상자 연명부	출력	수시		○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보호구분, 주소, 전입일자, 진료증번호, 발급일자
3433 의보추가책정보고서	작성 출력 전송	분기			○	의료보호구분(거택, 시설, 국가유공자, 월납귀순자, 인간문화재, 의사상자, 이재자, 2중보호, 의료부조)별 거주지역(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분포
3434 보훈대상자관리	입력	수시			○	주소, 변동일자,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국가유공자구분, 보훈번호
3435 국가유공자명부	출력	수시			○	대상자구분, 보훈번호,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가족 수, 의료보호증번호

나. 住民登錄電算시스템 生活保護業務의 問題點

주민등록전산시스템을 이용한 생활보호업무에는 대상자의 身分 確認 및 管理를 위한 메뉴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각종 給與支給 업무를 위한 프로그램은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수록, 관리되고 있는 變數도 25개 이하로 매우 적은 편이다. 따라서 실무담당자들은 생활보호연명부나 증명서 발급 메뉴를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의보대상연명부, 보훈대상자관리, 경로우대증관리대장 등 對象者 確認을 위한 용도에 가끔 이용하고 있어 별반 도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生活保護業務에 활용되고 있는 주민등록시스템의 문제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월별, 분기별, 년별로 보고되는 생활보호대상자현황, 생활보호대상자 집계표, 변동사항 및 구호결과 보고 등은 입력된 자료로부터 演算處理되는 것이 아니라, 비치된 관련 관리카드의 내용을 集計 작성하거나 이전에 집계되었던 파일을 불러내(Load) 修正, 出力, 轉送하는 작업이므로 PC의 문서작성기능을 이용하는 데 비해 활용성이 떨어진다.

둘째, 이전에 집계되었던 파일은 새로운 파일이 작성되면 削除되므로 이전 집계내용의 파악이 불가능하며, 出力形態가 서식에 나타난 기본적인 표의 형태에 한정되므로 다양한 양식의 統計나 集計表의 활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셋째, 주민등록등재상의 基礎情報(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출입 여부 등)의 확인은 가능하나 생활보호대상자가 전출 또는 전입하였을 경우 이와 함께 전산자료의 電送이 이루어지지 못하며 수급자별 수급종류 및 수급액의 지속적인 관리는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넷째, 障碍人 登錄 자료 및 복지서비스 給與對象 자료 등이 포함되지 않아, 생활보호업무와 중첩되는 많은 업무들이 별도로 수행되고 있다.

다섯째, 대상자 관리에 요구되는 既存 行政電算網의 부동산, 자동차 관리, 국민연금 전산망 등의 정보를 공동활용할 수 없다.

여섯째, 급여지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전산 온라인 入金 시스템 등 반복되는 給與關聯 業務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일곱째, 보완·개선되고 있는 생활보호제도 등의 變化內容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주민전산망의 생활보호업무는 入力 情報量이 적고, 3~4개의 업무를 제외하고는 使用頻度가 적어 생활보호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효율적인 생활보호업무와 증대되는 복지서비스의 수급 관리를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變數의 入力이 요구되고 있고 수급대상자의 관리, 다양한 형태의 出力을 위하여 새로운 시스템의 設計가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에서 이루어지는 공공복지업무, 즉, 생활보호 및 공공복지서비스 업무간에 共同으로 정보를 활용하여 업무 및 자료관리의 重複을 지양하는 데 우선 순위를 두며, 단계적으로 지역간, 부처간, 관련기관간 情報電送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전산시스템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를 통하여 생활보호대상자 관리 및 지원이 合理的으로 이루어지고 생활보호·공공복지서비스 업무 수행의 能率性이 향상되어, 향후 公共扶助의 專門化 및 行政 效率化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Ⅲ. 生活保護 및 公共福祉서비스 業務 分析

1. 主要業務 節次 및 흐름도

시·군·구청과 읍·면·동사무소에서 수행되는 생활보호 및 공공복지 서비스업무는 대상자에 대한 급여를 통해 最低所得의 保障 및 保健·醫療的 支援을 하고 있으나 상담을 비롯한 情緒的 保護는 여러 여건상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현행 공공부조업무는 現金支給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공공부조업무는 제도 적용대상, 즉, 해당자의 선정 및 사후관리를 위한 ‘對象者 管理’ 업무와 이들에 대한 ‘給與 支給’ 업무, 수행된 각 업무와 실적을 상부기관(읍·면·동 → 시·군·구 → 시·도 → 보건복지부)에 집계해 ‘報告’하는 업무 등으로 대별할 수 있다.

가. 生活保護業務

생활보호는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시장·군수가 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실제로 生活保護 對象者를 직접 대면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일은 읍·면·동사무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중심으로 생활보호를 위해 수행되는 세부 업무들을 정리해 보면 <表 III-1>과 같다.¹⁷⁾

생활보호업무 역시 우선 주민의 신청 및 조사에 의해 대상자를 決定하고, 대상자의 상태 및 욕구에 따라 규정된 보호를 給與하며, 그

17) 이 밖에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업무로서 시·군·구청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들을 포함하여 살펴 보면, 일군위안부 생활안정 지원금 지급 및 시설입소 의뢰, 보훈대상자 관리, 재해구호, 직업훈련 지원, 이웃돕기 결연 등이 있다.

과정에서 행정절차상의 관리를 위한 記錄과 상부 기관에 報告하는 과정을 수행한다.

〈表 III-1〉 邑·面·洞事務所의 生活保護業務 分野別 細部業務

업무분야	업무특성	세부업무
생활보호	대상자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보호대상자 조사·선정 • 생활보호 변경 • 생활보호대상자 증명 발급 • 거택보호대상자 장제보호 관리 • 생활보호대상자 취로사업 • 의료보호대상자 선정 및 관리
	급여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택보호대상자 생계비 지급 • 거택보호대상자 장제보호비 지급 • 거택보호대상자 해산보호비 지급 • 거택보호대상자 월동대책비, 특별위로비 지급 • 생활보호대상자 학비 지원 • 생활보호대상자 생업자금융자 • 영구임대주택 입주 지원 • 의료비체납고지서 송달, 체납징수 독려
	업무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택보호대상자 생계비 지급 • 거택보호대상자 장제보호비 지급 • 생활보호대상자 학비 지원 • 생활보호대상자 생업자금융자

1) 對象者 選定 및 管理

시장·군수는 매년 1회 이상 관할구역안의 보호대상자를 調査하고¹⁸⁾, 그 결과를 도지사(서울특별시장 및 직할시장은 보건복지부장관)

18) 보호대상자의 정기조사는 매년 9월에 실시하며, 가족상황, 생활실태,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부양능력 유무, 소득 및 자산보유상황, 기타 보호의 실시예 필요한 사항 등을 조사한다. 이와 함께 수시선정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자치단체장은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보호대상자 조사를 연중 분할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호기관은 보호대상자와 피보호자의 실태에 관한 臺帳을 작성·비치하도록 하고 있다.

시장·군수는 보호신청이 있는 때에는 자산조사를 실시하여 지체없이 보호여부를 결정하고, 그 요지, 보호 종류·방법 및 개시시기 등을 서면으로 보호대상자에게 14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¹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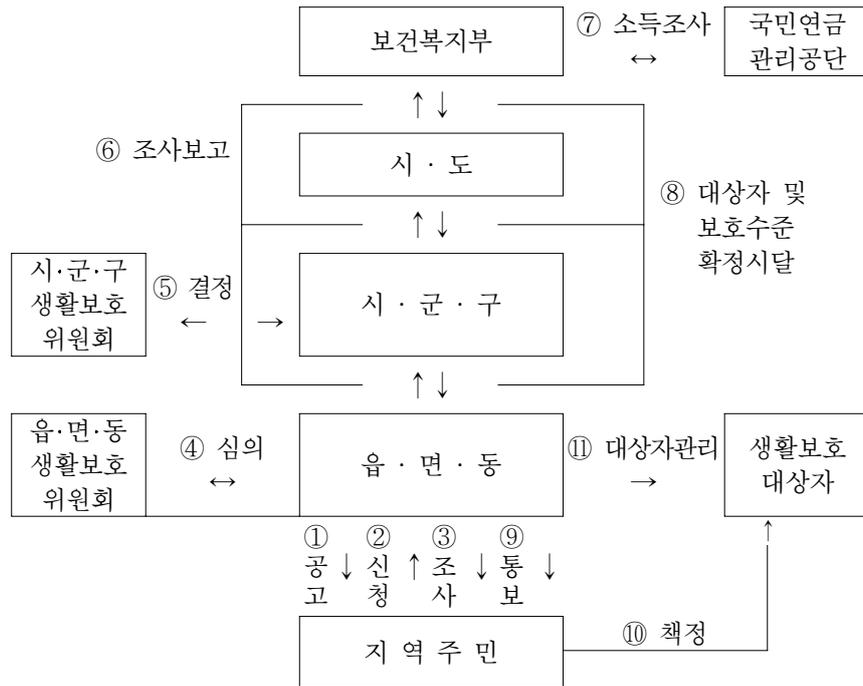
保護費用은 보호시설 위탁비용의 경우 국가 또는 당해 도가 부담하고, 보호업무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사무비, 생활보호위원회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등은 서울특별시·직할시·시·군이 부담한다. 각종 급여에 소요되는 보호실시비용과 보호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와 시·군·구가 분담한다.²⁰⁾

생활보호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결과와 보호가 결정된 후의 보호금품의 지급내역 등을 보호대상자 거주지의 읍·면·동장이 生活保護對象者管理카드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하며, 매분기마다 이를 기초로 生活保護對象者現況을 작성하여 각 분기 종료후 1주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시장·군수는 보고를 기초로 하여 매분기별로 생활보호대상자현황을 작성, 관리한다.

한편 조사시에는 우선적으로 복지위원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속직원 가운데 대학의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거나 국립사회복지연수원 및 기타 사회복지관계 연수기관에서 사회조사교육을 받은 직원이 있을 때는 우선적으로 조사에 참여시키도록 하고 있다.

- 19)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등의 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다.
- 20)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총액의 5/10 이하를 국가가, 5/10 이상을 서울특별시가 부담하고, 직할시의 경우는 총액의 8/10 이상을 국가가, 2/10 이하를 당해 직할시가 부담하며, 시와 군의 경우는 총액의 8/10 이상을 국가가, 1/10 이상을 도가, 1/10 이하를 시와 군이 부담한다.

[圖 III-1] 生活保護對象者 選定業務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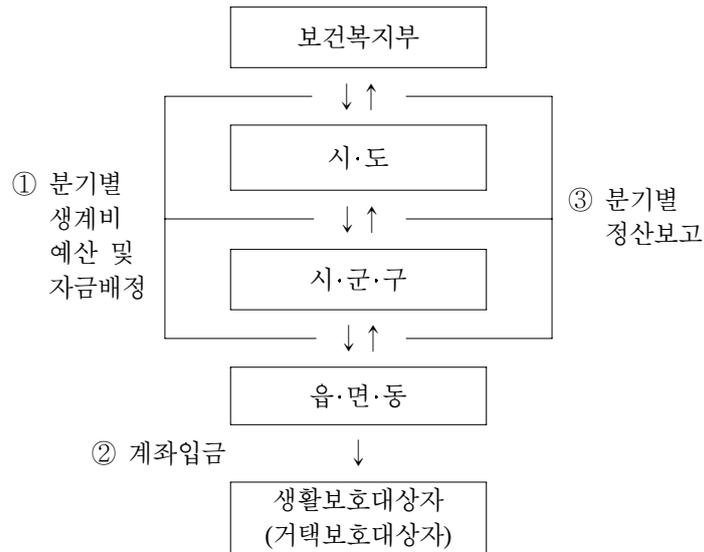


2) 生計保護

생계비는 每月 定期的으로 지급되며, 보호대상자 計座에 온라인으로 입금된다. 1996년 差等保護의 실시로 자가소득 5등급과 가구원 수를 6명까지 반영하여 지급되고 있으며 생계비로 주·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생활용품비 등이 포함된다. 지원 현황은 상부기관에 매분기별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장제보호비 및 해산보호비는 읍·면·동에 신청하면 시·군·구에서 개별적으로 통장에 計座入金하도록 하고 있다.

[圖 III-2] 生活保護對象者 生計費 支給業務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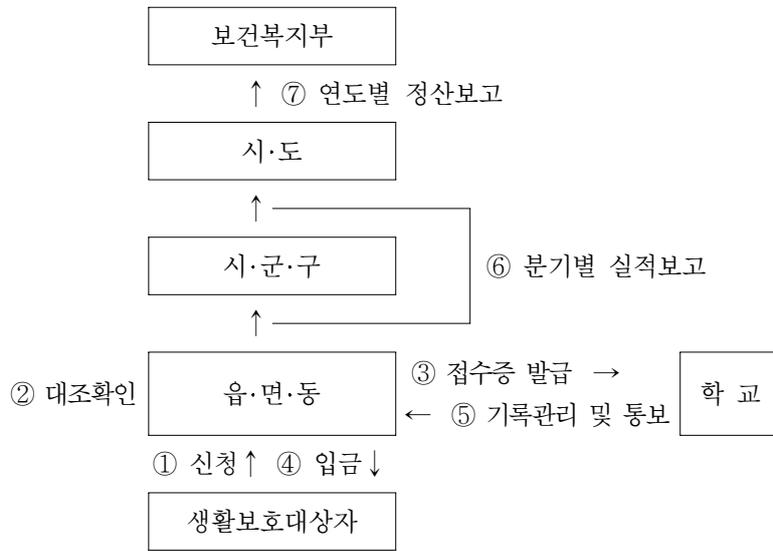
3) 學資金 支援

교육보호를 위한 授業料는 분기별로 지급되는데, 읍·면·동에서는 관내의 수업료지원대상자를 매년 2월 재학하는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고, 지원대상자가 施設保護對象者인 경우에는 보호기관이 이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학자금 지원업무의 節次는 [圖 III-3] 과 같다. 학비지원대상자의 학부모(또는 시설장)는 수업료 납입고지서를 받은 즉시 읍·면·동에 학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고, 읍·면·동장은 생활보호대상자 선정명부와 대조하여 학비지원대상자명부를 작성한다. 2/4분기부터는 학교에 재학 조회서로 확인한 후 대상자 개별 계좌에 입금하는 절차를 거친다. 시·군·구청장은 읍·면·동장에게 매분기 수업료를 교부하고 지급실적을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또한 시·

군·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다음해 3월까지 정산 보고하도록 한다.

[圖 III-3] 生活保護對象者 學資金 支援業務 흐름도



4) 生業資金 融資

생업자금 융자업무와 관련하여 읍·면·동장 및 자활지원센터장은 관내에 거주하는 생업자금 대여자와 사업계획추진상황을 지도·감독하고, 生業資金貸與管理카드에 대여금의 상환내역등을 기록·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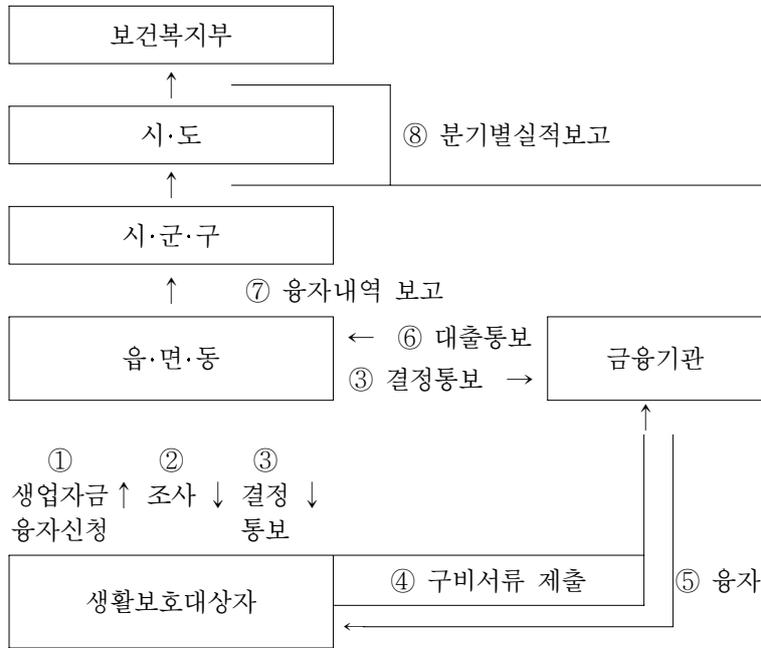
생업자금 융자를 원하는 경우²¹⁾의 節次는 다음 [圖 III-4]와 같다.

희망자는 생업자금융자신청서를 읍·면·동(또는 자활지원센터장)에 제출하면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조사서를 작성·심사하여 결정하

21) 대상은 거택·자활보호대상자 중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가 왕성한 자, 4인가족 기준 소득 100만원 미만, 재산 4,500만원 미만인 자 등이 해당된다.

고, 용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해당 금융기관(6대 도시: 국민은행, 그외 지역: 농협)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신청인은 구비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금융기관은 용자금을 지급하며 읍·면·동에 용자내역을 통보한다. 읍·면·동 및 자활지원센터장, 시·군·구에서는 분기별로 실적을 보고한다.

[圖 III-4] 生活保護對象者 生業資金 融資業務 흐름도



나. 公共福祉서비스 業務

읍·면·동 → 시·군·구의 행정체계를 통해 수행되는 공공복지서비스 업무는 주로 障碍人, 低所得 偏父母家庭, 少年少女家長家口, 老人 등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들이다. 읍·면·동사무소에 배치된 社會福祉專

門要員이나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公務員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 이들 업무를 그 성격에 따라 구분해 보면, 크게 對象者의 選定 및 管理, 給與 支給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에 따른 행정처리로 상부기관으로의 報告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각 업무대상별로 업무성격에 따라 주요 세부업무를 정리한 결과는 다음 <表 III-2>와 같다.

障 碍 人 福 祉 業 務를 살펴 보면, 장애인(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이 장애상태 등을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시·도에 등록하도록 하고, 이에 대하여 장애인수첩을 교부하도록 하며, 장애인에 대한 검진 및 재활상담을 실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료기관 의뢰, 복지시설²²⁾ 입소 및 통원,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기관 소개, 장애인복지지도 원을 통한 상담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 밖에 각종 장애인의 생활편의를 위한 지원업무²³⁾들을 실시하고 있다.

低所得 偏父母家庭 즉, 자립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모자 및 부자 가정은 보호대상이 된다.²⁴⁾ 당사자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등은 福祉 給與를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는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복지급여의 신청이 있는 경우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직업훈련비 및 훈련기간중 생계비, 아동양육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 등의 급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²⁵⁾ 低所得層의 兒童을 위해서는 생활보호대상 가구 및 저소득층 편부모가정에 보육료를 면제 및 감면하고 있으며, 少年少女家長家口에 대해서는 생활보호급여 이외에 각종 지원과 특히 결연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22) 장애인 복지시설로는 장애인의 상담·치료·훈련을 행하는 장애인재활시설, 장애인 요양시설, 유료복지시설, 이용시설, 직업재활시설 등이 있다.

23) 수입 면세물품 확인서 발급, 장애인 승용자동차 특별소비세 면세용도 물품증명서 발급,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및 표지이전신고 처리, 장애인용 승용자동차 엘피지 사용 증명서 발급 등을 실시한다.

24) 복지급여대상자의 보호기간은 1년 단위로 하고 있다.

25) 이 법에 의한 보호대상자가 생활보호법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호를 받고 있으면 그 범위안에서 이 법에 의한 급여를 하지 않는다.

〈表 III-2〉 邑·面·洞事務所의 公共福祉서비스 分野別 細部業務

업무분야	업무특성	세부업무
저소득 편부모가정	대상자 관 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자·부자가정 조사 및 선정 • 모자·부자가정 보호 중지 • 모자가정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조사 • 모자보호시설 입소 의뢰
	급 여 지 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자가정 자녀교육비 지급 • 모자가정 아동양육비 지급 • 모자가정 생업자금융자 • 모자가정 난방비 지급
소년소녀가장 및 저소득가정 아동	대상자 관 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년소녀가장세대 조사 및 선정 •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중지 • 소년소녀가장세대 시설입소 의뢰 • 소년소녀가장 결연
	급 여 지 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학용품비, 피복비, 영양급식비, 교통비) 지원 • 생활보호대상 및 저소득가정 어린이집 입소 지원
장애인	대상자 관 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등록 및 관리 • 장애인 보장구 교부 및 수리 • 장애인 감면제도 해당 증명서 발급 • 장애인 시설 입소 의뢰
	급 여 지 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급 • 장애인자녀 교육비 지급 •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장애인 의료비 지급
노인	대상자 관 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 무료진료 및 건강진단 사무 지원 • 경로우대증 관리 발급
	급 여 지 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령수당 지급 • 경로승차요금(교통수당) 지급

老人을 위한 주요 업무는 생활보호대상 노인에게 노령수당을 지급하고, 경로승차요금(교통수당)의 지급, 시설입소 의뢰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업무를 크게 나누면 ‘對象者의 選定 및 管理’와 관련된 부분과 ‘給與 支給’에 관한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²⁶⁾이에 따르면 각 인구 대상별로 절차가 유사한 부분이 많으므로, 관련 업무를 함께 정리하여 重複 및 統合可能性을 검토해 보도록 한다.

1) 對象者 選定 및 管理

가) 障礙人의 登錄 및 障礙診斷

장애인 登錄 節次를 살펴 보면, 해당 장애인이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을 하고²⁷⁾, 시·군·구청장은 7일 이내에 의료기관에 檢診을 의뢰하도록 하고 있다. 의료기관²⁸⁾은 검진 결과를 시·군·구에 통보한다. 시·군·구는 장애등급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자에게 障礙人手帖을 교부한다. 실제로 장애인 등록관련 시·군·구청의 업무는 읍·면·동사무소를 경유하여 처리된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읍·면·동에서는 장애인 등록카드 접수 및 관리, 수첩 교부, 등록 사후관리 등을 담당하고 시·군·구에서는 장애인 등록 전산화 자료 국립재활원에 송부, 등록사업 실무 총괄, 장애인 등록제 홍보 등을 담당한다. 시·군·구청장은 장애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장애인등록 현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한편 등록된 장애인 자료의 聚合·電算化를 위하여 시·군·구는 읍·면·동에서 취합된 등록 장애인의 등록 신청서 및 장애검진서 사본을 매분기 國立再活院으로 송부하고 있다.

26) 각종 ‘報告’업무는 대상자 관리 및 급여업무 과정에서 병행되며, 별도로 2절의 關聯書式 分析에서 다루기로 한다.

27) 등록편의를 위해 전화로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읍·면·동 직원이 장애인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처리하도록 한다.

28) 시·도지사(시·군·구에 위임)는 일정 의료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을 장애진단기관으로 지정하여 장애인의 등록편의를 도모하도록 한다.

〈表 III-3〉 公共福祉서비스의 對象者選定 細部業務 및 節次

세부업무	업무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자·부자가정 정기(수시)조사 및 선정 • 소년소녀가장가구 정기조사 및 선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조사계획 시달: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② 조사계획 수립 ③ 대상자 조사(방문조사 원칙, 신고에 의한 조사 병행 지역 정보망·본인 및 관계인의 요청에 의하여 보호가구 발생한 경우에 수시조사 및 책정) ④ 책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결정 • 연명부 작성 ⑤ 보호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금 지급 • 후원자 결연 ⑥ 사후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카드 작성 • 정기방문 상담 지도 • 결연·후원금 관리 점검 • 취업알선등 자립지원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자·부자가정 보호중지 • 소년소녀가장가구 보호중지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사유 발생: 가족구성, 성장, 소득, 재산변동 등 ② 조사 실시: 실태조사 실시 정리 ③ 심의·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결과 및 서류 심의로 보호중지 여부 결정 • 연명부 정리 ④ 결과통보 및 사후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카드 정리 • 보호중지 결과 통보 • 자립, 자활상담(일정기간 정기적 상담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등록 및 관리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장애인등록 신청: 대상자 → 시·군·구(읍·면·동) ② 검진의뢰서 발급: 시·군·구(읍·면·동) →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진의뢰서 작성 직인날인 • 장애인등록카드 기록·관리 ③ 장애검진: 대상자 → 지정검진의료기관 ④ 진단결과 통보: 지정검진의료기관 → 읍·면·동 ⑤ 장애인 등록, 수첩 교부 ⑥ 사후관리(거주지 이전시 관련서류 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출입 관리 • 복지혜택에 관한 홍보 • 복지수혜상황 기록 정리

나) 低所得 偏父母家庭 保護

시·군·구청장²⁹⁾은 매년 1회 이상 관할구역안의 모자가정에 대해 가족상황, 생활상태, 부양능력 유무 등의 現況을 調査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보호대상자와 피보호자 실태에 관한 母子家庭管理카드를 기록·관리하고 있다. 보호대상 모자가정현황을 매년 시·도에 보고하고, 시·도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보호대상의 가구주가 모자가정임을 확인할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시·군·구에서는 母子家庭證明書を 발급한다.

2) 給與 支給

가) 障礙人 生計補助手當 支給

生活保護對象 重症·重複障礙人이 생계보조수당의 지급을 희망하는 경우, 본인·보호자·대리인 등은 읍·면·동을 거쳐 시·군·구에 申請書를 제출하고, 이에 장애인등록카드로 판단하거나 현지조사를 거쳐 預金計座로 現金을 지급한다. 생계보조수당은 지급결정 다음 달부터 매 분기별로 일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시·군·구에서는 생계보조수당 支給者臺帳을 기록·유지하도록 하며, 시·도지사는 지급대상자 現況 및 所要豫算을 분기별로 보고하고, 支給實績을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나) 障礙人子女 教育費 支援

장애인이 자녀교육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읍·면·동에 교육비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며, 읍·면·동장은 教育費支援對象者 名簿를 기록한

29) 시·군·구의 업무로 명시된 부분 중 실제 대상자를 접촉하는 대부분의 업무는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수행되고 있다.

후 계좌에 입금하고 接受證을 발급하여 이를 대상자가 학교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자녀교육비는 전기말까지 現金으로 지급되며, 2/4분기부터는 納入領收證을 읍·면·동에 제시한다. 읍·면·동장은 학적변동사항을 수시로 파악하고, 지원대상자 명단과 지원실적을 시·군·구에 보고해야 한다.

다) 低所得 偏父母家庭 子女學費 支援

복지급여 신청서를 읍·면·동에 제출하여 당해연도 보호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자녀부양자³⁰⁾는 學費支援申請書를 수업료 납입고지서와 함께 읍·면·동에 제출한다. 이에 따라 읍·면·동에서는 모자가정관리카드와 대조·확인 후 수업료 납입기한 전에 計座入金한다. 시·도, 시·군·구로부터의 예산 배정은 분기개시 1개월전에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며, 시·군·구는 매분기 支給實績과 綜合定算 結果를 시·도에, 시·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라) 低所得 偏父母家庭 兒童養育費 支援

자녀학비 지원대상과 마찬가지로 복지급여 신청서를 읍·면·동에 제출하여 당해연도 보호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養育費支援申請書를 계좌번호와 읍·면·동에 제출한다. 읍·면·동은 모자가정보호대상과 대조·확인 후 接受證을 발급하며, 매분기전에 計座入金한다. 읍·면·동에서는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 명부를 기재하고, 시·군·구는 시·도에 매분기 양육비 지급실적과 종합정산 보고를 하며, 시·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실적 및 정산보고를 행한다.

30) 저소득 모자가정이면서 생활보호대상 요건에 해당되면 생활보호법상 교육보호에 우선 적용받도록 한다.

마) 少年·少女家長家口 支援

소년·소녀가장가구는 生活保護對象으로 지정되는데 20세까지 그 가족을 居宅保護對象者로 계속 보호하고 있다. 이들에게는 생활보호 관련 관리 및 급여 이외에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지도원이 연계하여 정기적 家庭訪問 및 相談을 하여 기록을 유지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結緣後援金の 사용내용 및 용도를 점검하고 친지나 자원봉사자와 함께 지도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시·도에서는 보건복지부에 매반기별로 소년·소녀가장가구현황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바) 老齡手當 支給

노령수당은 每月 現金으로 지급되며, 시·군·구청장은 지급대상자에 대한 管理臺帳을 작성·비치하고, 매년 現況報告書를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지급절차는 生活保護 現金支給 方法과 동일하며, 노령수당 지급신청서의 제출은 생략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경우는 신청서를 읍·면·동에 제출해야 한다.

사) 敬老乘車料金(交通手當) 支給

경로승차요금의 지급을 희망하는 老人은 읍·면·동사무소에 支給申請書를 제출하는데(생활보호대상자의 경우 신청 생략), 경로당, 노인복지회관 등에 신청서를 비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분기별로 直接 交付하거나 온라인 送金 등 지역에 따라 상이하게 할 수 있다.

읍·면·동사무소에는 경로승차요금 支給申請書臺帳을 비치하도록 하고 있다.

아) 障礙人 補裝具 交付·修理

補裝具의 交付·修理는 지체 및 시각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 및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저소득장애인에 대하여 실시되며, 보장구의 교부·수리를 신청하고자 하면 우선 신청서를 읍·면·동에 제출하고 시·군·구에서는 의료기관에 해당 장애인의 검진을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보장구 교부·수리 여부를 결정한다. 醫療機關은 검진소견서를 시·군·구에 제출한다. 보장구 교부·수리 희망자는 보장구 제조·수리 업체에게 보장구교부(수리)의뢰서를 제출하고, 보장구를 제조·수리한 업체는 시·군·구에 비용청구서를 제출하거나(의수족 및 보조기의 경우), 시·군·구청장이 직접 계약 구매하여 교부대상자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자) 障礙人 醫療費 支援

장애인·보호자가 再活醫療對象者로 인정받도록 신청할 경우 신청서를 시·군·구에 제출하고, 시·군·구에서는 의료기관에 당해 장애인의 檢診을 의뢰하면, 의료기관에서는 검진소견서를 제출한다. 의료비 지원대상 장애인이 外來, 入院診療, 補裝具 保護를 받으려면 障礙人手帖과 醫療保護證을 지정 의료기관에 제시하도록 한다. 의료기관은 장애인에게 의료를 제공한 때에는 다음 달까지 시·군·구청에 의료비를 청구하여야 한다.

읍·면·동장은 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 명단을 시·군·구에 보고하고, 시·군·구는 지원대상자 현황을 보고한다. 시·도지사는 이를 반영하여 국고보조금을 신청한다.

〈表 III-4〉 公共福祉서비스의 給與支給 細部業務 및 節次

세부업무	업무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급 • 모자가정 아동양육비 지급 • 소년·소녀가장가구 보호비 지급 • 노령수당 지급 • 경로승차요금 지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지급대상자 명단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파악 • 지급대상자 변동확인, 변동확인서 작성 • 관련대장 정리후 날인 • 지급대상자 확정 ② 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조서 작성 • 기안·지출결의서 작성 • 은행 입금의뢰서 작성 ③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금융기관에 입금의뢰 • 추산부에 입금일자 기재 • 은행으로부터 입금확인서 징수 ④ 결과정리 및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조서에 지급 확인 날인 • 기안, 지출결의서, 개별지급조서, 입금확인서 철함 • 시·군·구로 실적 정산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자가정 자녀교육비 지급 •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학비지급 대상자 파악 및 교부금 신청(매분기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파악 신청서 접수 • 수시변동사항 확인 정리 • 지급대상자 명부 작성 • 2/4분기~ 4/4분기 학적변동 확인의뢰·날인 (재학증명조회서를 해당 학교로 발송 조회) • 지급대상자 명부, 각 지역 신청서철 수합 • 매분기별 지급대상자 총괄파악 및 학비 교부금 신청(→ 시·군·구)

〈表 III-4〉 계속

세부업무	업무절차
<p>• 장애인 보장구 교부 및 수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보조금 신청 및 배정: 년2회 신청(1월, 10월) ② 신청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장구교부(수리)신청서에 의거 신청 • 소득수준·등록장애인여부 검토후 접수여부 결정 • 장애인보장구 교부(수리) 신청 • 접수대장 기록 ③ 검진의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활의료 취급기관에 검진의뢰서 작성 의뢰 • 검진 생략할 수 있는 경우: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3조의 단서규정에 해당, 수리신청의 경우 ④ 검진결과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진기관이 정한 서식에 의거 검진소견서를 제출 ⑤ 교부대상 결정: 소견서에 의거 교부여부·내용 결정 ⑥ 보장구 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리 및 교부 의뢰: 신청인에게 보장구 교부(수리) 의뢰서를 교부하고 지정업소를 안내하여 교부(수리)를 받도록 함 ⑦ 보장구 비용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한 서식에 의거 보장구 교부(수리)업소가 비용 청구하면 읍·면·동에서 지급(재활의료기관 확인서 첨부, 단 검진생략대상의 경우 생략) ⑧ 정산통보: 읍·면·동 → 시·군·구 ⑨ 집행실적 보고: 읍·면·동 → 시·군·구 → 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한 서식에 의거 익년도 1월10일까지 보고
<p>• 장애인 의료비 지급</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예산배정: 시·도 → 시·군·구 ② 장애인 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 시 지정병원 • 장애인수첩, 의료보호증 제시후 외래, 입원진료 ③ 진료비내역 통보: 해당 의료기관 → 시·군·구, 의료보험연합회 ④ 진료비심사 결정통보: 의료보험연합회 → 시·군·구 ⑤ 진료비 지급: 해당의료기관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료비(본인부담분)는 읍·면·동에서 지급하고 의료보호비는 시·군·구 의료보호담당부서에서 지급 ⑥ 정산통보: → 시·군·구

3) 資金 融資

가) 障礙人의 自立資金 貸與

자립자금의 대여를 받으려면 貸與申請書³¹⁾를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군·구에 제출하고, 시·군·구청장은 調査書에 의거하여 인적 사항, 재산상태, 계획 타당성 등을 심사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를 읍·면·동을 거쳐 該當金融機關과 貸與申請者에게 통지하고, 신청인은 해당 금융기관에 구비서류를 제출한다.

읍·面·洞에서는 대여대상자를 추천하고, 결정사실을 대상자에게 통보하며, 전출시 이를 전입지 읍·면·동사무소 및 시·군·구에 통보한다. 市·郡·區는 대상자를 결정하고 대여가구별 자립자금대여 관리카드를 비치하며 분기별 원리금 상환여부 등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나) 低所得 母子家庭 福祉資金 融資

복지자금의 대여를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申請書와 事業計劃書³²⁾를 읍·면·동의 추천을 받아 시·군·구에 제출한다.³³⁾ 이에 대해 시·군·구는 조사서에 의거하여 심사, 대여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대여내용을 취급 금융기관(국민은행, 농협)에 통지한다. 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금융기관에 구비서류³⁴⁾를 제출한다. 利子와 元利金 償還

31) 자립자금 가운데 생업자금은 사업계획서, 통근용 자동차 구입비는 차량매매계약서,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는 기술훈련시설장이 발급하는 훈련증명서,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고가의 재활기기 구입비는 용도를 명시한 매매계약서, 고가의 사무보조기기 구입비는 사용처·용도 등을 명시한 매매계약서를 첨부한다.

32) 사업계획서는 읍·면·동 공무원과 당사자가 공동으로 작성한다.

33) 복지자금대여를 신청할 경우 사업자금의 경우 사업의 종류, 사업장 소재지 및 사업내용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아동교육비는 재학증명서, 의료비는 의사 진단서, 주택자금은 매매·전세,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해야 한다.

34) 구비서류는 저소득 모자가정 또는 부자가정 복지자금 대여대상자 결정통지서, 사업계획서, 연대보증인 재산세 납입증명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원급여명

時期(매월, 연 2회 또는 4회)는 신청자가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表 III-5〉 公共福祉서비스의 資金融資 細部業務 및 節次

세부업무	업무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자가정 복지자금 융자 •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지침시달: 시·도 → 시·군·구 ② 신청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서 접수 • 구비서류: 사업계획서(읍·면·동 담당공무원과 신청인이 공동으로 작성) ③ 실태조사 실시: 조사서 서식에 의거 ④ 융자(대여)대상자 결정: 융자대상자연명부 작성 ⑤ 융자(대여)대상자 결정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금융기관에 결정통지서 통보(사업계획서 사본1부 첨부) ⑥ 구비서류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가 구비서류를 해당금융기관에 제출 ⑦ 융자(대여)내역 통보: 해당금융기관 → 시·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융자대상자, 융자금액 및 이율, 대출일자,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상환방법 등을 매건마다 통보 ⑧ 융자(대여)실적 보고(통보): 매년 사업종료 후 보고 ⑨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업자금대여 사후관리카드 비치 및 관리 • 전출입관리: 관리카드송부

시·군·구청장은 복지자금 대여자의 대여내용과 상환내역 등을 福祉 資金貸與管理카드에 기록·관리하고, 분기 1회 이상 원리금 상환여부 등을 파악·지도하며, 대여자의 거주 이전시에 이주지 관할 시·군·구에 關聯書類 送付, 金融機關 通知 등을 실시한다. 시·도는 자금대여실적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다.

금융기관은 자금 대여가 있을 때마다 시·군·구에 그 내역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세서), 신청인 및 보증인 인감증명서 등이다.

4) 施設入所 依頼

현행 福祉施設 입소 기준에 해당하며 시설의 입소를 원하는 생활보호대상자나 이외의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이 있을 경우 다음의 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해당자의 施設入所 申請書를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시·군·구에서 접수받아, 常談·檢診 및 實態調査 등 필요절차를 거쳐 보호필요 여부를 판단한다. 이와 함께 대상자 거주 시·군·구청에서는 시설 관할 시·군·구에 시설 입소 가능성을 협의한 후 입소여부가 결정된다. 시설 관할 시·군·구에서는 대상자 거주 시·군·구로 입소 決定 사실을 통보하고, 대상자 거주 시·군·구에서는 대상자에게 알리고 施設入所 對象者名簿를 작성,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表 III-6〉 公共福祉서비스의 施設入所 依頼 細部業務 및 節次

세부업무	업무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자보호시설 입소의뢰 • 소년소녀가장가구 시설 입소의뢰 • 장애인복지시설 입소의뢰 • 노인복지시설 입소의뢰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입소상담: 대상자 발생시 상담, 입소신청 접수 ② 실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생활실태 조사(생활실태조사서 작성) • 구비서류 안내 • 긴급보호 필요시 우선보호 조치 필요 ③ 시설입소 의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안내, 대리 신청(시설입소의뢰서 작성) • 대상자에 대한 정보 제공 • 시설관할 시·군·구에 입소의뢰 협의(서울은 서울시 거주기간 1년 이상 여부) ④ 시설입소 결정: 시설관할 시·군·구 결정 ⑤ 입소결정 통보: 시설관할 시·군·구 → 대상자 해당 시·군·구(읍·면·동) → 대상자 ⑥ 입소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시 차량 제공 • 기타 정보제공 및 상담 • 해당시설 입소 • 시설입소대상자명부 작성

2. 關聯書式 分析

앞에서 분석한 전산화 대상 공공부조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각종 정보가 入力되고 產出된다. 즉, 각 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필요로 하는 書式이 있고 이를 작성하는 일이 실제 행정업무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을 簡素化하고 合理化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도되는 전산화 과정에서 이들 서식을 分析하여 改善하고, 電算 情報化가 가능한 내용을 검토하는 부분이 필수적이다.

이는 업무특성에 따라 다음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복지분야별 대상자로 선정되거나, 급여를 지급받기 위한 ‘申請’ 및 ‘依賴’를 위한 서식

둘째, 이에 대해 집행기관이 발급하는 ‘選定’ 및 ‘證明’ 서식

셋째, 급여수급자의 신청 및 사후관리, 현황점검을 위한 ‘管理’ 서식

넷째, 읍·면·동 → 시·군·구 → 시·도 → 보건복지부의 행정체계를 통해 집행현황 및 실적을 ‘報告’하는 서식 등이다.

이에 따라 우선 각 업무영역별로 생산되고 있는 書式을 정리하고,³⁵⁾ 이의 작성 또는 處理機關, 作成 週期를 검토하며, 다음으로 그 중 주요 서식들에 대하여 주요 收錄項目들을 점검해 본다.

35) 본 장에서 다루고 있는 업무 및 서식 분석에서는 앞서도 밝힌 바와 같이, 공공부조 및 복지서비스 관련 행정업무 가운데 邑·面·洞事務所를 통해 수행되는 업무를 중심으로 하였다. 따라서 대상 주민을 직접 대면하지 않으며, 전적으로 市·郡·區廳에서 처리되는 업무 즉, 사회복지 수용·이용시설의 설치·등록·허가 및 지도·감독, 장애인 재활의원의료기관 설치 및 지도·감독, 등의 업무는 제외하였다.

가. 生活保護 및 公共福祉서비스 關聯 資料生産 現況³⁶⁾

〈表 III-7〉 生活保護 細部業務別 關聯 書式の 作成機關 및 週期

업무구분	서식명	작성 및 주요처리기관				작성 주기	
		읍 면 동	구 시 군	시 도	기 타		
생활 보호	신청 의뢰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보호(변경)신청 생활보호대상자조사표 학비지원신청서 생업자금융자신청서 장제보호비용신청서 	○ ○ ○ ○ ○	○			수시 수시 분기 수시 수시
	선정 증명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보호대상자(시설 수용자) 증명서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대상자 재확인서 생업자금융자대상 선정을 위한 조사서 및 결정통지서 취로증 	○ ○ ○ ○				수시 분기 수시 수시
	관리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보호대상자 관리카드 생업자금융자 사후관리카드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대상자 명부 	○ ○ ○				수시 수시 분기
	보고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보대상자 소득·재산현황 보고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지원 정산보고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지원 실적보고 생업자금 융자실적보고 거택보호대상자 생계보호비지원 실적보고 	○ ○ ○ ○ ○	○ ○ ○ ○	○ ○ ○ ○		수시 분기 분기 분기 반기

36) 본 연구과정에서 일부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의 업무수행 실태를 파악한 결과, 분석된 업무와 관련된 서식의 작성 및 처리기관, 작성 주기 등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지역별 현황을 참고하여, 사업별 업무지침을 기초로 작성하였다.

〈表 III-8〉 계속

업무구분	서식명	작성 및 주요 처리기관				작성 주기	
		읍 면 동	시 군 구	시 도	기 타		
장애인	관리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등록카드 • 생계보조수당 지급자대장 • 생계보조수당 지급내역 • 보장구교부(수리)신청·접수대장 • 저소득장애인 자녀 교육비지원대상자 명부 • 자립자금대여 관리카드 • 장애인의료비 지원대상자 명단 • LPG 승용자동차 증명서발급대장 • 장애인자동차표지관리대장 	○	○			수시 수시 분기 수시 분기 수시 매년 수시 수시
	보고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등록 전산화자료 국립재활원 송부 • 장애인등록 실적(현황) • 생계보조수당 지급대상자 현황 및 소요예산 • 생계보조수당 지급 실적 보고 • 장애인의료비 지원 실적 보고 • 저소득 장애인 보장구교부사업 실적 보고 • 장애인자녀교육비 지원실적 보고 • 장애인자녀교육비 지원대상자 현황 • 자립자금대여 실적 보고 • LPG사용승용자동차증명서 발급현황 보고 • 장애인자동차 표지관리실적 보고 	○	○	○	○	분기 분기 분기 매년 분기 매년 매년 분기 매년 분기 매년 분기

〈表 III-9〉 低所得偏父母家庭서비스 細部業務別 關聯 書式의 作成機關 및 週期

업무구분	서식명	작성 및 주요 처리기관				작성 주기	
		읍면동	시군구	시도	기타		
모자복지	신청 의뢰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급여(시설입소) 신청서 • 자녀 학비지원 신청서 • 자녀 양육비지원 신청서 • 저소득 모자가정 복지자금대여 신청서 • 모자복지시설 입소 신청 및 의뢰서 	○	○			수시 분기 분기 수시 수시
	선정 증명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자가정 증명서 • 자녀 학비지원신청 접수증 • 자녀 양육비지원신청 접수증 • 저소득 모자가정 생업자금대여 대상자 결정 통지서 	○	○			수시 분기 수시 수시
	관리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자가정 관리카드 • 모자가정 조사대장 • 저소득 모자가정 학비 지원대상자명부 • 저소득 모자가정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명부 • 저소득 모자가정 복지자금대여대상자 조사서 • 저소득 모자가정 복지자금대여 관리카드 	○	○	○		수시 매년 분기 분기 수시 수시
	보고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자가정 보호대상자 현황보고 • 저소득 모자가정자녀 학비교부 실적보고 • 저소득 모자가정자녀 학비교부 정산보고 • 저소득 모자가정 아동양육비교부 실적보고 • 저소득 모자가정 아동양육비교부 정산보고 • 저소득 모자가정 복지자금대여 실적보고 • 모자가정 영구임대주택 입주현황보고 	○	○	○		매년 분기 매년 분기 분기 매년 반기

〈表 III-10〉 兒童福祉 細部業務別 關聯 書式の 作成機關 및 週期

업무구분		서식명	작성 및 주요 처리기관				작성 주기
			읍 면 동	시 군 구	시 도	기 타	
아동 복지	관리업무	• 소년소녀가장세대 현황	○	○	○		수시
	보고업무	• 정부지원현황 보고		○	○		매월

〈表 III-11〉 老人福祉 細部業務別 關聯 書式の 作成機關 및 週期

업무구분		서식명	작성 및 주요 처리기관				작성 주기
			읍 면 동	시 군 구	시 도	기 타	
노인 복지	신청의뢰업무	• 노인 교통수당 지급 신청서	○				수시
		• 노인복지시설 입소신청서 및 의뢰서	○	○			수시
	선정증명업무	• 경로우대증	○				수시
	관리업무	• 노령수당 지급대상자 관리대장	○	○			수시
• 교통수당 지급대상자 명단 • 노인건강진단 기록부		○				수시 수시	
보고업무	• 노령수당 지급대상자현황 보고	○	○			매년	
	• 노인 교통수당 지급결과 보고 • 노인진단결과 조치내역	○	○	○		매월 매년	

나. 生活保護 및 公共福祉서비스 業務 關聯書式의 分析

〈表 III-12〉 生活保護 關聯 申請·依賴書式 內容

서식명	용도 및 구성요소	작성기관 접수기관	작성 주기
생활보호 (변경)신청서	<p>생활보호의 신청 및 변경(처리기간 14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족상황: 성명, 세대주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교육정도, 건강상태, 직업, 월평균 근로소득 생활실태: 주거를 달리하는 부양의무자의 성명, 신청인과의 관계, 주소, 부양여부 및 정도 주거상황, 가구월간 총소득액, 자산상황(주택, 토지, 임대보증금, 기타) 보호신청(변경)내용 및 사유 신청인 및 대리인 날인 구비서류: 호적등본, 건강진단서 	대상자 읍·면·동	수시
생업자금대여 신청서	<p>생업자금 대여신청을 위한 사업계획서 제출 (처리기간 5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인 및 보증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날인 구비서류: 사업계획서 1부 	대상자 읍·면·동	수시
직업훈련지원 신청(추천)서	<p>생활보호대상자의 직업훈련의 지원 및 선정 확인 (처리기간 10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최종학력 훈련희망사항: 훈련기관, 훈련직종, 훈련기간 훈련기관 입소시 잔여가족 생계곤란 유무, (생계곤란시) 부양가족수 (읍면동 경유란-훈련기관장 귀하) 추천대상 적합 여부 입소시 잔여가족 생계곤란 여부, 생계곤란시 부양가족수 조사확인일 읍·면·동장, 시장·군수 날인 	대상자 시·군	수시
장제보호비용 신청서	<p>장제보호비용의 신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인(가족, 시설장):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또는 시설소재지), 사망자와의 관계 사망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또는 시설소재지), 사망연월일, 사망원인 매장· 화장예정(완료)연월일, 소요장제비, 유류금품 총당액, 신청액 신청인 날인 	대상자 시·군·구 읍·면·동	수시

〈表 III-13〉 生活保護 關聯 選定·證明書式 內容

서식명	용도 및 구성요소	작성기관 교부기관	작성 주기
생업자금 대여대상자 결정통지서	<p>대상자 및 국민은행, 농협에 생업자금 대여대상 결정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자: 성명, 주소 자금취급금융기관 명 구비서류: 신청인 및 보증인 인감증명서, 보증인 재산세 완납증명서(지방이주자는 지방이주사실 확인서) 	읍·면·동 시·군·구	수시
생활보호대상자 (시설수용자) 증명서	<p>학비지원 신청시 등에 생활보호대상자임을 증명 (처리기간 즉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또는 시설소재지), 세대주 성명, 세대주와의 관계 신청인 서명, 발급번호, 읍면동장 날인 	읍·면·동 시·군·구	수시

〈表 III-14〉 生活保護 關聯 管理書式 內容

서식명	용도 및 구성요소	관리기관	작성주기
생활보호대상자 관리카드	<p><u>생활보호대상자의 보호금품지급 내역 등 기록·관리</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구분(거택보호, 자활보호, 기타) • 가구주: 성명, 본적,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입·전출일 • 가족상황: 가구주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교육정도, 건강상태, 취업상태, 월평균소득 • 생활실태: 주거를 달리하는 부양의무자, 주거상황 및 내용(건물면적, 방수, 대지면적), 건물상태, 화장실, 문화비품, 주거를 달리하는 부양의무자 및 지원상태(가구주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 월평균지원액) • 소득상황: 가구주 및 기타가족의 근로소득, 영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기타소득, 1인당월평균소득액 • 자산상황: 가옥, 토지, 가축, 비품 등, 총재산액 • 빈곤 원인, 자활방향 • 계속보호연수, 자활소요기간, 생업자금대여 희망여부, 직업훈련희망자(직종, 훈련기관, 훈련기간) • 조사자의 조사 일시 및 면담내용 • 지원사항(일시, 지원구분, 현금, 현물의 종류 및 수량, 취급자) • 생활실태 점검사항 확인: 읍·면·동장(점검구분, 일시, 직급, 성명, 확인) 	읍·면·동	수시
생업자금 대여관리카드	<p><u>생업자금 대여자 상환내역 관리</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보증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직업, 채무자와의 관계 • 사업내용: 사업용, 사업개요 • 대여내용: 대여액, 대여일, 거치기간, 상환기간, 상환방법(거치기간이자, 원리금) • 거치기간 중 이자 및 원리금 상환 현황 	읍·면·동 시·군·구	수시
학비지원 대상자 명부	<p><u>학교장(시설장)에게 수업료 지원대상자 통보</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명, 전화번호 • 성명, 학년반, 시설소재주소, 가구주 성명(또는 시설장) 	시·군·구 읍·면·동	분기

〈表 III-15〉 生活保護 關聯 報告書式 內容

서식명	용도 및 구성요소	작성기관 처리기관	작성 주기
생활보호대상자 현황	<p><u>시장·군수에게 생활보호대상 현황 보고</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현황: 거택보호자 유형별·성별·연령별 세대주·전세대원, 시설종별수, 수용자수, 자활보호자 연령별·성별 세대주, 전세대원 • 거택보호 및 자활보호 세대수: 월평균 소득액별, 세대당 자산액별, 주택형태별, 세대원수별, 부동산 소유현황별, 14세 이상 취업상태별, 건강상태별, 교육상태별, 빈곤원인 및 해결방안별, 자활소요연수별 • 생업자금액별, 직업훈련기관 및 기간별 희망·입소·수료·취업·자립자활 대상자 수, 중학생 수업료 지원자 • 생활보호대상 변동현황: 자활자립 원인, 보호변동 내용, 신규보호대상자 발생 	읍·면·동 시·군·구 시·도	분기

〈表 III-16〉 障碍人서비스 關聯 申請·依賴 內容

서식명	용도 및 구성요소	작성기관 접수기관	작성 주기
장애검진의뢰서	<p><u>의료기관에 시·군·구청장이 장애인등록 신청자 검진의뢰</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검진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주소 장애상태: 장애명 장애원인, 장애발생시기, 장애등급 검진의사 소견, 성명, 날인 검진의료기관 날인 	시·군·구 읍·면·동 검진의료 기관	수시
장애인수첩 재교부신청서 및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p><u>장애인수첩 재교부 및 기재사항 변경 필요시</u> (처리기간 재교부 5일/ 변경 10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주소, 전화번호, 입소시설명 보호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장애인과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장애인수첩내용: 수첩번호, 교부일자, 장애명, 장애등급, 중복장애명, 진단기관명 재교부사유 신청인 날인 구비서류: 사진, 기존 수첩(혈은 경우) 	대상자 읍·면·동	수시
장애등급 조정신청서	<p><u>시·도에 장애상태 변화에 의한 장애등급 조정 요청</u> (처리기간 15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주소, 전화번호, 입소시설명, 날인 보호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장애인과의 관계, 주소 장애인수첩: 교부번호, 교부일자 조정신청내용: 장애명, 장애등급, 신청사유, 중복장애명, 진단기관명 	대상자 읍·면·동	수시
재활의료대상자 인정신청서	<p><u>장애인·보호자의 재활의료대상자 인정 신청</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처리기간 15일 장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주소, 전화번호, 날인 보호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장애인과의 관계, 주소 신청내용: 장애인수첩 번호 및 교부일자, 장애명, 장애등급, 중복장애명, 장착 보장구명, 희망 재활의료 종류, 사회보장여부(의료보호, 의료보험, 산재보험 등) 	대상자 읍·면·동 시·군·구	수시

〈表 III-16〉 계속

서식명	용도 및 구성요소	작성기관 접수기관	작성 주기
장애인의료비 청구서	<u>의료기관의 장애인재활 진료비 청구(처리기간 20일)</u>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담당자, 확인 재활의료기관 지정번호, 명칭,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당당 의사 주민등록번호 진료장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의료보호 번호, 수첩번호, 월상병명, 진료부위, 진료개시일, 진료일수 진료비용의내용: 청구건수, 총진료비, 본인지급금액, 의료보호부담액, 비용청구액 청구의료기관 날인 구비서류: 장애인진료비명세서 	대상자 시·군·구	수시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급신청서	<u>장애인 자녀교육비 지급 신청</u>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구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학생과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공공부조대상 여부, 학생: 성명, 학교명(급지), 학년반, 학교주소 및 전화번호 입학금, 수업료 신청인 주소, 성명 날인, 학생과의 관계 구비서류: 입학증명 서류 또는 재학증명서 	대상자 읍·면·동 시·군·구	분기
보장구교부 (수리)신청서	<u>장애인 보장구의 교부 또는 수리 신청</u>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적사항: 전·현주소, 전입년월일,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형태, 의료보호 장애형태: 장애명·상태·등급, 중복장애명·상태·등급 교부희망 보장구 및 수리희망 보장구(의수, 의족, 보조기, 휠체어, 휠지팡이) 보장구 교부실적: 교부년도, 종류, 교부 시·군·구 신청인 주소, 성명 	대상자 읍·면·동 시·군·구 한국맹인 복지연합 회장	수시
장애인자립자금 대여신청서	<u>장애인의 생업자금, 통근용자동차 구입비, 취업지도 및 기술훈련비, 기능회복 훈련 위한 고가 재활기기구입비, 고가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등을 대여하기 위하여 신청</u>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날인 보증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날인 대여자금종류 구비서류: 사업계획서, 해당매매계약서, 훈련증명서 	대상자 읍·면·동 시·군·구	수시

〈表 III-16〉 계속

서식명	용도 및 구성요소	작성기관 접수기관	작성 주기
생계보조수당 지급신청서	<u>장애인의 생계보조수당 지급 신청</u> •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장애인과의 관계, 주소, 날인 • 장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장애명, 장애등급, 중복장애명, 생활보호대상여부, 장애원인	대상자 읍·면·동 시·군·구	수시
장애인복지시설 입소(통원) 의뢰서	<u>장애인복지시설장애에게 장애인의 장애인복지시설 입소·통원·이용 의뢰</u> • 입소(통원)장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장애원인 • 부양의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직업, 장애인과의 관계 • 입소기간, 위탁비용 지원내역 • 시·군·구청장 인	대상자 읍·면·동 시·군·구	수시

〈表 III-17〉 障 碍 人 服 务 關 聯 選 定 · 證 明 書 式 內 容

서식명	용도 및 구성요소	작성기관 교부기관	작성 주기
장애인 현지조사결과서	<u>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급신청서와 장애인 등록카드 내용이 상이하거나 장애중복여부 판단 필요시 현지조사</u> • 장애인: 성명, 전화, 주소, 장애명, 장애등급, 중복장애명, 생활보호대상여부 • 생계보조수당 지급대상에 관한 최종 의견 • 조사자: 직급, 성명, 날인, 읍·면·동장 날인	읍·면·동	수시
장애인수첩	<u>장애등급 판정 후 수첩교부 장애인임을 증명</u> • 사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장애명, 장애등급, 중복장애명, 장애진단(판정) • 보호자: 주소, 성명, 장애인과의 관계 • 기재사항 변경기록: 일자, 변경내용, 확인청인 • 의료비 지급대상자기록: 일자, 내용, 확인청인 • 보장구 교부 기록: 교부 연월일, 종류, 확인청인 • 교육·시설보호 및 직업훈련기록: 연월일, 내용, 확인청인	읍·면·동 시·군·구	수시
장애인증명서	<u>장애인으로 등록하였음을 확인</u> • 발급번호 • 장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보호자, 보호자와의 관계 • 장애종별 및 등급, 등록번호 • 용도, 제출처, 시·군·구청장 날인	읍·면·동	수시

〈表 III-18〉 障碍人서비스 關聯 管理書式 內容

서식명	용도 및 구성요소	관리기관	작성주기
장애인 등록카드	<u>장애인 등록 신청 및 관리</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주소, 전화번호, 입소시설명, 입소년월일, 전화번호 • 보호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장애인과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신청인 날인 • 교육수준: 최종학력, 최종학교명, 소지면허자격종 • 생활정도: 보호자 및 장애인의 재산, 직업, 월평균소득 • 사회보장: 사회보험, 공공부조, 국가보훈대상자 • 희망사항: 보장구 장착 필요, 시설수용보호 희망, 직업훈련 경험 및 필요, 특수교육 희망, 취업 희망분야 • 장애등급판정결과: 장애명, 중복장애명, 장애등급, 장애재조정등급, 장애발생추정연령, 필요 보장구 • 기재사항 변경 및 제반기록: 일자, 변경등기제 내용, 확인관서명, 취급자인 • 거주지 이동상황: 일자, 주소, 확인관서명, 취급자 인 	시·군·구 읍·면·동	수시
장애인 자립자금대여 관리카드	<u>자립자금 대여내용 및 상환내역 기록 관리</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무자 및 보증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보증인 직업 및 채무자와의 관계 • 대여내용: 대여금액, 대여일, 대여자금종류, 거치기간, 상환기간, 이자율, 상환방법(거치기간 이자, 원리금) 	읍·면·동 시·군·구	수시
장애인 보장구 교부(수리) 신청·접수대장	<u>보장구의 교부나 수리를 신청받아 접수한 경우 기록 관리</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수번호, 접수일자 •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 장애상태, 희망보장구, 검진의뢰기관, 보장구교부, (수리)의뢰기관 	읍·면·동 시·군·구	수시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대상자 명부	<u>자녀교육비 지원받은 장애인 관련 사항 및 급여액 기록 관리</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성명, 주소, 학교명, 학년반, 급지별, 장애유형 • 예금주명, 은행명, 계좌번호, 입학금, 수업료 	읍·면·동 시·군·구	분기
생계보조수당 지급자 대장	<u>장애인에 대한 생계보조수당 지급 결정시 작성</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련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장애인등록일, 장애종별 • 수당지급, 최초수당(신청일, 지급월), 지급중단 월 및 사유 	읍·면·동 시·군·구	수시
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 명단	<u>자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된 장애인을 장애인의료비 지원대상자로 확정하여 시군구청장에게 보고</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의료보호 수첩번호, 장애인수첩번호, 장애유형 및 등급 	읍·면·동 시·군·구	수시

〈表 III-19〉 障碍人서비스 關聯 報告書式 內容

서식명	용도 및 구성요소	작성기관 처리기관	작성 주기
장애인 등록 현황	<u>장애인등록 현황의 기록 관리 보고</u> • 장애유형별, 장애등급별 등록자 수 • 장애진단기관 지정현황 • 등록진단비 집행실적: 배정액, 집행액, 잔액, 소요액 등 과부족액 • 홍보실적: 예산집행실적, 반사회보, 지방신문·방송 등	읍·면·동 시·군·구 시·도	분기
장애인 보장구 교부사업 실적	<u>장애인 보장구 교부 사업량 및 예산액 현황 보고</u> • 의수족보조기, 휠체어, 휠지팡이 등의 교부 및 수리, 검진비별 사업량 및 예산액의 계획, 실적, 잔액	시·군·구 시·도	매년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 실적	<u>장애인지녀의 교육비 지원 인원 및 예산액 현황 보고</u> • 배정인원, 국고 및 지방비 배정액 • 중학생, 실업고생, 인문고생별 국고 및 지방비 집행액·잔액	읍·면·동 시·군·구 시·도	매년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대상자 현황	<u>장애인지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 현황 보고</u> • 급지별 중학생, 실업고교생, 인문고교생 수	읍·면·동 시·군·구 시·도	분기
생계보조수당 지급 실적	<u>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급자 수 및 금액 보고</u> (익년 1월말) • 지급대상자 수: 장애종별, 소득수준별, 생활보호종별 • 지급액: 배정액 집행액 집행잔액	읍·면·동 시·군·구 시·도	매년
생 계 보 조 수 당 지급대상자 현황 및 소요예산	<u>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급대상자 보고</u> • 지급대상자수: 장애종별, 소득수준별 • 소요예산액: 당해분기 총소요액, 전분기 집행잔액, 당해분기 추가소요액	읍·면·동 시·군·구 시·도	분기
장애인 의료비 지원 실적	<u>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지급액 및 실적 보고</u> • 외래·입원·보장구별 진료실적 및 국고 및 지방비의 배정액 및 집행액, 잔액	시·군·구	분기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실적	<u>장애인 자립을 위해 대여된 각종 자금 규모 보고</u> • 대여자금 종류별(생업자금, 기술훈련자금, 재활기기 구입자금, 사무보조기기 구입자금, 기타) 배정액, 집행액, 잔액 • 시도별 전년도말 잔액, 미용자잔액, 당해연도배정액, 융자한도액, 융자실적, 재무부 반납액 등	시·군·구 시·도 국민은행 및 농협	매년

〈表 III-20〉 母子家庭서비스 關聯 申請·依賴書式 內容

서식명	용도 및 구성요소	작성기관 접수기관	작성 주기
복지급여 (시설입소) 신청서	<p><u>모자가정의 복지급여 수급 및 모자복지시설 입소 신청 (처리기간 15일)</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가족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교육정도, 건강상태, 직업, 월평균소득 • 현행 보호내용(모자보호: 복지급여·복지자금대여, 시설보호, 생활보호, 국가유공자) • 생활실태: 주거 달리하는 부양의무자 성명, 보호대상자와의 관계, 주소, 부양여부 및 정도, 주거 및 자산상황 • 보호신청(변경)내용 및 사유 • 구비서류: 호적등본, 건강진단서 	대상자 읍·면·동	수시
복지자금 대여신청서	<p><u>모자가정의 사업자금, 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 등의 대여 신청(처리기간 15일)</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및 연대보증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서명 • 구비서류: 사업계획서, 재학증명서, 진단서, 매매 또는 전세임대차 계약서 	대상자 읍·면·동	수시

〈表 III-21〉 母子家庭서비스 關聯 選定·證明書式 內容

서식명	용도 및 구성요소	작성기관 교부기관	작성 주기
학비 및 양육비 지원신청서 및 접수증	<p><u>저소득 모자가정 자녀의 학비 지급 신청 (처리기간 즉시)</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수번호, 보호별 모자가정보호, 주소 • 세대주성명(날인) • 학비지원 신청내역: 학생성명, 급지, 학교, 학년·반, 수업료, 입학금, 예금주성명, 은행명, 계좌번호 (접수증) • 접수번호, 학생성명, 세대주성명, 학교명, 학년·반 • 연월일, 읍·면·동장 날인 	대상자 읍·면·동	분기
모자가정 증명서	<p><u>보호대상 모자가정 세대주의 모자가정 확인 증명</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세대주 성명 및 관계 • 용도 • 시·군·구청장 날인 	읍·면·동	수시

〈表 III-22〉 母子家庭서비스 關聯 管理書式 內容

서식명	용도 및 구성요소	관리기관	작성주기
모자가정 관리카드	<p><u>모자가정의 실태에 관한 조사 후 관리</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작성일 • 연도별 보호구분(복지급여, 자금대여, 시설보호, 생활보호, 기타), 주소변동사항 • 가족사항: 모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학력, 직업, 건강상태, 월평균소득, 동거여부, 월평균소득 등 • 주거를 달리하는 부양의무자 및 지원실태: 모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원 내용, 월평균 지원액 • 주거형태별 사용방 수 • 자산사항: 부동산, 동산, 부채 • 변동사항: 가구원 수, 월평균소득, 자산 • 등급 • 지원내용(일자, 구분, 내용, 확인) • 상담조사 및 특기사항(일자, 내용, 확인) 	읍·면·동	수시
복지자금 대여 관리카드	<p><u>모자가정 복지자금대여 내용 및 상환내역 관리</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번호 • 채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보증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직업, 채무자와의 관계 • 대여내용: 금액, 일자, 거치기간, 상환기간, 이자율, 상환연월일, 거치기간이자·원리금 액수 및 상환현황 	읍·면·동 시·군·구	수시
저소득 모자가정 학비지원 대상자 명부	<p><u>자녀 학비를 지원받은 모자가정의 관련 사항 기록 관리</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련번호 • 학생: 성명, 주소, 학교명, 학년반, 급지별 • 지원내역: 예금주명, 은행명, 계좌번호, 입학금, 수업료 • 분기별 신청확인란 	읍·면·동 시·군·구	분기

〈表 III-23〉 母子家庭서비스 關聯 報告書式 內容

서식명	용도 및 구성요소	작성기관 처리기관	작성 주기
모자가정 보호대상자 현황보고서	<u>보호대상 모자가정의 규모, 특성, 급여내용 등 보고</u>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명, 전화번호, 문서번호, 연월일 모자가정 현황: 전년도·당해연도별 총가구수 및 총가족수, 당해연도 보호실적 및 다음연도 보호대상 현황(복지급여수혜자: 생계비·아동교육지원비·직업훈련비등·아동양육비, 시설보호: 모자보호시설·모자자립시설·미혼모시설·일시보호시설, 복지자금대여별 가구수 및 가족수), 다른 법에 의한 내용과의 관계(모자복지법, 생활보호법, 국가보훈대상, 미보호) 모(가구주)의 현황: 모자가정이 된 사유, 모의 연령 현황, 교육정도, 모의 직업 모자가구 아동현황: 아동연령, 아동취학 현황 모자가구 생활실태: 주거형태별, 자산사항, 가구등급 	읍·면·동 시·군·구	매년
모자가정 영구임대주택 입주현황	<u>모자가정의 영구임대주택 입주 현황 보고</u>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별, 전년도 및 금년도의 주공·지차제별 입주세대 수, 시설퇴소자 수 	읍·면·동 시·군·구	매년
모자가정 학비 및 양육비 교부실적 보고서	<u>학비 및 양육비 지원 현황 보고</u>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비지원내역: 학교(중학교, 실업계고교) 및 급지구분별 인원 및 금액 국고보조금 집행현황: 배정액, 집행액, 잔액 	읍·면·동 시·군·구 시·도	분기
저소득 모자가정 학비교부 정산보고서	<u>학비를 지원받은 저소득 모자가정의 현황 관련 정산 보고</u>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기별, 학교별(중학교, 고등학교), 국비 및 지방비별 학비 지원 인원 및 금액 	시·군·구 시·도	매년
모자가정 복지자금 대여실적	<u>모자가정에 대한 복지자금 대여 규모 보고</u>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도별 전년도 비용자잔액, 당해연도 배정액, 용자잔도액, 용자실적, 반납액, 지용자잔액 	읍·면·동 시·군·구 시·도 농협	매년

〈表 III-24〉 老人서비스 關聯 申請·依頼書式 內容

서식명	용도 및 구성요소	작성기관 접수기관	작성 주기
교통수당 지급신청서	<u>노인의 교통수당 수급 신청</u>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서명	대상자 읍·면·동	수시
노인복지시설 입소의뢰서	<u>노인의 양로, 실비양로, 노인요양, 실비노인요양시설 등에 입소시키거나 입소 위탁시 시설 장에게 송부</u> • 기관명 주소, 전화, 전송, 문서번호 • 입소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령, 주소 • 입소의뢰자: 성명, 주소, 입소자와의 관계 • 날인: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직할시장, 시장·군수·구청장	대상자 읍·면·동 시·군·구	수시
노인복지시설 (양로/노인요양) 입소신청서	<u>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 입소 신청(처리기간 14일)</u> • 처리기간 14일 • 신청인: 성명, 관계, 연령, 직업, 날인 • 구비서류: 해당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대상자 시·군·구 읍·면·동	수시

〈表 III-25〉 老人서비스 關聯 選定·證明書式 內容

서식명	용도 및 구성요소	작성기관 교부기관	작성 주기
경로우대증	<u>각종 경로우대제도 이용시 해당 노인임을 증명</u>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보건복지부장관 날인	읍·면·동	수시

〈表 III-26〉 老人서비스 關聯 管理書式 內容

서식명	용도 및 구성요소	관리기관	작성 주기
노령수당 지급대상자 관리대장	<u>노령수당지급대상자 관리</u> • 성명, 주민등록번호, 부양실태(단독거주, 가족동거) • 현행보호내용, 월평균소득 • 지급개시일, 기록자	읍·면·동 시·군·구	분기
경로승차요금 (교통수당)지급 신청대장	<u>노인 교통수당 신청자 관리</u> • 성명, 생년월일, 주소, 날인 • 신청일, 신청인 • 금액	읍·면·동	상시

〈表 III-27〉 老人서비스 關聯 報告書式 內容

서식명	용도 및 구성요소	작성기관 처리기관	작성 주기
노령수당 지급 대상자 현황보고	<u>노령수당지급 대상자 및 내역 보고</u>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명, 문서번호, 수신, 발신인 시·구별, 성별 부양실태, 현행 보호내용 	시·군·구 시·도	매년
노인복지사업 현황보고	<u>노인복지시설·노인여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사업기관의 장의 시군구청장에 대한 현황 보고</u>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복지시설, 유료노인복지시설: 시설구분, 명칭, 설치주체, 입소정원, 종사자 수, 성별 전년말 입소자 수, 당해연도말 입소자 수 노인여가시설: 시설구분, 명칭, 설치주체, 이용정원, 시설규모, 소재지, 전년말·당해연도말 이용자 수 가정봉사원파견사업: 사업기관 명칭, 설치주체, 소재지, 이용정원, 종사자현황(유급, 자원 가정봉사원), 전년말 이용자 수, 해당연도말 이용자 수 주간 및 단기보호사업: 사업기관 명칭, 설치주체, 소재지, 이용정원, 종사자 현황(유급, 자원 가정봉사원), 전년말 이용 	시·군·구 시·도	분기

Ⅳ. 生活保護 및 公共福祉서비스 業務 電算시스템 設計

1. 시스템 設計의 基本方向

공공부조업무의 내용 및 절차를 分析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生活保護를 비롯한 公共福祉서비스 업무를 電算화하기 위해서는 그 시스템 設計에 다음과 같은 基本 方向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가. 統合된 生活保護·福祉서비스 시스템의 構築

生活保護와 公共福祉서비스는 서로 업무의 특성이 상이한 부분이 있으나, 對象者는 동일한 社會脆弱階層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대상자간의 정보가 統合되도록 시스템을 構築해야 한다. 현재 각 행정조직별 業務 分掌에 의한 대상자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生活보호와 공공복지서비스간 또는 공공복지서비스 대상자들 간에 同一人 또는 同一家口일 경우 相互 連結하는 統合 정보시스템을 構築함으로써 대상자에 대한 包括的인 정보의 파악으로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한다.

나. 既存 行政電算網과의 連繫

生活보호·공공복지서비스 대상자의 주소나 가구 구성원의 變動은 기존의 행정電算망 안에 있는 住民電算網을 통하여 검색이 가능하므로 이 주민電算망과 연계된 시스템 構築은 필수적이다. 특히 기존의 生活보호대상자, 의료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에 대한 정보가 이미 주민電算망 안에 일부 構築되어 있으므로 이것을 활용하여야 한다. 대상

자의 선정에 필요한 家口 人的事項에 대한 정보는 물론이고, 資産, 所得에 관한 정보들을 행정전산망의 不動産電算網, 自動車電算網과 연계함으로써 업무의 迅速성과 대상자 선정의 合理性을 기해야 한다.

다. 시스템의 標準化 指向

標準化의 영역은 정보의 표준화, 소프트웨어의 표준화, 하드웨어의 표준화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情報의 標準化를 위해서는 생활보호와 복지서비스 업무가 서로 다른 行政傳達體系를 갖고 있지만 목적이 동일한 업무에 대해서는 그 정보의 구성요소들을 一貫性있게 분류하고 표준화함으로써 정보의 혼란을 防止하고 관리의 효율성을 높인다. 또한 구성요소의 코드체계를 타 전산망의 코드체계와 비교하여 가능한 한 統一시킨다. 즉 일차적으로 생활보호와 공공복지서비스 업무에서 유사하거나 동일한 業務書式은 標準化하고 이를 타 전산시스템의 코드체계와 통일시킴으로써 他 電算網과의 連繫에 혼란을 방지할 수 있게 한다.

소프트웨어의 標準化는 기존에 개발된 프로그램의 運營實態를 파악해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기존의 읍·면·동이나 시·군·구에서 자체개발·운영하였던 프로그램들은 1992年 서울시 電子計算所에서 개발한 ‘生活保護對象者 管理 프로그램’ 이나 시범보건복지사무소 업무를 위한 ‘社會福祉 業務 프로그램’ 등을 들 수 있다. 이 프로그램들은 PC 단독처리 프로그램으로 小規模 자료의 관리 및 처리에 한정되었고 타 전산망과 연계되지 않아 사용이 거의 중단된 상태이다. 그러나 이러한 소프트웨어의 개발과정과 문제점들을 참고해야 할 것이다. 하드웨어의 표준화는 그 동안 國家 情報化政策의 일환으로 현재 시·도와 시·군·구에 국산 主電算機(타이컴)가 설치되어 행정전산망 체계를 이루고 있으므로 이 시스템과 연계가 가능한 하드웨어의 設置, 運營 프로

그램의 購入, 通信規約에 따라야 할 것이다.

라. 使用組織의 獨自性 維持

生活保護와 公共福祉서비스 업무는 읍·면·동, 시·군·구, 시·도의 여러 부서에서 多樣한 형태로 이루어진다. 統合管理와 統合給與라는 목표를 추구하면서도 부서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업무를 수용하려면 담당 과 또는 계의 業務領域을 파악하여 그 기능에 적합한 업무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설계되어야 한다. 특히 實績의 報告나, 현황 파악을 위한 統計生産은 부서별 獨自性이 요청되는 부분이다.

마. 시스템의 漸進的 開發과 擴充

生活保護와 公共福祉서비스 업무는 그 영역이 매우 넓으므로 전산화 대상업무 중에서 효과가 크고 정기적으로 반복 수행되는 업무를 우선적으로 전산화해야 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즉 대민 서비스의 일차적인 창구인 읍·면·동의 公共扶助 업무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전산업무를 개발하고, 점차 시·군·구의 주요한 공공복지서비스 업무, 사회복지 이용시설 및 수용시설의 정보관리체계와 連繫되도록 시스템을 확충한다. 또한 공공부조 수급자 뿐만 아니라 一般인들이 구축된 시스템에 접속하여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발전시킨다. 이러한 단계적 擴充을 위해서는 需要調査에 의한 업무개발의 優先 順位 설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전산기술(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기술발전에 부응하는 설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시스템의 構成 및 要求事項

공공부조업무 전산시스템은 <表 IV-1> 과 같이 대상자관리, 급여관

리, 보고관리, 통계관리 등의 4개 領域으로 나누어 구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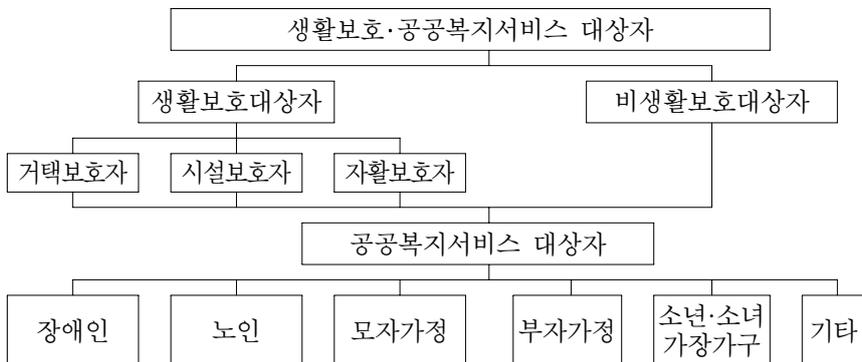
〈表 IV-1〉 生活保護·福祉서비스 電算시스템의 構成

구분	대상자 관리	급여 관리	보고 관리	통계 관리
목적	생활보호·공공복지서비스 대상자의 등록과 관리	대상자별 급여기준 및 급여내역의 사후관리	월별, 분기별, 수시 보고의 관리	생활보호·공공복지서비스 대상자의 현황 및 실태 파악
주요 업무	·대상자 관리 ·연명부 출력 ·증명서 발급	·급여기준 관리 ·급여대상 관리 ·급여내역 출력 ·급여 사후관리	·생활보호 실적보고 ·장애인 실적보고 ·노인 실적보고 ·모자가정 실적보고 ·부자가정 실적보고 ·소년/소녀가장 실적보고	·생활보호대상자 현황 ·장애인 현황 ·노인 현황 ·모자가정 현황 ·부자가정 현황 ·소년소녀가장현황

가. 對象者管理

生活保護對象者는 근로능력과 주거 유무에 따라 居宅保護 대상자, 施設保護 대상자, 自活保護 대상자로 분류된다. 공공복지서비스 대상자는 一般的으로 장애인, 노인, 모자가정, 부자가정, 소년소녀가장가구, 기타 복지서비스 대상자로 분류되고 있다(圖 IV-1 참조).

[圖 IV-1] 生活保護·公共福祉서비스對象者 分類體系



이러한 대상자의 선정과 관리는 중앙부처, 시·도, 시·군·구, 읍·면·동의 각 행정조직에서 사업 主管 부서가 상이하므로 대상자의 관리와 급여가 個別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동일한 공공부조 대상자라 할지라도 상호 연계된 특성이나 전체 지급되는 급여액에 대한 情報 把握이 어렵다. 生活保護와 公共福祉서비스, 공공복지서비스 대상자들 간에도 정보의 連繫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각 사업 部署別로 상이한 대상자 관리서식(대상자 신청서, 관리카드)을 검토, 분석하여 生活保護와 공공복지서비스가 통합된 對象者 管理書式의 使用이 요구된다.

이 統合對象者 管理書式 안에는 家口別로 가구주 사항, 가구 일반사항, 개인별 특성에 관한 정보를 體系的으로 분류, 수록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함으로써 생활보호 종류, 복지서비스 해당 여부가 가구별·개인별 속성이 통합적으로 파악되도록 한다. 또한 가구별, 개인별로도 독립적으로 정보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生活保護 업무의 生計費 보조, 資金 융자, 醫療保護의 지정 등은 가구별로 지급되거나 보호가 책정되지만 경로수당, 장애인수당, 학자금지급이나 취업희망자 신청 등은 個人別 신청이나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對象者管理 시스템은 生活保護와 公共福祉서비스 대상자의 입력, 조회, 수정, 삭제, 그리고 필요에 따라 행하는 연명부 출력이나 증명서 발급을 관장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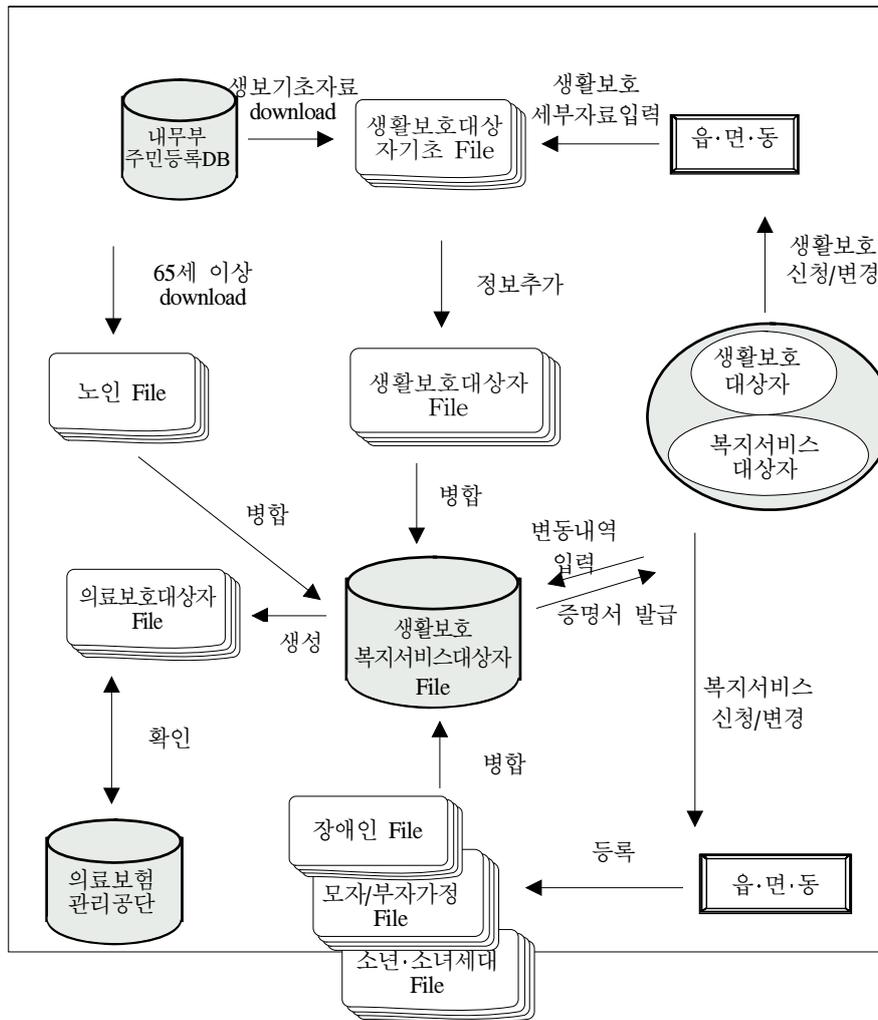
- 生活保護·公共福祉서비스 대상자의 입력, 수정, 조회, 삭제를 관장하는 對象者 登錄
- 읍·면·동에서 관리되는 각 대상자의 人的 事項을 간단히 출력하는 延名簿 出力
- 生活保護와 公共福祉서비스 대상자들이 수시로 필요로 하는 證明書 發給

對象者管理를 위한 細部業務 및 處理內容은 <表 IV-2>와 같이 제시되며 資料의 흐름은 [圖 IV-2]와 같은 절차에 의한다.

<表 IV-2> 對象者管理 細部業務別 處理內容

업무 구분	세부업무	처 리 내 용
대상자 등록	생활보호대상자	생활보호대상자의 가구주, 가구일반사항, 가구원별 특성 입력/수정/조회
	장애인	등록장애인, 장애인의 보호자, 장애종류, 장애등급 및 특성 입력/수정/조회
	노인	65세 이상 노인의 생활보호종류, 의료보험종류, 개인특성을 입력/수정/조회
	모자가정	모자가정의 가구주, 가구일반사항, 가구원별 특성, 결연·후원사항 입력/수정/조회
	부자가정	부자가정의 가구주, 가구일반사항, 가구원별 특성, 결연·후원사항 입력/수정/조회
	소년소녀가정	소년소녀가장의 가구주, 가구일반사항, 가구원별 특성, 결연·후원사항 입력/수정/조회
연명부 출력	생활보호대상자 연명부	생활보호대상자의 가구주 성명, 주소, 가구원수, 보호종류 출력
	의료보호대상자 연명부	의료보호대상자의 가구주 성명, 주소, 의료보호종류 출력
	장애인 연명부	장애인의 성명, 주소, 장애종류, 장애등급 출력
	노인 연명부	65세 이상 노인의 성명, 주소, 생활보호종류, 의보종류 출력
	모자가정 연명부	모자가정의 가구주 성명, 주소, 생활보호종류 출력
	부자가정 연명부	부자가정의 가구주 성명, 주소, 생활보호종류 출력
	소년소녀가장 연명부	소년소녀가장가구의 가구주 성명, 주소, 생활보호종류 출력
증명서 발급	생활보호대상자 증명서	생활보호대상자 증명서 출력
	의료보호대상자 증명서	의료보호대상자 증명서 출력
	장애인 증명서	등록된 장애인 증명서 출력
	취로증 발급	취로 희망자 취로증 출력

[圖 IV-2] 對象者管理 資料 흐름도



나. 給與管理

生活保護가 저소득층에 대한 基礎 所得保障 및 自活을 주 목적으로

하는 제도인 반면, 公共福祉서비스는 장애인, 노인, 아동, 모자·부자가 정들이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생활상의 곤란이나 장애에 대한 기능상의 문제의 해결, 재활 촉진을 위하여 현금급여를 비롯하여 특히 情緒的·社會的 支持를 위한 지원을 행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두 제도는 개념을 달리하고 대상자의 選定目的이 다르지만 保護 또는 서비스라는 형태로 지불되는 두 제도의 給與는 공급자측에서는 대상자별 급여의 名目 區分이 필요하지만 수급자의 입장에서는 개별적인 수급보다 최소한의 내역이 명시되고, 간편하게 一括 受給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급여는 목적에 따라, 생계보호, 의료보호, 자활보호, 교육보호, 해산보호, 장애보호 등으로 구분되며, 生活保護 類型에 따라 급여의 종류와 내용을 달리한다. 공공복지서비스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각종 手當, 支援金, 용자알선, 확인서 발급 등이 있다. 이 급여들 중에서 장애인에 지원되는 自立資金融資와 모자·부자가정에 지원되는 生業資金融資는 生活保護의 생업자금융자와 동일한 목적의 급여이다. 그러나 공공복지서비스의 급여는 대상자의 特性에 따라 附加的으로 지급되는 항목이 존재하므로 모든 급여의 항목들을 생활보호제도의 급여분류 속에 넣는 데는 무리가 따른다.

그러므로 生活保護·공공복지서비스 대상자의 급여 종류는 급여의 목적과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고, 지급 시기에 따라서 월별, 분기별로 지급되는 定期給與와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非定期給與, 確認書 發給 등으로 다양하다. 또한 지방자치제의 시행으로 급여항목과 수준이 自治團體(시·도 또는 시·군·구)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기도 하므로 다양한 지급기준을 수용할 수 있는 支給項目과 水準에 대한 관리가 요구된다. 생활보호와 공공복지서비스의 통합급여라는 관점에서 급여의 종류와 액수는 생활보호와 공공복지서비스 對象

者の要件에 따라 <表 IV-3>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이 급여들은 家口別·個人別 급여의 종류 및 내역이 관리되어야 하며 지급된 급여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事後管理가 요구된다.

<表 IV-3> 生活保護·福祉서비스 對象者別 給與 種類

구분	세부항목	수급대상자 요건		수급내용	수급방법
		생활보호 상태	복지서비스 대상		
생계 보호	생계비 지원	거택보호	소년소녀가장	- 주·부식비(인/월) - 연료비(인/월) - 피복비(인/월) - 생활용품비(가구/월) - 월동대책비(인/년) - 특별위로비(2회/년)	월별 계좌입금
의료 보호	의료보호	거택보호	재해자, 의사상자	- 의료보호 1종	보호증발급
		자활보호	-	- 의료보호 2종	보호증발급
교육 보호	학자금 지원	거택보호 자활보호	-	- 중·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	분기별 계좌입금
		-	저소득장애인	- 중·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	계좌입금
		-	모자가정	- 중학생·실업계고등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 - 인문계고교생 년 2회 지원	분기별 계좌입금
		-	부자가정	- 중·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	분기별 계좌입금
		-	소년소녀가장	- 중·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 - 대학입학금 및 수업료 1회 지원	분기별 계좌입금
자금 용자	생업자금 용자	자활보호	-	- 저리용자	용자알선
	자립자금 대여	-	저소득장애인	- 저리용자	용자알선
	생업자금 용자	-	모자/부자세대	- 저리용자	용자알선
직업 훈련	직업훈련	자활보호	-	- 수업료, 가게비, 교통비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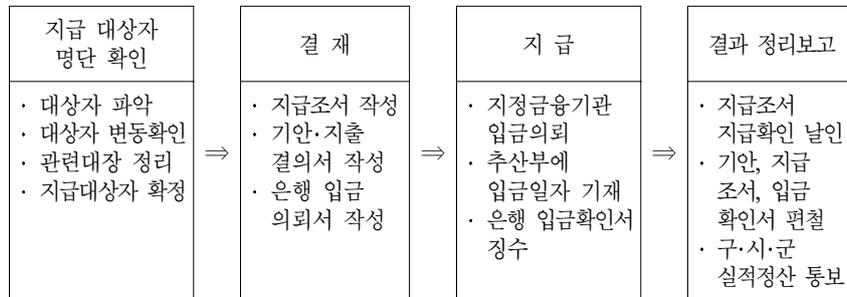
〈表 IV-3〉 계속

구분	세부항목	수급 대상자 요건		수급내용	수급방법
		생활보호 상태	복지서비스 대상		
생활보호 기타급여	해산보호비	거택보호 자활보호	-	- 출산시 10만원	시·군·구에서 계좌입금
	장제비	거택보호	-	- 50만원 지원	시·군·구에서 계좌 입금
	감면제도	거택보호 자활보호	-	- 주민세 비과세 - TV수신료 면제 - 주민등록 업무 수수료면제 - 주민등록 과태료 면제 - 쓰레기수거 수수료 감면 - 쓰레기봉투 무료제공 - 복지전화 무료 설치비 및 감면	관계기관 통보 또는 확인
노인복지 급여	노령수당	거택보호 자활보호	65~79세 노인 80세 이상 노인	수당(인/월) 3만 5천원, 5만원	월별 지급
	경로승차권	-	65세 이상 노인	교통수당(인/월)	월별 지급
	경로우대증 발급	-	65세 이상 노인		증명서 발급
장애인 복지 급여	생계보조 수당	거택보호 자활보호	장애인(1급, 2급 중복장애, 정신지체는 3급 포함)	수당(인/월) 4만 5천원	분기별 지급
	의료비 지원	자활보호	장애인	진료비 본인부담급	지급
	보장구 지원	거택보호 자활보호	장애인	구매 또는 수리	
	특소세 면제	-	장애인	면제	확인서 발급
	LPG사용	-	장애인	차량연료 허용	확인서 발급
소년소녀 가정복지 급여	생계보조 수당	-	소년소녀가정	- 영양급식비 - 학용품비 - 교통비	월별 계좌입금
모자/부자 가정복지 급여	자녀 양육비	-	모자/부자 가정 (6세 이하 아동)		월별 계좌입금
기타	결연사업	-	소년소녀가장 모자/부자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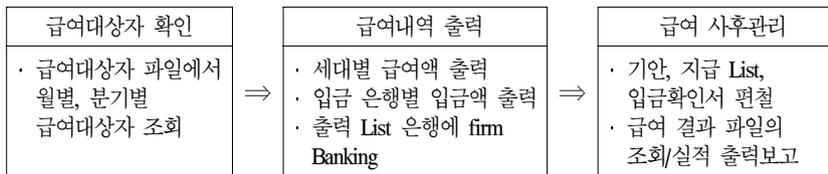
1) 現金支給 節次

현재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서 월별, 분기별로 지급되는 현금 급여는 [圖 IV-3]과 같은 節次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이 업무를 전산화하면 [圖 IV-4]와 같은 절차로 簡素化된다. 이와 같이 급여 지급의 전산화는 지급을 위한 대상자의 情報 檢索이나 書類 作成의 일부를 電算 出力物로 대체할 수 있는 효과를 주지만 부분적으로는 최소한의 기존 문서에 의한 處理節次와 병행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근거에 입각한 行政處理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산화한 급여지급의 장점은 급여 대상자 및 액수의 신속한 조회와 급여결과에 대하여 가구별, 개인별, 월별 또는 분기별로 統合的이고 持續的인 事後管理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圖 IV-3] 現行 給與支給 節次圖



[圖 IV-4] 電算化한 給與支給 節次圖



2) 給與管理 細部業務

生活保護·복지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급여관리는 가구별, 개인별로 지급되는 급여의 종류와 내역의 통합적 관리를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4개 영역으로 나누어 업무가 처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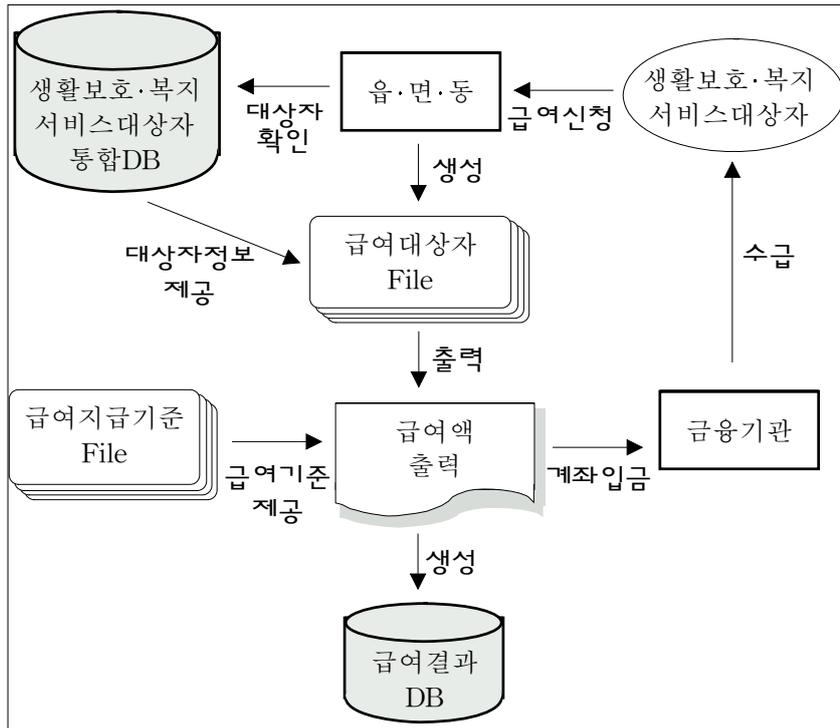
- 월별, 분기별,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현금급여액의 입력과 관리를 위한 支給基準의 관리
- 생활보호·공공복지서비스 대상자의 금전적·비금전적 給與 申請者 관리
- 생활보호·공공복지서비스 대상자의 급여액의 世帶別, 入金 銀行別 出力
- 급여결과 및 급여대상자의 事後管理

生活保護와 公共福祉서비스 대상자의 급여를 위한 細部業務 및 處理內容은 <表 IV-4>와 같고 이를 위한 情報의 흐름은 [圖 IV-5]의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 질 수 있다.

〈表 IV-4〉 給與管理 細部業務別 處理內容

업무구분	세부업무	처리내용
급여 지급기준 관리	생계비지급기준	가구 규모별 등급별 생계비 지급기준의 입력/조회
	복지수당지급기준	생계비 이외의 복지서비스 현금급여 지급기준을 입력 조회. 복지 수당은 노령수당,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아동양육비, 소년소녀 부가수당(영양급식비, 교통비, 피복비, 학용품대), 직업훈련수당, 일군위안부 생활안정지원금, 모자가정 난방비의 지급기준 입력/조회
급여 대상자 관리	생계비 지급대상자	생계비 지급대상자 조회
	노령수당 지급대상자	생활보호대상자의 노령수당 지급대상자 조회
	학자금 지급 대상자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 모자/부자가정, 소년소녀가장 세대 중·고등 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급 대상자 조회
	생업자금융자 대상자	자활보호, 장애인, 모자/부자 가정의 자금융자자 입력/조회
	아동양육비지원 대상자	모자/부자 가정의 아동양육비 지급대상자 조회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급 대상자	장애인의 생계보조수당 지급 대상자 조회
	장애인 보장구 교부(수리)	장애인의 보장구 교부 또는 수리 신청의 입력/조회
	장애인 의료비 지급	장애인의 의료비지급 입력/조회
급여지급	생계비 지급	가구별로 생계비 지급액 출력
	노령수당 지급	가구별 노령수당 지급액 출력
	경로승차권 지급	가구별 경로승차권 지급수량 출력
	학자금 지급	가구별 학자금 내역, 입금계좌 출력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급	가구별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급액 출력
	소년·소녀가장세대 부가수당 지급	가구별 영양급식비, 교통비, 피복비 지급액 출력
	아동양육비 지급	가구별 아동양육비 지급액, 출력
	장제비 지급	생활보호 대상자의 장제비 지급 출력
	해산비 지급	생활보호대상자 해산비 출력
	가구별 급여내역 출력	가구별 총급여 내역 출력
급여결과 및 사후관리	가구별 급여내역	가구별 생활보호·복지서비스 대상자 총급여내역 조회/출력
	개인별 급여내역	개인별 생활보호·복지서비스 대상자 총 급여내역 조회/출력
	급여종류별 급여내역	급여 종류별 가구별 급여내역 조회/출력
	생업자금 융자내역	가구별 생업자금융자기간, 융자액에 관한 내역 조회/출력
	학비보조내역	가구별 학비보조자 및 보조액 조회/출력

[圖 IV-5] 給與管理 資料 흐름도



다. 報告管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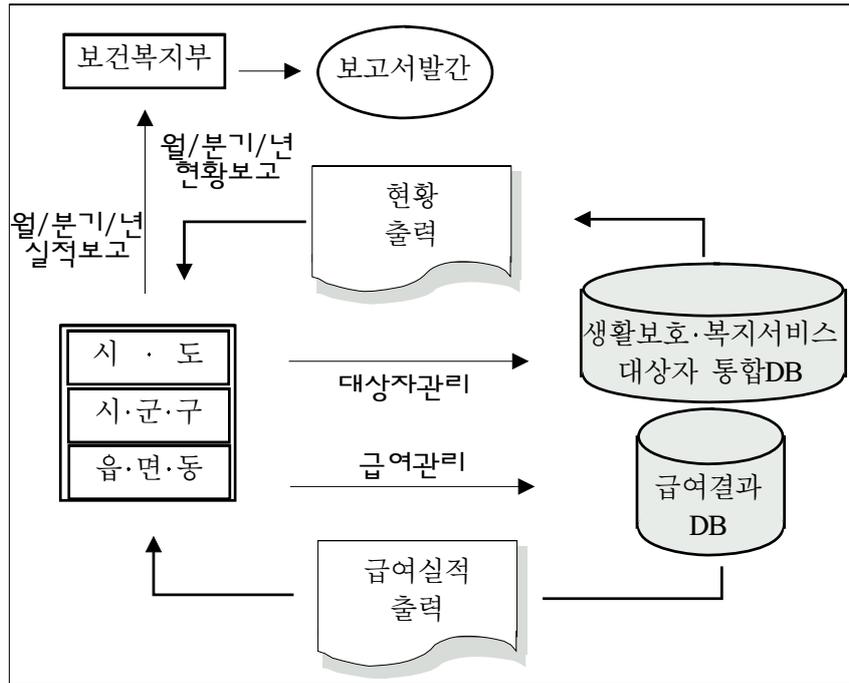
생활보호와 공공복지서비스업무의 報告는 대상자의 選定 結果 및 現況에 대한 보고와 給與 結果에 대한 보고로 나눌 수 있다. 보고의 週期는 월별, 분기별, 또는 연도별로 업무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報告體系는 일선의 사업담당 부서인 읍·면·동에서 대상자 선정 결과나 급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을 시·군·구와 시·도에서 취합하여 보건복지부에 전달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보고업무의 전산화는 대상자관리 파일이나 급여실적 파일에서 집계된 결과물로 이루어진다. 보고과정에서의 오류와 시간적인 短縮을 위해서는 이 파일들에 대한 읍·면·동 뿐만 아니라 시·군·구, 시·도에서도 情報의 處理 및 接近을 가능하게 하여 직접 現況 및 實積 자료를 출력할 수 있게 한다. 報告管理의 세부업무별 처리내용은 <表 IV-5>와 같고 정보의 흐름은 [圖 IV-6]과 같이 제시된다.

<表 IV-5> 報告管理 細部業務別 處理內容

업무구분	세부업무	처리내용
생활보호 업무	소득·재산 현황보고	보호종별(거택, 자활), 소득·재산별 가구 및 가구원수 집계출력(매년)
	생활보호 실적보고	보호종별(거택, 자활) 생계보조비, 장제비, 해산비 지급인원 및 지급액 출력(분기별)
	교육보호 실적보고	보호종별(거택, 자활)·학교별(중, 고등학교, 인문계, 실업계) 학자금지급 인원 및 지급액 출력(분기별)
	생업자금융자 실적보고	보호종별(거택, 자활) 생업자금융자 구분, 융자액, 용도, 운영실태 출력(분기)
사회복지 서비스 업무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급 실적보고	장애종별, 소득수준별, 생활보호종별(거택, 자활) 수당지급 인원 수 및 집행액 출력(분기별)
	장애인 자립자금대여 실적보고	대여자금 종류별(생업자금, 기술훈련자금, 재활기기구입자금) 집행액 출력(매년)
	장애인 보장구교부 실적보고	장애인 보장구 교부 및 수리 예산액 및 집행액 실적 출력(매년)
	장애인 의료비지원 실적보고	외래·입원별 진료실적 및 집행액 및 집행액 출력(분기별)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 실적보고	학교별(중학교, 실업계고교, 인문고교) 교육비 지원 집행액 출력(분기별)
	모자가정 학비 및 양육비 교부실적 보고	학교별(중학교, 실업계고교) 및 급지별 지급 인원 및 지급액 출력(분기별)
	모자가정 생업자금대여 실적보고	생업자금 배정액, 융자실적, 반납액 출력(매년)

[圖 IV-6] 報告/統計 管理 資料 흐름도



라. 統計管理

보다 발전된 生活保護와 公共福祉서비스 정책이 수행되기 위해서는 대상자의 현황과 속성이 다양하게 把握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상자관리 파일이나 급여결과 파일들로 부터 필요한 통계생산이 가능하도록 다양하게 정보가 수록되어 있어야 한다. 생활보호·공공복지 서비스를 내용으로 하는 공공부조업무의 통계는 대상자별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통계의 獨自性이 요구된다. 이러한 기본적인 요구를 반영함과 동시에 생활보호와 공공복지서비스가 결합된 統計의 개발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 업무별 대상자관리

및 급여정보의 一貫性和 그에 따른 코드체계의 整備가 요구된다. 통계관리에서 필요한 細部業務別 處理內容은 <表 IV-6> 과 같다.

<表 IV-6> 統計管理 細部業務別 處理內容

업무구분	세부업무	처리내용
생활 보호 대상자 현황	유형별 현황	보호유형(거택, 자활)별 현황 출력
	연령별 현황	보호유형(거택, 자활)별 연령별 현황 출력
	가구원 1인당 월평균 소득별 현황	보호유형(거택, 자활)별 1인당 월평균소득 현황 출력
	자산별 현황	보호유형(거택, 자활)별 재산 현황 출력
	가구원수 현황	보호유형(거택, 자활)별 가구원수 현황 출력
	주택소유 현황	보호유형(거택, 자활)별 주택소득 현황 출력
	취업상태 현황	보호유형(거택, 자활)별 취업상태별 현황 출력
	건강상태 현황	보호유형(거택, 자활)별 건강상태 출력
	교육상태 현황	보호유형(거택, 자활)별 교육상태 출력
	자활 소요년수 현황	보호유형(거택, 자활)별 자활소요년수 출력
	보호탈피 현황	보호유형(거택, 자활)별 보호탈피 현황 출력
	신규보호 현황	보호유형(거택, 자활)별 신규보호 현황 출력
	차량소유 현황	보호유형(거택, 자활)별 차량소유 현황 출력
	용도별 차량소유 현황	보호유형(거택, 자활)별 차량용도 현황 출력
	차종별 차량소유 현황	보호유형(거택, 자활)별 소유차종 현황 출력
복지 서비스 대상	주거형태별 현황	주거형태별 현황표 출력
	장애인 등록 현황	장애유형별 장애등급별 등록자수 현황 출력
	노령수당지급 대상자 현황	성별 부양실태 현황 출력
	모자가정 보호대상자 현황	모 연령별 아동연령, 주거상태 현황 출력
	모자가정 영구임대주택 입주현황	연도별 입주세대수 현황 출력

3. 데이터베이스 構築

일반적으로 업무가 추가됨에 따라 그에 따른 파일의 수는 증가된다. 그렇게 되면 구축된 파일의 관리가 점점 어려워지고, 파일간의 情報共有나 連結 또한 복잡해진다. 그러므로 파일의 구축은 定規化(normalization) 과정을 통하여 파일간의 情報의 重複을 最少化하면서

도 다양한 정보를 수용할 수 있는 凡庸性和 擴張性이 요구된다. 또한 분산처리되는 데이터는 서로 연결되어 정보의 抽出을 신속하게 하여 전체 시스템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파일을 구축해야 한다.

公共扶助業務 전산시스템은 업무의 간소화와 입력서식과 코드체계의 표준화를 통하여 情報를 規格化하고 대상자와 급여의 統合管理로 파일 개수의 최소화를 유도한다. 또한 분산처리되는 업무간의 정보의 공유나 연결은 주민등록번호나 지역, 가구, 가구원 번호를 연결한 고유번호를 사용한다. 生活保護·복지서비스 전산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기본 데이터베이스는 <表 IV-7> 과 같이 정의된다.

<表 IV-7> 生活保護·福祉서비스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種類

구분	기능	데이터베이스명
대상자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보호·복지서비스 대상자의 통합 표준정보 수록 분산 업무에 필요한 정보 제공 현황 출력을 위한 정보 수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보호·복지서비스 대상자 통합 DB
급여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급여항목과 지급액의 정보 관리 급여대상자에 대한 정보의 수록 대상자 파일의 자격 검색에 의한 지급 업무별 보조화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급여지급 기준 DB 생계비지급 DB 의료보호 DB 학자금지원 DB 자금용자 DB
급여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급여결과의 지속적 관리를 위한 정보수록 급여실적보고와 급여결과의 가구별, 급여종류별 검색과 출력이 가능하도록 파일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구별 급여결과 DB 개인별 급여결과 DB

가. 데이터베이스 構築 方案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기존 주민전산망내에는 생활보호대상자, 노인, 의료보호대상자, 보훈대상자에 대한 정보가 구축되어 있다. 생활보호 대상자의 선정은 生活保護法에 의하여 매년 9월에 정기적인 조사에

의한 선정과 수시 선정이 병행된다. 그러나 생활보호대상자의 80% 이상(1996年 경우 거택보호 88.2%, 자활보호 75.4%, 전체 80.4%)이 보호의 변동없이 계속 선정되고 있다. 또한 생활보호대상자는 많은 부분이 공공복지서비스 대상자와 중복된다. 왜냐하면 생활보호대상자의 선정사유 가운데 장애나 노령, 결손가정 등으로 인한 低所得 상태가 되는 현상이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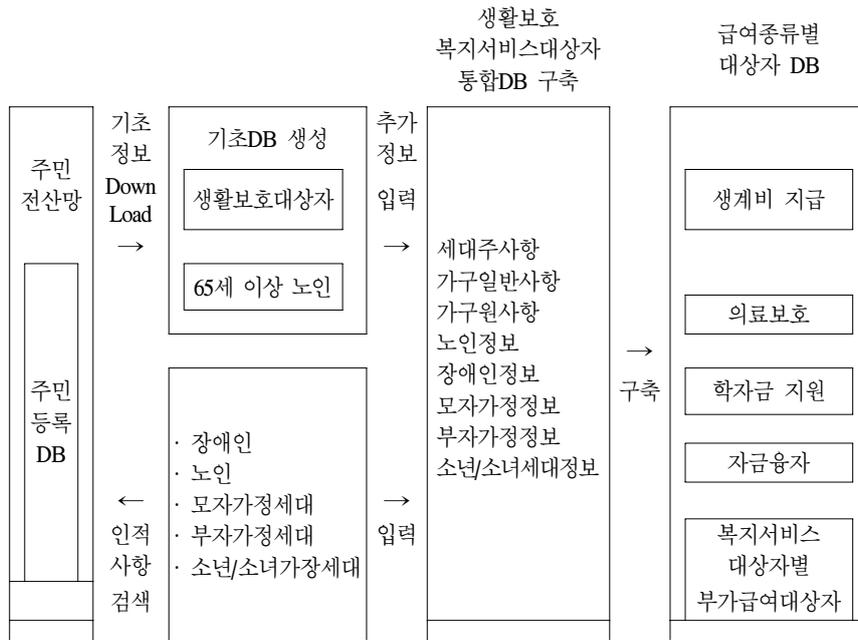
이러한 生活保護 및 공공복지서비스 대상자 데이터베이스 구축에는 기존의 構築된 資料를 활용하고, 정보의 重複入力を 방지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圖 IV-7 참조). 이를 위해서는 주민전산망 정보의 활용과 대상자 정보 입력시 검색을 통하여 이전에 정보가 入力되어있는 의 여부를 확인하며, 이미 정보가 있을 경우 追加 情報만을 입력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파일구축작업의 효율성과 정보체계의 一貫性을 유지한다. 생활보호·복지서비스 대상자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은 다음의 節次에 의한다

- 주민전산망에서 생활보호대상자 기초화일 구축
- 구축된 생활보호대상자 기초화일에 추가정보 입력
- 주민전산망에서 65세 이상 노인화일 구축
- 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의료보호대상자 화일구축
- 장애인, 모자·부자가정, 소년소녀가장세대 정보 입력은 이미 구축된 생활보호, 노인 등의 가구주와 가구원의 정보검색을 통하여 중복입력 방지
- 생활보호·복지서비스 대상자 통합화일(Master File)에서 단위업무별 파일 구축

생활보호와 공공복지서비스 업무는 行政傳達體系別로 업무의 내용이 다르다. 즉 읍·면·동에서는 對象者 管理, 證明書 發給, 給與의 支給

등이 주된 업무이나 시·군·구, 시·도에서는 現況把握이나 實績의 集計가 주요 업무이다. 그러므로 행정체계별로 시스템의 메뉴를 다르게 구성하거나 데이터베이스의 接近(Access) 권한을 통제함으로써 데이터베이스의 안전을 높인다. 즉 대상자의 登錄과 修正은 읍·면·동에서만 가능하도록 하고 대상자 照會나 確認書 出力은 시·군·구에서도 가능하도록 파일의 접근 권한을 부여한다. 대상자 및 급여관리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별 構成要素는 <表 IV-8> 과 같다.

[圖 IV-7] 데이터베이스 構築 順序圖



〈表 IV-8〉 業務別 데이터베이스 構成要素

구분		구성요소
생활보호 복지 서비스 대상자	가구주 사항	가구주 성명, 가구주 주민번호, 생활보호구분, 가구유형, 주소, 특수주소, 계좌은행, 계좌번호
	가구 일반사항	전입일자, 전출일자, 책정일자, 최초책정일, 책정사유, 제외기간, 보호변동, 자활소요년수, 가구형태, 주거형태, 사용방수, 가구원수, 소득, 재산,
	가구원 사항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동거여부, 건강상태, 교육정도, 직업훈련, 자격증명, 직업, 취업종류
	장애인 특성	장애명, 장애등급, 장애인등록여부, 보장구, 취업, 시설보호사항
	노인 특성	부양실태, 건강상태
	모자가정 특성	자녀취학상태, 결연·후원상태
	부자가정 특성	자녀취학상태, 결연·후원상태
	소년·소녀가정	취학상태, 결연후원상태
생계비지급 대상자	가구주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생활보호구분, 월평균 소득액, 소득등급, 가구원수, 가구원수 등급, 계좌 은행명, 계좌 번호	
의료보호 대상자	의료보호증번호, 의료보호종별, 가구주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 생활보호구분, 가구형태, 세대주와의 관계, 가구원 성명 및 주민번호	
교육보호 대상자	가구주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생활보호구분, 가구유형, 주소, 가구주와의 관계, 학생 성명, 학교구분, 학교명, 학년, 반, 급지, 계좌은행, 계좌번호	
생업자금융자 대상자	신청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 생활보호구분, 가구유형, 생업자금융자일, 사업내용, 융자금액, 상환방법, 상환기간, 융자 은행명, 은행 지점명	
직업훈련 대상자	훈련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생활보호구분, 가구유형, 주소, 직업훈련 희망자 성명, 가구주와의 관계, 계좌 은행 및 번호	
생계비 지급기준	기준년, 기준월, 가구원수등급, 월평균소득등급, 지급액	
복지수당 지급기준	기준년, 노령수당 지급액,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급액, 아동양육비 지급액, 소년소녀세대 부가급여 지급액(영양급식비, 교통비, 피복비, 학용품대), 직업훈련 수당액(수업료, 가계비, 교통비), 일군위안부 생활안정 지급액	
노령수당 지급대상자	지급대상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생활보호구분, 가구유형, 세대주 성명, 세대주 주민번호, 가구주와의 관계, 계좌은행, 계좌번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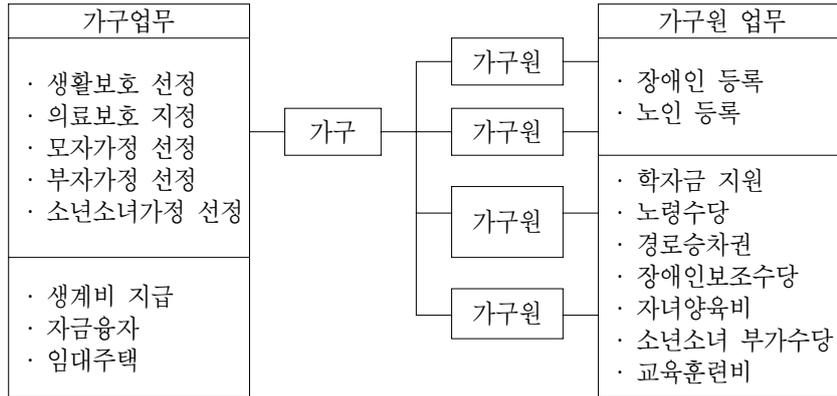
〈表 IV-8〉 계속

업무대상	구성요소
교통수당 지급대상자	지급대상자 성명, 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생활보호구분, 가구유형, 가구주 성명, 세대주 주민번호, 가구주와의 관계, 계좌은행, 계좌번호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급대상자	장애인 성명, 장애인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생활보호구분, 가구유형, 장애종류, 장애등급, 가구주 성명, 가구주 주민번호, 가구주와의 관계, 계좌은행, 계좌번호
아동양육비 지급대상자	지급대상자 성명, 지급대상자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생활보호구분, 가구유형, 가구주 성명, 가구주 주민번호, 가구주와의 관계, 계좌은행, 계좌번호
장제비 지급대상자	사망자 성명, 사망자 주민번호, 사망일, 주소, 전화번호, 생활보호구분, 가구유형, 가구주 성명, 가구주 주민번호, 가구주와의 관계, 계좌은행, 계좌번호
해산비 지급대상자	분만자 성명, 분만자 주민번호, 분만일, 주소, 전화번호, 생활보호구분, 가구유형, 가구주 성명, 가구주 주민번호, 가구주와의 관계, 계좌은행, 계좌번호
영구임대주택 신청자	가구주 성명, 가구주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생활보호구분, 가구유형, 가구원수, 주거형태, 거주기간, 가산점

나. 데이터 베이스 連結

生活保護와 公共福祉서비스 업무는 업무의 성격에 따라 家口에 관한 업무와 家口員에 대한 업무가 混在되어 있다. 그러므로 가구와 가구원에 대하여 個別的으로도 情報의 檢索이 가능하도록 파일을 구축하여야 한다(圖 IV-8 참조). 장애인이나 노인의 등록과 급여는 가구원 정보만으로도 업무가 가능하지만 향후 업무의 擴張성과 정보의 표준화를 위해서는 관리 대상자 파일구조를 가구사항 > 가구원사항 > 대상자별 특성 순으로 統合對象者파일을 구축한 후, 이 통합대상자파일에서 급여나 세부업무에 필요한 補助파일의 구축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統合 파일과 單位業務를 위한 파일간의 필요한 정보의 연결은 주민등록번호나 가구원까지 포함하는 固有番號에 의하여 상호 연결한다.

[圖 IV-8] 家口·家口員別 業務區分



다. 生活保護·福祉서비스 對象者 統合管理 카드

생활보호와 공공복지서비스 업무 전산화의 중요 목적 중 하나는 對象者와 給與의 統合管理이다. 실제로 일부의 읍·면·동 또는 시범 보건복지사무소에서는 統合管理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각 업무별 사업지침에 의한 대상자 관리카드와는 별도로 대상자를 綜合的으로 관리할 수 있는 카드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생활보호와 복지서비스 대상자 정보의 統合管理는 두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 중 하나는 현재 개별적으로 사용중인 관리카드의 내용을 그대로 입력한 후, 파일에 수록된 가구주, 또는 가구원의 주민번호를 이용한 파일 併合(Merge) 작업을 통하여 생활보호·복지서비스 대상자 통합파일을 구축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個別的인 관리카드를 새로운 통합관리카드로 재작성한 후 이를 입력하여 파일을 구축하는 방법이다. 어떤 방법을 선택해도 작업과정에서 長短點이 있다. 前者의 경우는 단시일안에 통합파일 구축이 가능하나

파일을 구성하는 항목과 코드체계의 一貫性이 결여되어 있어서 추가로 修正作業이 있어야 하고, 後者의 경우는 여러 개의 대상자카드를 한 개의 카드로 재작성해야 하는 노력과 시간이 요구된다.

대상자 통합관리카드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標準化 作業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신규로 선정되는 대상자의 통합관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서식이다. 왜냐하면 현재 사용되고 있는 관리카드는 각 사업의 주무부서가 개별적인 사업시행 과정에서 생성한 것으로 유사한 항목이라 하더라도 書式別 코드체계가 다르다. 일례로 생활보호대상자의 건강상태 항목의 장애 분류는 신체장애자, 정신장애자, 廢疾者로 분류하고 있으나, 장애인등록카드에서는 지체, 시각, 청각, 정신장애, 정신지체로 분류하고 있고, 사회보험(연금, 의료보험)에 대한 항목은 장애인 관리카드에는 있으나 생활보호대상자 관리카드에는 없어서 별도로 國民年金管理公團에 조회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생활보호대상자와 공공복지서비스대상자(장애인, 노인, 부자/모자가정세대, 소년소녀가장세대)의 보호신청서 또는 대상자 관리카드를 중심으로 생활보호·복지서비스대상자 統合管理카드 <表 IV-9>를 만들고 각 項目別 코드체계를 <表 IV-10>과 같이 정하였다.

장애인 사항											
보호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장애인 가구원 번호	가구주 와의 관계	장애명	장애 등급	장애인 등록 여부	보장구		보훈대상		취업	시설보호	
					장착 여부	보장구 종류	보훈 대상 여부	보훈 급수	희망 분야	입소 여부	입소 년월일
노인											
복지서비스 가구원 번호	가구주 와의 관계	부양실태			건강상태		신청서비스 종류				
모자가정											
복지서비스 가구원 번호	가구주 와의 관계	취학상태			고등학교 종별		결연·후원자				
부자가정											
복지서비스 가구원 번호	가구주 와의 관계	취학상태			고등학교 종별		결연·후원자				
소년소녀가장세대											
복지서비스 가구원 번호	가구주 와의 관계	취학상태			고등학교 종별		결연·후원자				

〈表 IV-10〉 生活保護·福祉서비스 對象者 統合코드 體系

	관리번호	- -	작성일자	0000년 00월 00일			
가구주 사항	가구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						
	전·출입	전입일자	0000년 00월 00일	전출일자	0000년 00월 00일		
생활 보호	생활보호종류	① 거택보호 ② 시설보호 ③ 자활보호 ④ 기타					
	생활보호 책정사유	① 질병장애 ② 노쇠 ③ 연소 ④ 부양의무자 부양중단 ⑤ 소득기준이하 ⑥ 실직, 사업실패					
	생보책정일	현재책정일	0000년 00월 00일	최초책정일	0000년 00월 00일		
	보호변동	① 동종보호 ② 신규 ③ 거택보호에서 ④ 자활보호에서 ⑤ 시설에서					
	생보제외사유	① 취업 ② 건강회복 ③ 자활 ④ 부양의무자 부양 ⑤ 재산증가 ⑥ 전출 ⑦사망					
	자활소요년수	(년)					
복지 서비스	사회복지 서비스 종류	① 장애인 ② 노인 ③ 모자가정 ④ 부자가정 ⑤ 소년/소녀 가정 ⑥ 기타					
	복지서비스 등급	① 모자가정 () 급 ② 부자가정 () 급					
	사회복지 서비스 책정일	현재책정일	0000년 00월 00일	최초책정일	0000년 00월 00일		
	책정변동	① 동종보호 ② 신규 ③ 제외					
	대상자수	장애인	(명)	노인	(명)	아동	(명)
가 구 일 사 항	가구원수	(명)					
	주거형태	① 자가 ② 전세 ③ 월세 ④ 무료임대 ⑤ 영구임대 ⑥기 타					
	사용방수	(개)					
	소득	월가구 총소득	(만원)		가구 1인당 평균소득	(만원)	
	재산	총평가액	(만원)	부동산	(만원)	동산	(만원)
	자동차	소유여부	① 소유 ② 무소유				
		차량종류	① 승용차 2000cc 이하 ② 승용차 2,000cc 이상 ③ 승합차 15인승 이하 ④ 승합차 16인승 이상 ⑤ 화물차 2.5톤 이하 ⑥ 화물차 2.5톤 이상				
		소유구분	① 본인 ② 존·비속 ③ 타인 ④ 기타				
용 도		① 자가용 ② 보철용 ③ 생업용 ④ 기타					

가 구 원 일반사항	가구원 일련번호	가구주는 01번으로 시작
	세대주와 의 관계	① 본인 ② 배우자 ③ 자녀 ④ 부모 ⑤ 조부모 ⑥ 형제 ⑦ 기타
	동거여부	① 동거 ② 비동거
	건강상태	① 건강 ② 신체장애 ③ 정신장애 ④ 폐질 ⑤ 기타
	학력	① 무학 ② 미취학 ③ 국졸 ④ 중졸 ⑤ 고졸 ⑥ 전문대졸 ⑦ 대졸이상
	직업훈련	① 이수 ② 훈련희망 ③ 훈련중 ④ 훈련불필요
	사회보험	① 국민연금 ② 공무원연금 ③ 사학연금 ④ 군인연금 ⑤ 의료 보험 ⑥ 의료보호 ⑦ 산재보험 ⑧ 고용보험 ⑨ 기타 ⑩ 없음
	직업	① 없음 ② 학생 ③ 단순노무직 ④ 농축수입업 ⑤ 전문기술직 ⑥ 사무행정직 ⑦ 판매·서비스 ⑧ 제조생산직 ⑨ 운수장비운전 ⑩ 기타
	취업상태 (종별)	① 상시고용 ② 임시고용 ③ 일일고용 ④ 자영업 ⑤ 농수축산업 ⑥ 미취업 ⑦ 비경제활동인구
	월평균 소득	(만원)

장애인 사 항	복지서비스 가구원 번호	가구원 일반사항의 해당 가구원번호
	세대주와의 관 계	가구원 일반사항과 동일
	장애명	① 지체 ② 언어 ③ 청각 ④ 시각 ⑤ 정신지체
	장애등급	(급) (호)
	장애인 등록여부	① 등록 ② 미등록
	보장구 장착	① 장착 ② 미장착
	보장구 종류	① 휠체어 ② 워커 ③ 목발 ④ 지팡이 ⑤ 한쪽보조기 ⑥ 양쪽보조기 ⑦ 의족 ⑧ 신발 ⑨ 의수 ⑩ 보청기 ⑪ 약시안경 ⑫ 흰지팡이 ⑬ 기타
	보훈대상	① 보훈대상자 ② 보훈 미대상자
	보훈급수	(급) (호)
	취업희망분야	① 단순노무직 ② 농축수입업 ③ 전문기술직 ④ 사무행정직 ⑤ 판매·서비스 ⑥ 제조생산직 ⑦ 운수장비운전 ⑧ 기타
	입소시설 여부	① 시설입소 ② 시설 미입소
	입소년월일	0000년 00월 00일

노인	복지서비스 가구원 번호	가구원 일반사항의 해당 가구원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가구원 일반사항과 동일
	부양상태	① 부양자 있음 ② 부양자 없음
	건강상태	① 시각장애 ② 언어장애 ③ 신체장애 ④ 중풍 ⑤ 치매 ⑥ 노환 ⑦ 기타질병
	신청서비스 종류	① 신체활동 ② 가사지원 ③ 우애·상담 및 교육
모자 부자 · 소년 소녀 가구	복지서비스 가구원 번호	가구원 일반사항의 해당 가구원번호
	가구주와의 관계	가구원 일반사항과 동일
	취 학 상 태	① 미취학 ② 유치원 ③ 초등학교 ④ 중학교 ⑤ 고등학교 ⑥ 대학교
	고등학교 종별	① 인문계 ② 실업계 ③ 해당사항 없음
	결연·후원자여부	① 결연·후원자 있음 ② 결연·후원자 없음

V. 生活保護 및 公共福祉서비스 電算網 構築

최근의 급격한 컴퓨터 보급의 확대와 情報通信技術의 발달로 지역이나 거리에 상관없이 通信網을 이용하여 데이터의 처리나 정보의 검색이 가능하게 되었다. 즉 네트워크를 통하여 여러 지역에 산재한 컴퓨터 또는 프로세서를 상호 연결하여 여러 곳에서 데이터 처리를 할 뿐만 아니라 각 부문들이 개별적으로 구축한 정보를 편리하고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네트워크를 통한 情報의 交流는 단독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에서 발생할 수 있는 投資의 重複을 방지할 수 있고 情報의 附加價値를 증대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生活保護·公共福祉서비스 전산시스템 또한 전국 각 지역에서 업무가 처리되고, 타 전산망과의 정보 교류가 필요하므로 컴퓨터간 네트워크의 구축은 시스템 운영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공공부조업무 전산시스템의 네트워크 구축은 업무의 성격, 지역간 거리, 교류되는 정보의 양 등의 요인과, 운영의 주체가 정부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生活保護 및 公共福祉서비스 업무는 政府의 豫算 投入과 電算資源에 의존하여야 하므로 네트워크 구축에 있어 역시 정부가 구축한 전산망에 대한 검토가 중요하다. 즉 公共扶助 電算網의 구축을 모색함에 앞서서 현재 정부 주도의 電算網 事業 중에서 生活保護와 公共福祉서비스업무 行政傳達體系와 관련되거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정보의 연계가 필요로 하는 정부의 基幹電算網에 대한 현황과 향후 계획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1. 關聯 政府 基幹電算網의 現況과 問題點

生活保護 및 公共福祉서비스 업무와 關連되거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政府의 基幹電算網 現況은 다음과 같다.

가. 政府高速網

政府高速網은 행정정보의 범정부적 공동활용과 國民생활과 關連된 行政정보의 對國民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總務處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고 있는 망이다. 이 전산망은 政府 廳舍內의 층간 백본(Backbone)망과 政府 청사간에 초고속교환기(ATM)를 설치하여 部處內의 각 PC를 政府고속망과 연결함으로써 부처내 및 政府 부처간 行政정보가 원활하게 유통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망은 1996년에 政府세종로 청사와 政府과천청사를 초고속 專用回線(T3:45Mbps)로 連接하였고 연차적으로 政府대전청사와 망을 連接하며, 2000년까지는 地方自治團體를 포함하여 立法府 및 司法府의 개별망과 단계적으로 연계될 계획이다.

〈表 V-1〉 年度別 部處網과의 聯動 計劃

구분	연결년도	대상기관	연결방법	
행정부	세종로 청사	1997	내무부, 외무부, 공보처, 교육부, 통일원, 법제처	- 인터넷 워킹방식 - 政府고속망으로 통합 - 입법부, 사법부, 단독청사, 지자체는 자체통신망 구축후 단계적 연계
	과천 청사	1997	비기위, 공정위, 재경원, 과기처, 법무부, 농림부, 통산부, 환경부, 복지부, 노동부, 건교부	
	대전 청사	1998	병무청, 관세청, 특허청, 통계청, 중기청, 기상청, 산림청, 조달청, 철도청, 문화재관리국	
	단독 청사	1997	대비실, 안기부, 감사원, 보훈처, 국방부, 문체부, 정통부, 해양부	
		1998	국세청, 경찰청, 검찰청	
지방자치단체	1997~2000	16개 시도		
입법·사법부	1998~2000	법원행정처, 국회사무처		

資料: 총무처, 『행정정보화촉진 시행계획 보완(안)』, 1996.

部處別 個別網과는 아직 未連繫狀態에 있는데, 1997년부터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나 구체적인 협의 및 방안은 없는 상태이다. 이를 위해서는 부처간 法的 根據의 마련과 상호 協助體制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 地方行政綜合情報網(MOHA-NET)

內務部가 중앙과 지방의 신속한 정보 자료의 共有와 共同活用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1994년 6월부터 구축, 사용하는 종합정보통신망이다. 현재까지 內務部 6종(방재관리, 지방세, 주민등록, 소프트웨어 등록관리, 행정 종합정보관리, 기상 특보상황 수집전과), 他機關 8종(선관위의 선거관리, 해양수산부의 어선관리, 통상산업부의 광공업관리, 총무처의 행정 종합정보관리, 감사원의 감사업무관리, 공보처의 정기간행물 등록관리, 산업기술정보원의 산업기술 정보이용, 대한지방공제회의 공제회원 회비관리)의 업무를 중앙과 지방을 연결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내무부는 이 망을 政府高速網과 연계하여,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간에 별도의 통신망을 구성치 않고, 文書流通과 단말접속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성능 보강으로 내무부와 시·도간의 통신속도를 56Kbps에서 E1(1.54Mbps)급으로, 시·도와 시·군·구간은 9.6Kbps에서 64Kbps로 増速 전환할 계획이며 업무에서도 현재의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있는 不動産 및 自動車管理시스템의 공중통신망 접속을 MOHA-NET로 轉換 運用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있는 중앙부처의 전산업무는 MOHA-NET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환경부, 건설교통부, 병무청, 산림청 등과 추가로 접속 운영할 계획이다. 그러나 총무처가 이용하는 정부고속망과는 서로 다른 통신 프로토콜³⁷⁾에 의한 통신을 하

37) 정부고속망의 통신 프로토콜은 TCP/IP 이고 지방행정종합전산망의 프로토콜은 X.25를 택하고 있다.

고 있으므로 두 망의 연계를 위해서는 技術的, 保安的 檢討가 필요하며, 기존 MOHA-NET 사용자에게 제공되었던 다양한 서비스가 정부고속망으로 수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한국전산원, 1996).

다. 行政電算網

1985년 5월 行政電算網 기본계획에 따라 시스템개발을 시작하여 주민등록관리, 부동산관리, 자동차등록 업무 등을 국민에게 서비스하는 行政電算網은 정부의 行政情報化 사업의 가장 대표적인 업무이다. 또한 그 망의 연결도 전국의 시·도, 시·군·구, 읍·면·동까지 연결되어 서비스를 하고 있다. 연결된 전산장치는 주전산기 157대, 단말기로 사용하는 PC가 23,904대에 이를 정도로 방대하다(表 V-2 참조).

그 중에서 국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住民電算網은 1991년 3월부터 전국에 서비스를 시작하여 1995년 5월부터는 주민등록 전·출입 신고를 전입신고 1회로 即時處理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주민전산망에 연결된 행정기관수는 1995년 7월 현재 총 4,135개 기관(시·군·구 230개 기관, 읍·면·동 3,905개)이고 5966만 5천건(개인: 4565만 6천건, 세대: 1400만 9천건)의 주민등록자료를 관리하고 있다. 이 주민등록 정보는 고용, 복지, 교육, 세금징수 등 정부의 주요 政策決定에 매우 기초적이고 유익한 자료로 이용될 뿐만 아니라 많은 타기관에서도 共有하기를 바라는 데이터베이스이다. 1994년부터 1995년 10월까지 타기관에 주민등록 자료를 제공한 것은 57개 기관 159건에 달할 정도로 많은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자료이다. 현재 정기적으로 제공되는 주민등록 자료는 <表 V-3>에서 보는 바와 같이 外務部의 여권발급 업무, 內務部의 국토정보센타에 온라인(On-Line) 형태로 제공되고 있으며, 경찰청의 신원관리, 統計廳의 인구통계, 地方自治團體의 주민세 부과 업무는 一括處理(Batch) 형태로 자료가 제공된다.

〈表 V-2〉 內務部 行政電算網用 電算裝備(1996年 12月末 現在)

시도별	주전산기				PC			
	총계	주민	토지	자동차	총계	주민	토지	자동차
합 계	157	81	39	37	23,904	21,205	1,442	1,257
본 부	10	8	2	-	7	5	2	-
지 방	147	73	37	37	23,897	21,200	1,440	1,257
서 울	21	13	2	6	4,270	3,820	126	324
부 산	11	6	1	3	1,830	1,636	115	79
대 구	7	4	1	2	871	760	60	51
인 천	6	3	1	2	1,094	919	118	57
광 주	4	2	1	1	756	660	64	32
대 전	4	2	1	1	466	398	27	41
경 기	15	9	5	1	3,775	3,494	130	151
강 원	11	4	2	5	1,297	1,170	73	54
충 북	7	3	2	2	949	829	67	53
충 남	9	4	3	2	1,211	1,041	123	47
전 북	9	4	3	2	1,396	1,244	83	69
전 남	11	5	4	2	1,611	1,411	116	84
경 북	12	6	4	2	1,706	1,516	120	70
경 남	16	7	5	4	2,381	2,060	197	124
제 주	3	1	1	1	284	242	21	21

資料: 한국전산원, 『'97년 국가정보화백서』, 1997.

〈表 V-3〉 住民登錄資料 共同活用 業務

기관명	자료명	활용업무	주기	제공기관	제공방법
내무부	전국민의 세대주·세대원 주민 색인자료	국토정보	일 1회	중앙	온라인
외무부	신청인 인적사항 (가족관계, 병역 등)	여권발급	접수시	시·도	온라인
경찰청	만 17세 이상의 개인 기본 인적사항	신원관리	연 2회	중앙	M/T
			월 1회	시·도	
통계청	인구 이동 자료	인구통계	월 1회	시·도	M/T
지방자치단체	세대 주소 이동	주민세 부과	년 2회	시·도	디스켓

資料: 한국전산원, 『주민관리 발전(안)』, 1995.

그 이외의 제공은 심사과정을 거쳐 제공한다. 제공 형태는 온라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流出을 방지하고 개인 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磁氣테이프 형태로 교환된다. 전국의 읍·면·동까지 연결되어 있는 住民電算網의 주요 전산장비의 현황은 <表 V-4>와 같다.

<表 V-4> 住民電算網의 主要 電算裝備(1995年 7月 現在)

전산장비	세부내역
전산기	주전산기(타이컴): 81대 읍·면·동 서버: 3,905대
단말기	18,682대(시·도: 127대, 시·군·구: 1,119대, 읍·면·동: 17,436)
통신회선	8,482회선(전용회선: 4,529회선, 주민망: 3,953회선)

資料: 한국전산원, 『주민관리 발전(안)』, 1995.

생활보호·공공복지서비스 전산시스템의 주요 업무는 전국의 읍·면·동에서 수행되므로 향후 住民電算網과의 정보 連繫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그동안 業務 및 電算環境의 변화로 住民電算網에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시스템의 效率이 저하되고 있다. 주민등록 전산시스템은 본래의 기능이 身元 및 住所地 確認이므로 그 이외의 다양한 읍·면·동 업무들을 수용하기 어렵다. 地方稅 부과나 兵事業務의 경우 별도의 전산시스템에서 처리하거나 자료 재입력 후 通報體系를 이용하는 번거로움 등으로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 또한 공공복지서비스 업무의 증대, 업무환경의 변화에 대한 수용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둘째, 정보의 共同活用이 미흡하다. 각 부처나 기관의 주요업무에 대한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어 시스템간 連繫를 통한 One-Stop 民願 서비스 제공이 필요로 하나 외무부의 旅券發給 업무를 제외하고는 제도적, 시스템적 여건 미비로 住民登錄 人的 事項 정보를 필요로 하는 타기관이나 부처에 적시에 정보의 제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셋째, 裝備의 老朽로 장애발생이 잦고 主電算機 斷種에 따른 유지보수, 신규업무의 수용이 어렵다. 읍·면·동 서버와 OS(SCO Xenex)는 화상정보처리의 기능 부족 및 기술발전 추세를 감안한 기술적용이나 생산 중단에 따른 지속적 업그레이드가 곤란하여 인감, 사진 등 畫像情報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 넷째, 빈번한 통신장애, 저속의 통신속도, 읍·면·동의 近距離 通信網(LAN) 未構築으로 通信回線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은 <表 V-5>와 같이 요약된다. 즉 주민전산망이 畫像情報의 제공도 가능하며 行政電算網의 타 업무(자동차, 부동산), 의료보험 등과 주민등록 관련 정보들이 자동적으로 更新될 수 있도록 전산체계를 再構築하는 것이다. 또한 신규서비스의 개발, 주민카드 시스템의 수용, 타 부처가 요구하는 업무의 수용을 위하여 情報提供 시스템 위주로 전환을 추진하며 단계적으로는 地方行政 綜合情報網(MOHA-NET)과 연계하고 읍·면·동까지 近距離 通信網(LAN)을 설치할 계획이다.

라. 國民福祉網

보건의료와 사회복지의 주무 부처인 保健福祉部가 1992년부터 추진 중인 國民福祉網은 국민에 대한 보건의료 및 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한 보건복지 綜合情報網이다. 이 망은 보건의료, 의료보험, 국민연금, 복지행정업무와 관련된 기관간 電算連繫와 정보의 共同活用을 목표로 한다. 현재는 업무추진을 위한 기초단계로, 標準化를 전담할 國民福祉 標準院의 운영,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法的·制度的 裝置를 마련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 망의 구축은 관련 기관들의 自律的 推進이라는 한계성과 각 기관들의 업무 성격이나 전산환경의 다양성으로 그 계획이 실현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실정이다. 國民福祉網 구축과 관련된 주요기관의 전산장비 현황은 <表 V-6>과 같다.

〈表 V-5〉 住民電算網의 問題點 및 改善

구분	문제점	개선(안)
응용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상정보자료 미구축으로 전산파일과 수작업대장이 이중관리됨. · 주민등록사항만 국한된 전산하이므로 인적정보의 종합관리 미흡함. · 주민세 등 주민관련 지방세 업무가 연계안됨에 따라 행정효율성 저하됨. · 주민자료를 필요로 하는 관련업무와 정보연계가 안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상정보 자료의 전산 DB 구축 · 호적관리업무 등 관련인적정보 DB구축 · 주민세 과태료부과 업무 신규서비스 · 주민자료를 필요로 하는 관련업무에 주민정보 제공
주전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전산기 단종으로 추가업무 수용을 위한 시스템 확장이 곤란하고, 장애 빈발함. · 기 사용중인 C-ISAM의 OLTP기능이 취약하여 데이터 신뢰성이 약하고 파일 훼손에 의한 심각한 장애위험 내포됨. · 기 사용중인 읍·면·동 서버의 기능부족 및 단종에 따라 향후 서비스 할 화상정보 등의 효율적인 처리 곤란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서비스 제공과 연계하여 주전산기 Upgrade · DBMS 적용검토 · 읍·면·동 서버 및 OS의 상위 기종으로 Upgrade
통신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신장애 빈번함에 따라 업무수행 곤란함. · 저속의 통신속도에 의한 화상정보서비스 제공 곤란함. · 타 업무와는 별도의 통신망을 구축함에 따라 정보연계서비스 곤란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고속 국가정보통신망으로 전환
정책 및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서비스, 정보연계를 통한 법, 제도 개선 미흡함. · IC카드와의 통합운영방안 부재함. · 지방행정 전산화 계획과의 연계방안 부재함. · 일괄처리작업 증가에 따른 운용요원의 휴일근무 빈번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연계 및 신규서비스를 위한 서비스 항목결정 및 관련법, 제도개선 · 주민전자카드 및 지방행정전산화 계획을 수용하여 종합발전방안 수립 · 자동백업장비, 주간 일괄처리로 야간 일괄처리작업 최소화

資料: 한국전산원, 『주민관리 발전방안(안)』, 1995.

〈表 V-6〉 國民福祉網 關聯 主要 機關의 電算裝備

기관명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관리공단	의료보험연합회	의료보험관리공단
주전산기	타이컴	SUN SPARC	IBM9672-R12	NCR3000
O/S	UNIX	UNIX	MVS/ESA	UNIX
통신프로토콜	TCP/IP	TCP/IP	TCP/IP	TCP/IP
클라이언트수	233	2,000	80	650

資料: 한국전산원, 『'97년 국가정보화 백서』, 1997.

마. 電子住民카드

電子住民카드는 현재의 주민등록증을 정보화 사회에 걸맞은 多技能 身分證으로 전환할 필요성에서 고안된 카드이다. 이 신분증을 사용함으로써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등을 하나로 통합 활용할 수 있어서 국민들의 時間的, 經濟的 부담을 경감시키고, 향후 超高速 情報通信網과 연계하여 One-Stop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카드에 수록될 정보는 주민등록, 운전면허,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과 관련된 총 42개 항목이다(表 V-7 참조).

〈表 V-7〉 電子住民카드에 收錄되는 個人情報

대상업무	수록사항
주민등록	성명, 사진, 인감, 주민등록번호, 주소, 개인사항, 인적사항, 개인주소이력, 병역사항, 세대사항, 가족사항, 검중항목, 세대주소, 이력, 기타
운전면허	면허종류, 발행기관, 적성검사 기간, 별점, 면허조건, 교부일자, 정지/취소 여부
의료보험	보험자 기호 및 명칭, 보험자 구분, 관리번호, 피보험자 사항, 피부양자 사항, 자격취득일 및 상실일, 진료지역, 유효기간
국민연금	최초 취득일, 최초 가입종별, 총 납입액, 총 가입월수, 가입자와의 관계, 가입자 연금번호, 급여 종별, 수급 사유일, 수급증서 번호, 최종 수록일
지 문	지문 특징점
기 타	각 증명의 발급 기관장
계	42개 항목

資料: 한국전산원, 『전자정부 개념 정립 및 구현 방안에 관한 연구』, 1996.

生活保護 및 公共福祉서비스와 관련된 정보는 현재로서는 수록할 계획이 없지만 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대상자의 福祉關聯 情報의 수록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전자주민카드의 국민의 便宜 提供과 行政能率의 증진 등 긍정적 시각이 있는 반면에 否定的인 견해도 적극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수록된 정보들이 개인의 統制 手段으로 이용된다거나 정보의 유출에 따른 프라이버시의 侵害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례로 스웨덴의 개인정보에 대한 전산화 금지, 덴마크나 싱가포르의 개인 ID카드 시행의 정지와 같은 상황이 있기도 하다(한국전산원, 1996).

그러므로 전자주민카드가 통제의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고 社會保障과 관련하여 개인에게 다양한 이익을 제공받는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는 국민적 인식과 信賴의 確保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 사업은 1998년 제주도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1999년부터 17세 이상 국민에게 카드발급을 實用化할 계획이다.

2. 電算網 構築의 基本方向

가. 生活保護·公共福祉서비스 情報의 特性

생활보호·공공복지 전산시스템은 시·도, 읍·면·동 또는 시·군·구에 서 獨立的으로 자료의 처리 및 분석이 가능한 分散型 시스템이 필요하다. 시·도와 읍·면·동 시스템에는 대상자 및 중요 정보에 대하여 重複 또는 共同管理 함으로써 데이터 관리의 安全性과 주민등록 데이터베이스와의 接近을 보다 용이하게 한다.

市·道 시스템은 시·도내의 전체 대상자 관리 및 주소지 이동이나 지역별 특정 업무를 개발하며, 邑·面·洞 시스템은 읍·면·동내의 대상자 관리 및 그 지역에 수시로 발생하는 급여나 증명서 발급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일단 생활보호·복지서비스 대상자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된 이후에는 시·도와 읍·면·동 사이의 情報 交流量은 많지 않다.

왜냐하면 대상자의 거주지 이동에 대한 검색이 빈번하지 않을 것이며 읍·면·동에서 시·도에 보고되는 實績과 現況報告들은 월별, 분기별 또는 년 1회 보고되므로 即時性을 요하지 않고 자료량도 많지 않다. 중간에 위치한 시·군·구의 기능은 읍·면·동에서 보고되는 결과보고나 현황을 취합하여 시·도에 전달하거나 문서, 지침 등을 읍·면·동에 전달하는 업무가 대부분이다.

네트워크가 구축될 기관간의 情報交流의 量과 頻度는 생활보호와 공공복지서비스 업무가 어떠한 형태로 企劃, 推進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장래의 사업추진 방향을 고려하여 연계 기관간의 교류되어야 할 정보의 種類와 週期를 결정하고 役割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表 V-8 참조).

〈表 V-8〉 關聯機關間의 情報共有 項目

정보명	정보보유 처리기관	필요한 정보의 세부항목	용도	필요한 정보의 범위 및 정보량	제공방식 및 주기
주민등록 자료	내무부	성명, 주민등록번호, 현주소, 전화번호, 주소변동일자, 전입일자, 생활보호구분, 의료보장구분, 직업, 학력, 자동차유무 등 13개 항목	대 상 자 선정 및 관리	성명, 주민번호 등 13개 항목 총150만 건	온라인 리얼타임
국민연금 자격	국민연금 관리공단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득	대 상 자 선정	연금가입자 소득 약 50만 건	온라인 월 1회
의료보호 자격	의료보험 관리공단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격취득일자, 자격취득사유, 자격상실일자, 상실사유	대 상 자 관리	의료보호자격 등재 여부 약 150만 건	온라인 월 1회
취업정보	노동부	채용기관, 직종, 인원, 직업훈련안내	자활정보	채용기관, 직종, 인원, 직업훈련안내	VAN (Hitel, 천리안) 정보이용

生活保護 및 公共복지서비스 업무수행을 위한 정보의 흐름은 水平的 흐름과 垂直的인 흐름이 있다(表 V-9 참조). 수평적 정보의 흐름은 업무에 필요한 정보의 提供이나 共有를 위한 것으로 대상자의 선정이나 변동 資料의 管理를 목적으로 하며, 수직적 정보의 흐름은 行政傳達體系에서 발생하는 현황이나 실적보고 指針의 示達을 위한 정보의 교류이다. 이러한 정보 흐름의 성격, 위치한 컴퓨터간의 거리, 교환되는 정보의 량 등은 네트워크를 決定하는 요소가 된다.

〈表 V-9〉 關聯機關間의 情報 흐름의 類型

구 분	수평적 네트워크	수직적 네트워크
정보 흐름	- 수평적 흐름	- 수직적 흐름
업 무	- 생활보호대상자 책정 - 복지서비스 대상자책정 - 의료보호 대상자책정 - 등록장애인 정보제공	- 생활보호실적보고 - 복지서비스 실적보고 - 지침시달 - 행정문서 전달
관련기관 및 이 용 자	- 내무부, 지방자치단체 행정전산망 - 연금관리공단 - 의료보험연합회/공단 - 국립재활원 - 일반국민	- 보건복지부 -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목 적	- 생활보호 및 복지서비스 대상자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 대상자 책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 책정된 대상자에 대한 외부에 정보의 제공	- 행정전달체계에서 필요한문서 및 보고 업무

水平的 정보의 흐름인 行政電算網(주민전산망)과 의료보험, 국민연금전산망과의 네트워크는 각 기관이 保有하고 있는 電算資源에 따라 결정될 수 있고 정보의 제공이나 공유를 위한 法的·制度的 裝置의 마련이 전제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반면에 垂直的 정보의 흐름은 지리

적 위치나 行政傳達體系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산망의 운영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생활보호와 공공복지서비스 업무에서 현재의 수직적 정보의 흐름은 보건복지부, 시·도, 시·군·구, 읍·면·동의 사이에 대상자 照會 또는 事業實績이나 現況報告이므로 고속통신망을 이용하는 것은 비용의 낭비가 있을 수 있다.

나. 住民電算網과 連繫 必要性

공공부조전산망과 주민전산망과의 정보의 제공이나 공유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이를 다시 언급할 필요성이 있다. 공공부조전산망이 주민전산망과의 連繫에서 필요한 부분은 생활보호와 공공복지서비스 대상자가 일제 또는 수시 조사로 선정되는 대상자의 人的事項(주소, 성명, 주민번호, 가구원 수)등에 대한 정보와 대상자의 住所 移動에 대한 검색이다. 대상자의 인적사항은 주민등록 전산시스템으로부터 자동 전송이 필요하며 대상자의 거주지 이동 사항은 주민등록관리 컴퓨터와 週期的인 파일매칭 작업으로 대상자의 變動事項(轉出, 轉入, 抹消 등)에 대한 정보가 업데이트 되어야 한다.

이러한 필요에서 현재의 주민등록전산시스템의 生活保護 전산프로그램을 보다 다양한 업무가 가능하도록 改善함으로써 네트워크 구축의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기존의 주민등록파일 구조의 변경이나 추가로 인하여 주민등록 파일의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또한 현재의 주민등록전산망의 고유기능(주민등록의 발급, 전·출입 관리)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향후 예상되는 생활보호와 복지서비스 업무확대에 따른 적절한 전산업무 개발이 한계에 봉착할 수 있다. 그러므로 生活保護업무와 公共福祉서비스 업무를 전용으로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이와 동시에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의 공유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 네트워크 設計 方向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 정부고속망, 지방행정종합정보망, 주민전산망들에 대한 현황을 검토한 결과 현재 정부가 운영하는 전산망은 공공부조업무 즉, 생활보호 및 공공복지서비스 업무를 완전히 수용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다.

住民電算網의 경우 외형적으로는 행정 일선인 읍·면·동까지 전산망이 구축되어 있으나 주민등록업무 전용이라는 폐쇄성과 전산장비의 노후, 저속의 통신속도 등으로 개선이 필요하며, 地方行政綜合情報網의 경우는 아직 읍·면·동까지 전산망이 구축되어 있지 못하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점에 대한 개선이 계속 추진되고 있고, 특히 주민전산망이 부동산, 자동차망과 연동하고 타 부처 전산망과 연계할 계획은 공공부조업무 전산화에 많은 편의를 제공할 전망이다. 또한 地方行政綜合情報網(MOHA-NET)이 주민전산망이나 타 부처의 지방행정 업무를 수용하여 중앙과 지방간의 종합정보망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은 公共扶助 電算網 구축에 고무적인 일이다.

주민전산망의 확충, 지방행정종합정보망의 타부처 업무수용을 위한 계획, 정부고속망의 부처간 정보공유체제 등을 고려할 때 생활보호와 공공복지서비스 업무만을 위한 새로운 獨自網의 신설은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소요경비가 莫大하고 중복투자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공공부조 전산망의 구축은 汎國家的으로 추진하는 전산망 계획과 聯動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즉 정부나 각 부문에서의 情報網 構築計劃과 연동하므로서 구축을 위한 費用을 절감하고 管理의 효율을 기하며 그 발전 추세에 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공공부조전산망 구축은 다음과 같은 原則 하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읍·면·동과 시·도에 위치한 公共扶助 시스템은 주민전산 시스템과 橫的인 情報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 읍·면·동, 시·군·구, 시·도간의 行政傳達體系에서 발생하는 정보는 내무부의 地方行政綜合情報網(MOHA-NET)을 공동 활용한다.
- 關聯機關(국민연금전산망, 의료보험전산망)과의 연결은 시·도에 위치한 전산기와 연결하여 通信回線의 중복 설치를 피한다.
- 내무부의 지방행정종합정보망과 보건복지부의 연결은 政府高速網을 이용한다.
- 정부의 通信網事業 計劃과 연동하여 추진한다

공공부조업무 통합전산시스템 및 전산망의 示範運用 기간에 주민전산망의 주민등록 정보와의 情報連繫와 그에 따른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전국적인 확대운영에는 地方行政綜合情報網(MOHA-NET)에 수용되도록 한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政府高速網을 통하여 內務部의 전산망과 연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전산망의 추진과정에서 보건복지부와 내무부간의 정보 공동활용을 위한 法的·制度的 장치의 마련과 현재의 주민전산시스템 개발을 담당할 데이콤과의 技術的인 檢討가 필요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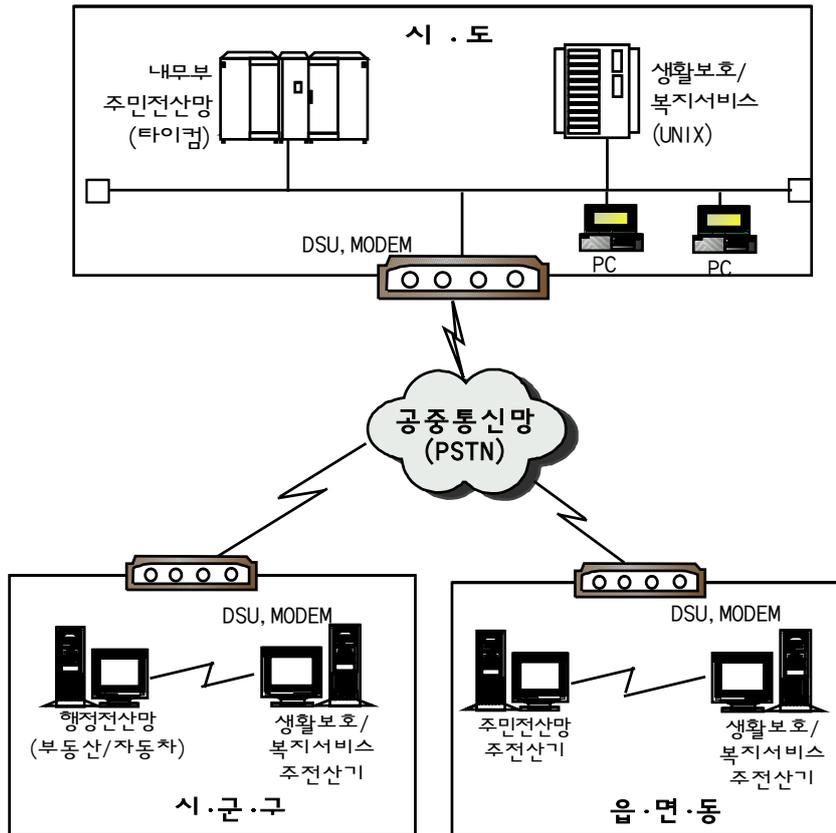
3. 段階別 네트워크 構築 方案

공공부조전산망의 네트워크 構築은 현행 읍·면·동 電算資源의 취약한 여건과 향후 情報通信技術의 발전 추세를 감안할 때 단계별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기존 주민전산망이나 지방행정종합망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의 개선에는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정보 공유에 대한 認識의 확대, 정보의 공유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의 프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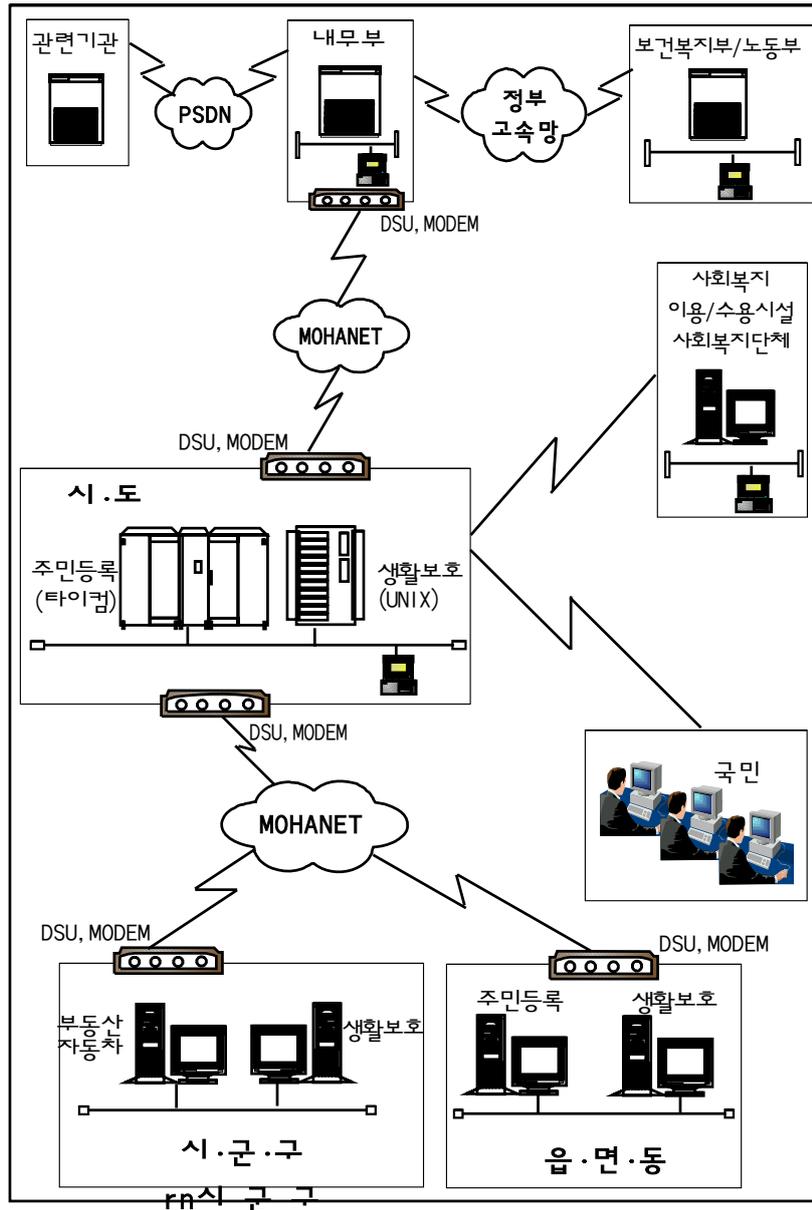
이버시의 침해 등에 대한 法, 制度의 신설이나 정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구축단계에서 발생하는 技術的 문제의 보완과 각 지방행정조직이 부담해야 하는 專門人力의 훈련 및 배치, 豫算의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공공부조전산망의 段階別 네트워크의 構築方案은 <表 V-10>과 같이 하며, 시범사업기간과 전국확대 운영기의 네트워크 構成圖는 [圖 V-1]과 [圖 V-2]로 제시될 수 있다.

[圖 V-1] 네트워크 構成圖(1段階: 示範事業期間)



[圖 V-2] 네트워크 구성도(2단계: 全國擴大 運營)



〈表 V-10〉 段階別 네트워크 構築方案

구 분	1단계(시범운용)	2단계(전국확산)	3단계(시스템 정착)
대 상 기관수	2개 시도, 2개 시·군·구, 20개 읍·면·동	전국 행정기관(시·도, 시·군·구, 읍·면·동)	기존 기관에 사회복지 시설, 단체와의 망 연결
구 축 목표	· 생활보호 전산시스템 의 시범운용과 문제점 개선 · 주민전산망과의 연계 시현 · 기존의 행정전산망의 공동 활용이나 공중 통신망(PSTN)에 의한 한시적 시범운용	· 전국적인 생활보호 업무 의 전산화와 전산망 구축 · 지방행정종합망에 생활 보호·공공복지서비스 전산업무 수용 ·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이고 자발적인 사회복지 분야 정보화 유도	· 국가 초고속 정보 통신망 기반위에 신속하고 편리 한 업무수행 · 국민의 사회복지 분야 정보이용을 위한 서비스 제공 및 추가 전산업무 개발

네트워크의 구축을 위한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所要量은 시범사업기간과 전국 확대운영으로 구분하여 계획하면 〈表 V-11〉, 〈表 V-12〉와 같다.

〈表 V-11〉 段階別 하드웨어 所要量

기관	품명	사양 및 규격	수량			비고
			시범운용	전국확대	합계	
시·도 및 보건복지부	- Server	- W/S 중형	2	15(1)	17	-()부분의 수량은 보건복지부에 설치 - 전국 확대시 전산장비의 설치는 지방 자치단체의 자체 구입이 나 기존 설치 된 장비를 공동활용
	- PC	- 586 Pentium	2	18(4)	20	
	- Printer	- Laser	2	14	16	
	- Router	- Cisco	2	14	16	
	- DSU	- 56/64 Kbps	2	14	16	
	- HUB	- Synoptics	2	14	16	
	- LAN Card	- Ethernet	2	18(4)	20	
시·군·구	- PC	- 586 Pentium	2	243	245	
	- Printer	- Lazer	2	243	245	
	- Modem	- 56Kbps	2	243	245	
읍·면·동	- PC	- 586 Pentium	20	3885	3905	
	- Printer	- Lazer	20	3885	3905	
	- Modem	- 56Kbps	20	3885	3905	

〈表 V-12〉 段階別 S/W 所要量

기관	품명	사양 및 규격	수량			비고
			시범운영	전국확대	총계	
시·도 및 보건복지부	-OS	-Unix	2	15	17	
	-DBMS	-Oracle	2	15	17	
	-개발 TOOL	-C++, Java, Cobol	2	15	17	

즉 시범사업은 2개 시·도와 2개 시·군·구를 택하여 시범적으로 운용한다. 시·도 중앙에 위치한 Server(Unix)는 시·도의 대상자 전체를 관리하며 시·군·구 와 읍·면·동에 위치한 생활보호·공공복지서비스 Client 컴퓨터(Pentium급 PC)는 공중통신망(PSTN)을 이용하여 시·도에 위치한 Server와 연결하도록 한다. 그러나 전국 확대운영기에는 막대한 통신망 구축비용이 요구되므로 정부가 운영하는 基幹電算網(행정 전산망 또는 지방행정종합정보망)을 공동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전국확대 운영기의 전산장비의 확보는 地方自治團體나 內務部の 전산화 계획에서 전산장비구입 또는 배치시에 생활보호와 공공복지서비스 업무에 우선적으로 투입되도록 유도되어야 한다.

VI. 推進戰略

1. 段階別 推進目標

公共扶助 업무의 電算化는 예산, 장비, 인력 등이 미비되고 관련 기관 협조체계가 아직 이루어져 있지 않음으로 段階別로 목표를 정하여 추진한다(表 VI-1 참조).

〈表 VI-1〉 段階別 推進 目標

구분	1단계(시범운영)	2단계(전국확대)	3단계(시스템 정착)
기본 목표	생활보호·공공복지업무 전산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시범사업을 통한 시스템 안정화 추구	개발된 전산시스템의 전국확산과 관련기관과 정보연계체계 구축	포괄적이고 신속한 업무의 개선과 대국민 서비스의 증진
기본 전략	·생활보호·공공복지서비스 대상자 관리 프로그램 개발 ·행정전산망의 정보활용 ·생활보호·공공복지서비스 대상자 통합관리를 위한 서식 정비 ·타기관 정보활용을 위한 법, 제도적 장치 모색	·주무부처(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개발 사업자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정보공유 관련기관과 정보연계를 위한 지속적인 업무 추진 체계 정립	·생활보호·공공복지 서비스 업무를 포함한 광범위한 사회복지 정보의 제공 ·정부의 초고속정보 통신망의 활용을 위한 체제 마련 ·Internet을 통한 정보제공
주요 개발 업무	·대상자관리 프로그램 개발 ·급여 및 급여사후관리 프로그램 개발 ·대상자 기초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련기관과 정보연계 프로그램 개발 ·전자문서(EDI)형식의 보고체계 채택	·읍·면·동 공공장소에 무인정보안내시스템 설치 및 서비스제공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정보의 제공 ·복지카드의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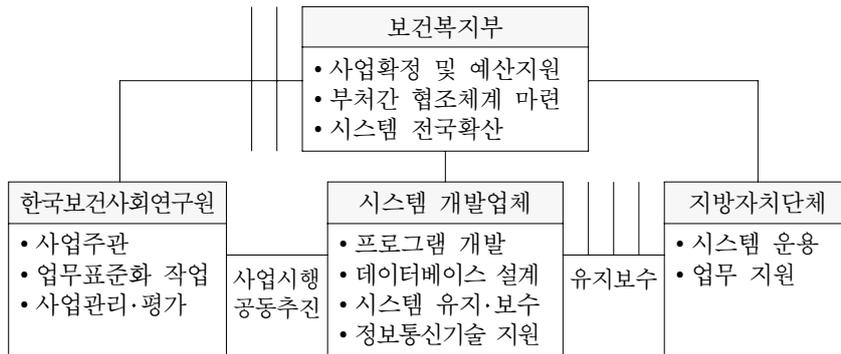
즉, 사업 始作年度에는 표준화에 입각하여 읍·면·동 중심으로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를 시범운영함으로써 시스템의 未備點을 보완한다.

또한 기초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하여 行政電算網을 관장하는 內務部와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관련 법, 제도를 정비한다. 시범사업지역의 시·도와 읍·면·동 전산기에 구축된 生活保護·公共福祉서비스 대상자의 기초 데이터베이스는 行政電算網과 연계하여 대상자에 대한 정보의 更新과 追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주무부서인 保健福祉部는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각종 管理書式이나 現況報告들을 정비하여 공공부조업무의 生活保護및 福祉서비스가 통합적으로 관리되도록 한다. 또한 전산 매체를 이용한 관리이므로 각 書式에서 불필요한 항목은 삭제하고 항목별 分類體系를 통일한다. 정보의 入力을 위한 형식과 실제 시행되는 서식간에 차이가 많으면 업무의 불편이 초래되고 전산화의 효과는 그만큼 감소되기 때문이다.

사업 2次年度는 개발된 시스템이 全國에 擴散되어 운용될 수 있도록 제반 與件의 造成과 相關기관간의 情報連繫體系 구축에 주력한다. 시스템의 설치와 운영이 각 地方自治團體의 인력과 장비로 운영되어야 함으로 裝備의 구입, 運營人力의 확보와 훈련을 위한 국가적인 支援과 制度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 시기는 1, 2次에 걸친 行政電算網事業이 완전히 정착된 이후이므로 내무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중점 전산화 사업을 사회복지분야 전산화에 우선적으로 투자되도록 보건복지부와 내무부가 역할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업무와 관련 있는 國民年金電算網이나 醫療保險電算網과의 情報共有를 위한 장치의 마련과 連繫프로그램의 개발, 보고행정 체계의 효율을 위한 電子文書의 標準化 사업과 시·군·구와 시·도에서의 관련 업무를 추가적으로 개발한다. 3次年度는 사업의 완성을 위한 보다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멀티미디어 媒體를 이용한 정보의 제공, 無人案内시스템 등을 위한 업무의 개발이 요구되며, 통신망체제도 국가 초고속통신망사업에 편입되어 신속하고 편리한 정보의 흐름이 가능하도록 한다.

단계별 세부 추진일정과 추진체계는 [圖 VI-1], <表 VI-2>에 따른다.

[圖 VI-1] 推進體系圖



<表 VI-2> 段階別 細部 推進日程案

세부추진내역	시범운영(1년)	전국확대(2년)	시스템정착
생활보호·복지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운영			
- 개발사업자 선정	—		
- 프로그램 개발	—		
- 데이터베이스 구축		—	
- 시범운영		—	
전국확산 및 관련기관 전산망 연계			
- 전국확산 운영		—	
- 관련기관 연계(국민연금, 의료보험, 등)		—	
- 시·군·구, 시·도 업무개발		—	
- 사회복지 수용·이용시설 데이터베이스 구축		—	
- 전자문서(EDI) 프로그램 개발		—	
국가초고속통신망과 연계			
- 국민복지망과 연계		—	
- 무인정보 안내시스템 서비스		—	
- 복지카드제 도입		—	

2. 現存 問題點의 改善方向

가. 電算人力 및 裝備

공공부조의 전산 업무가 全國的인 확대 운영체제로 되면 많은 인력과 장비가 소요된다. 시·도의 경우 그 동안 추진되어온 行政電算網 사업으로 각 시·도에 전산센터가 있고 시·군·구의 경우도 地方自治制의 정착과 電算마인드의 확산으로 부동산, 자동차 전산망의 운영을 위하여 電算室을 구비하고 主電算機(타이컴)를 설치하여 부동산과 자동차 업무 등, 시·군·구에서 필요한 업무들을 하고 있다. 읍·면·동의 경우는 住民電算網 위주로 주전산기와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다. 아직은 공공복지업무 專用的 전산기(PC)가 설치되어 있지 못하며 업무수행을 위한 人力이 확보되어 있지 못하므로 시스템을 운영할 인력과 장비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人力의 경우, 일단 읍·면·동에 배치되어 있는 社會福祉專門要員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읍·면·동에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배치되지 않으므로 社會 또는 家庭福祉擔當 직원을 활용해야 한다.

업무 수행을 위한 電算裝備의 확보는 공공부조업무를 비롯한 복지업무가 정부의 어느 한 부처가 수행하는 정보화 사업이 아니고 국민을 위한 서비스 제공이라는 유연한 시각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電算裝備를 공동 활용하거나 전산장비 구입시 이 업무에 우선적으로 배치하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며 지방자치단체의 情報化 推進 方案과 연계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전산자원의 중복투자와 낭비를 제거하고 공공부조업무가 중앙정부의 단순한 위임업무에서 벗어나 地方自治團體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복지증진 업무가 되도록 유도한다. 그 동안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한 行政電算網사업이 정착단계에 이르고 있으므로, 향후 정부

의 전산화사업 중에서 生活保護·福祉서비스 업무 전산화가 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보건복지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나. 法·制度의 整備

공공부조 전산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타 부문에서 구축된 情報의 活用이 필수적이다. 즉 주민전산망을 관리 운영하는 內務部와 地方自治團體,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國民年金管理工團 및 醫療保險管理工團 등과의 정보의 제공 또는 연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情報 共有의 필요성으로 인하여 정부는 개선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즉 住民電算資料는 이용을 원하는 기관수가 많으므로 자체적으로 ‘情報連繫센터’를 설치하여 이러한 요구에 대처하고자 한다. 정보의 연계는 부처 대 부처의 연계와 부처내 정보 연계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정보와의 연계는 부처내 연계이므로 보건복지부가 구상하는 國民福祉網 계획과 연동하여 추진되어야 하며 부처간의 연계는 정부고속망의 추진하는 법, 제도의 정비에 따라야 할 것이다.

다. 標準化

標準化 分野를 대별하면 전산기기, 응용소프트웨어, 통신규격, 서식 등이 있을 수 있다. 이들을 統一함으로서 정보를 體系化하고 정보교환 기관간의 데이터의 互換性을 유지하며 電子文書(EDI)化에 대비한다. 공공부조 전산시스템의 標準化는 <表 VI-3>과 같이 요약된다.

행정기관에 단말기로 보급된 행망용 PC의 경우 기종과 모델을 지정함으로써 다양한 購買需要에 대처하지 못하다가 1996년 이후 기본 규격을 486DX나 펜티엄급으로 하되 CPU, 모니터, CD-ROM, 모뎀 등 주요 부품에 대하여 使用業務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용량을 추가할

수 있도록 融通性이 부여되었다. 시·도에 설치될 Server는 시·도, 시·군·구에 설치된 行政網 주전산기가 타이컴 기종이므로 이와 연계가 가능한 응용소프트웨어 및 ‘國產主電算機 購買指針書(案)’(한국전산원, 1994)를 참조한다. 關聯機關(국민연금관리공단, 의료보험연합회/공단)의 주전산기는 IBM계열의 컴퓨터이므로 이와 연계의 연계를 위한 통신 장비가 요청된다.

〈表 VI-3〉 標準化 對象 및 方法

구분	대상	방법
H/W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 Server • 시·군·구, 읍·면·동 Client 컴퓨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 Open System 설치 • 읍·면·동, 구·시·군 Pentium급 이상 PC 설치
통신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전산망, 關聯機關(국민연금, 의료보험 등과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CP/IP, X.25 가능
업무 및 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보호, 공공복지서비스 서식 • 정보연계 기관의 수록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안 마련후 국민복지망표준원과 협의 • 확정된 표준서식 보건복지부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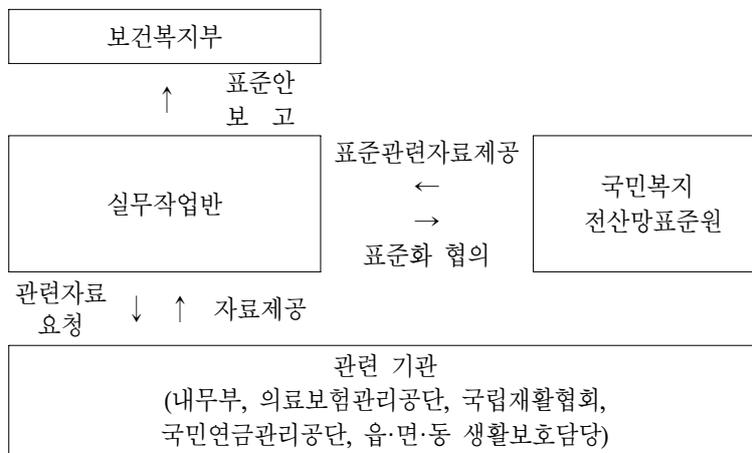
電算裝備의 標準化는 개방형 시스템의 보급으로 점차 해소되고 있으나 중요한 부분은 읍·면·동, 구·시·군, 시·도 등 行政機關에서 사용하는 각종 書式의 標準化이다. 공공부조의 하위업무들을 관장하는 부서가 다르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고안된 서식이 일관되지 않아서 정보화에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生活保護와 공공복지서비스(장애인, 노인, 모자/부자 가정세대, 소년소녀가장 세대) 對象者 管理 서식을 統合書式으로 개선하고 개별 서식의 정보의 항목 및 코드체계를 일관성있고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재구성한다.

정보연계기관간의 情報의 標準化는 정보 연계 필요도에 따라 그 우선순위가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즉 주민등록 > 국민연금 > 의료보험 순으로 정보의 기준이 되도록 정보 표준화를 진행한다. 標準化의

추진체계는 [圖 VI-2]에 따르며, 현재 가동중인 ‘국민복지전산망표준원’을 적극 활용한다.

[圖 VI-2] 標準化 推進 體系圖



○ 標準化 對象

- 생활보호 및 공공복지서비스 關聯書式
- 각 서식의 構成 要素의 표준화
- 情報連繫機關 보유정보와의 표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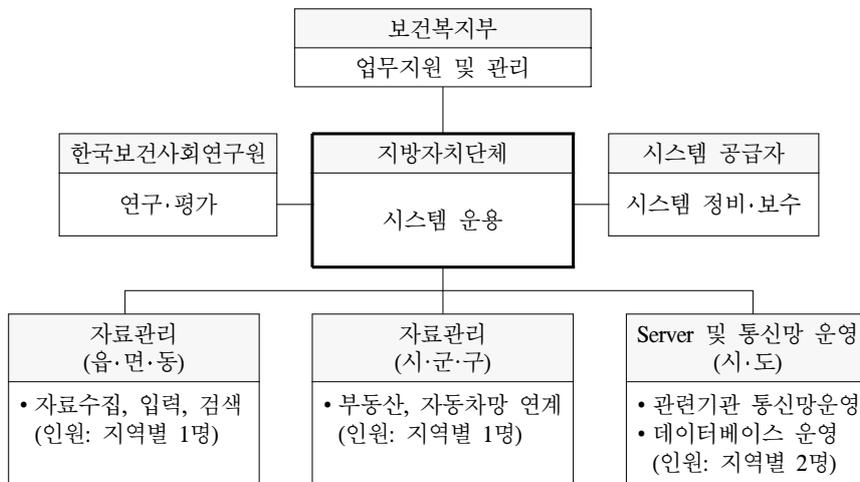
○ 標準化 推進節次 및 方法

- 관련서식과 업무 분석 후 草案 마련
- 공공부조업무 담당자 및 유관기관 전문가 意見 收斂
- 국민복지전산망표준원과 審議
- 최종안 확정 후 보건복지부 提出
- 기존서식을 새로운 표준서식에 따라 修正 또는 改廢
- 업무수행 기관에 傳達·施行

라. 運營方案

공공부조 전산시스템의 개발과 示範運用은 보건복지부의 예산과 지원하에 수행되지만 전국 확대운용 후에는 地方自治團體의 자체 운영이 필요하다(圖 VI-3 참조). 보건복지부는 자체적으로 전국에 산재한 전산자원을 관리할 수 있는 人力과 裝備가 구비되어 있지 못하다. 사회복지 업무는 지속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후속적인 業務開發과 改善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각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행하는 것은 業務의 標準化와 지방자치단체들간에 運營 水準의 불균형이 초래될 수 있다.

[圖 VI-3] 시스템 運營體系圖(案)



그러므로 기본 업무는 保健福祉部 主管 하에 시스템 개선과 추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基本 業務는 최초에 시스템을 개발한 사업자가 시스템의 維持와 補修가 이루어지도록 하지만 전체의 업무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의 개발은 指定事業者를 選定하여 지속적인 시스템의 유지와 보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附加적으로 필요로 하는 업무의 追加나 受容은 이 전담사업자와 協助體制를 이루어 업무의 확장을 유도한다. 기본적인 대상자관리, 기본 급여를 위한 메뉴의 설정이나 파일구조의 선정은 基礎 시스템에서 하고, 地自體에서 요구되는 부가업무는 尙擔事業者에게 추가적으로 업무개발을 요청하거나 자체 인력과 협의하여 업무가 수행되도록 한다.

또한 주민전산망을 개발한 전담사업자(데이컴)의 개발팀과 시스템 개발 시작부터 協助體制를 이루어 주민전산망과 정보연계과정에서 문제점들을 미연에 파악하여 대처해야 한다.

전산 시스템이 구축되었다고 해서 한꺼번에 모든 수요가 충족될 수는 없을 것이다. 즉 구축한 시스템의 미비점과 개선사항에 대한 使用者 中心의 要求事項에 대한 지속적인 評價와 研究가 요구된다. 이러한 업무의 수행은 業務 內容의 측면이 있고 電算 技術의 측면이 있을 수 있다. 시스템의 만족도나 改善事項에 대한 것은 專門 研究機關의 참여하여 지속적인 연구와 평가를 통하여 개선 및 수요의 창출을 유도하고 하드웨어나 통신망의 효율성 등은 韓國電算院과 같은 監理機關의 지속적인 감리체계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3. 期待效果

생활보호 및 공공복지서비스 업무를 전산화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期待效果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福祉行政의 效率性 제고 및 科學化를 실현한다. 현재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생활보호 및 복지서비스 업무를 전산화함으로써 그동안 대상자의 선정이나 급여를 위한 각종 서식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簡素化하게 되고,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온 選定基準의 합리화와 生活保護와 공공복지서비스의 통합급여가 가능하게 된다.

둘째, 공공복지서비스 需要者の 便宜 제고 및 福祉欲求에 적합한 급여를 확대한다. 생활보호대상자를 비롯한 공공부조대상자의 복지급여 수급시 불요불급한 書類提出 및 審査節次 축소하고, 공공부조전산화로 행정경비 및 인력을 절감하여 福祉全擔 人力이 현재의 단순급여 업무 이외에 보다 質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셋째, 관련 전산망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생활보호대상자의 自活支援 및 공공복지서비스 수요자에 대한 福祉情報를 제공한다.

參 考 文 獻

- 김만두, 「사회복지서비스에 있어서 정부와 민간간의 역할」, 『사회복지』, 1987 겨울.
- 박두희, 「국민복지망 기본계획」, 『사회복지』, 1996 여름.
- 박순일·전학석, 『생활보호대상자의 자산조사방법 개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6.
- 김미곤·전학석·박인아,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보충급여제도 도입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 남궁근, 『지방자치단체 전산업무개발 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전산원, 1993.
- 이근식·박경호·이상범·박찬용, 『저소득시민을 위한 서울시 공공복지에 관한 연구』, 삼성경제연구소, 1996.
- 이영호, 「보건복지정보화 추진현황 및 계획」, 『보건복지포럼』, 11월호, 1997.
- 손형길, 「정부고속망의 구축과 발전방향」, 『행정과 전산』, Vol.18, 1996.
- 정복란·이성기 외,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1.
- 최일섭,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선」, 『사회복지』, 1993 여름.
-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사업지침』, 1997.
- _____, 『생활보호업무지침』, 1997.

- _____, 『아동복지사업지침』, 1997.
- _____, 『여성복지사업지침』, 1997.
- _____, 『장애인복지사업지침』, 1997.
- _____, 『'97 주요업무자료』, 1997.
- _____, 『'96 생활보호대상자 현황분석』, 1996.
- 삼성경제연구소, 『정보테크놀로지의 확산과 사회변화』, 1996.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1993.
- _____, 『서울시정종합전산망 구축방안』, 1995.
- 포스데이타, 『국민복지망 기본계획수립(의료보험분야)』, 포스데이타, 1994.
- _____, 『국민복지망 기본계획수립(통신망 분야)』, 포스데이타, 1994.
- _____, 『국민복지망 기본계획수립(사회복지행정)』, 포스데이타, 1994.
- 총무처, 『1998년도 행정정보화촉진 시행계획』, 1997.
- 한국정보문화센터, 『복지정보통신의 현황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1995.
- 한국전산원, 『국가정보화백서』, 1996, 1997.
- _____, 『전자정부 개념 정립 및 구현 방안에 관한 연구』, 1996.
- _____, 『주민관리 발전방안(안)』, 1995.
- _____, 『국산주전산기(타이컴) 구매지침서(안)』, 1994.
-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재활서비스관리 프로그램개발』, 1994.
- Davenport, T. H. & E. S. James, "The New Industrial Engineering Information Technology and Business", *Process Redesign*, 1990.
- Rowley, Jennifer E., *System Analysis and Design for Information Magagers*, Library Association Publishig Ltd., 1994.

John. N. L., *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NII): A Foundation For Change*, 1993.

Mills, H. Linger & R. A. Hevner, *Principle of Information Systems Analysis and Design*, Orlando, Academic Press, 1986.

Mcfadden, F. & J. A. Hoffer, *Modern Database Management*, Benjamin/Cumming Publishin Co. Inc., 1994.

Webster, *Theories of the Information Society*, Loden: Routledge, 1995.